

간행사

오늘날 우리사회의 소년비행은 양적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을뿐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점차 심각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는 시점에 도달해 있다.

이와 같은 소년비행의 동향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사회의 소년비행의 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아울러 다른나라의 동향을 파악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리라 생각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제·사회구조가 모든 영역에 걸쳐 점차 선진국형으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면 주요 선진제국의 소년비행의 실태와 동향을 파악하는 작업은 앞으로 우리가 부딪치게 될 문제들을 미리 예견하고 그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소년비행과 소년사법에 관한 국제비교자료가 매우 드문 현실에서 일본의 「범죄백서」를 편집·번역하여 발간한 본 자료집이 앞으로 이 분야의 연구를 촉발하고 관계자들 사이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1991. 12

한국청소년연구원
원장 이 윤 구

머 리 말

이 책은 일본의 「犯罪白書」(東京:法務總合研究所) 1981년판(pp. 362-404)과 1991년판(pp. 406-459)을 발췌하여 번역한 자료집이다.

일본의 범죄백서는 우리나라의 「범죄백서」와 체제나 내용구성의 면에서 거의 동일한데 한가지 차이점은 매년 범죄와 관련된 주요주제들을 선정하여 그에 대한 연구·분석을 특집으로 게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소년비행은 1981년과 1991년도에 특집주제로 선정되어 각각 1970년대와 1980년대의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한국(단, 한국은 1991년도에만 특집으로 다뤄짐)의 소년비행·소년사범의 동향을 각국의 범죄인원에 관한 공식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개관하였다.

이 자료집에서는 1981년의 특집(제1부)과 1991년의 특집(제2부)을 하나로 묶어서 번역하여 소년비행·소년사범의 동향을 국가별·시기별로 입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게 하였다. 단, 제2부의 II장 6절(“일본”)과 III장(“한국 소년비행의 국제비교”)은 원문에는 없던 것을 편자가 새로 집필하여 수록한 것이며, 차례구성, 서술방식에 있어서도 부분적으로 수정을 가하였다.

소년비행은 국가마다 그 법률적인 개념규정(소년의 연령, 범죄구성요건, 사법상의 처리기준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신뢰할만한 국제비교자료를 입수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소년비행의 국제비교가 가능하도록 각국의 범죄통계를 일관된 기준으로 재정리하여 그 내용을 분석한 이 자료집은 소년비행에 관심이 있는 학계와 관계전문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1991. 12

윌슨이

2

2

차 례

간행사/1

머리말/3

제 1 부 소년비행과 소년사법의 동향 I : 1970년대

I. 개 설	9
II. 세계 주요국의 동향	11
1. 미 국	11
2. 영 국	23
3. 서 독	33
4. 프랑스	44
5. 일본 소년비행의 국제비교	52
III. 소년비행의 요인과 대책	57
1. 소년비행의 요인과 배경	57
2. 소년비행의 방지대책	63

제 2 부 소년비행과 소년사법의 동향 II : 1980년대

I. 개 설	67
II. 세계 주요국의 동향	69
1. 한 국	69
2. 미 국	79
3. 영 국	90
4. 서 독	101
5. 프랑스	113
6. 일 본	120
III. 한국 소년비행의 국제비교	131
표 · 그림 찾아보기	139

제 1 부
소년비행과 소년사범의 동향 I :
1970년대

I. 개 설

한국의 소년비행은 최근 현저한 증가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소년비행의 증가는 단순히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동향으로서, 특히 구미 선진제국의 「풍요로운 사회 속에서의 범죄의 급증」 현상의 핵심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소년비행에 대한 대응의 중심을 이루는 소년사법제도에 있어서도 근년에 미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동향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는 미국, 영국, 서독 및 프랑스에 있어서의 소년비행의 동향과 소년사법 운용의 실정을 최근의 공식 통계자료를 토대로 개관함과 아울러 필요한 범위내에서 각국의 소년사법제도의 특색을 소개하고자 한다.

각국의 범죄·사법통계는 법률상의 범죄구성요건 및 통계상의 분류(중죄, 경죄, 정식기소범죄, 지표범죄 등)의 차이, 소년연령의 법률상의 차이(구미에서는 소년사법상의 소년은 18세 미만 또는 17세 미만이 대부분임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20세 미만) 및 통계상 연령구분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소년비행을 일관된 기준에 따라 비교하기가 극히 곤란하다. 그러나 검거인원을 파악함에 있어서 연령층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정리하고, 범죄구성요건이 거의 공통된

살인, 강도 등의 주요 죄종만을 다루는 방법을 통해서 각국의 소년비행의 동향을 일관된 시각에서 개괄하는 것이 반드시 불가능하지만은 않다.

따라서 여기서는 구미제국의 소년사법제도 및 통계상의 구분에 따라 18세 미만(미국, 서독, 프랑스) 또는 17세 미만 (영국)을 「소년」으로 간주하여 형법범(단, 지표범죄, 정식기소범죄 등 주요 유형만) 및 살인, 강도, 상해, 절도, 강간, 방화의 주요 6죄종별 소년 검거인원의 추이를 통해 소년비행의 동향을 개관하기로 한다. 그와 동시에 18세(또는 17세) 이상 21세 미만의 연령층은 범죄의 동향에 있어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년과 성인의 중간층으로서 구미제국의 소년사법상 소년에 준하는 지위를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이 연령층을 「청년」으로 지칭하여 그 동향을 「소년」과 더불어 개관하기로 했다. 「소년」의 범위는 일본에 있어서의 중간소년, 연소소년 및 촉법소년과 거의 일치하고 「청년」은 연장소년과 거의 일치한다.

각국의 소년비행의 동향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개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해서 소년사법 운용의 실정은 각국의 소년사법제도의 복잡·다양성때문에 통일적인 파악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각국의 소년사법제도의 특색을 전제로 해서 범죄를 범한 소년 및 청년이 각국에서 어떠한 처우를 받고 있는가를 이해하는 것은 한국의 비행소년 처우를 고려하는 데 유익하다고 생각된다.

소년비행의 동향을 나타내는 두가지 중요한 지표로는 소년비(검거인원에서 점하는 소년의 비율)와 인구비(일반적으로 각 연령층 인구 10만명당 검거인원의 비율을 지칭하지만, 형법범 총수의 경우에는 수치의 간명한 표시를 위해서 인구 1,000명당 비율을 사용한다)를 들 수 있다. 앞으로의 분석도 이 양 지표를 중심으로 전개될 것이다.

II. 세계 주요국의 동향

1. 미 국

1) 소년비행의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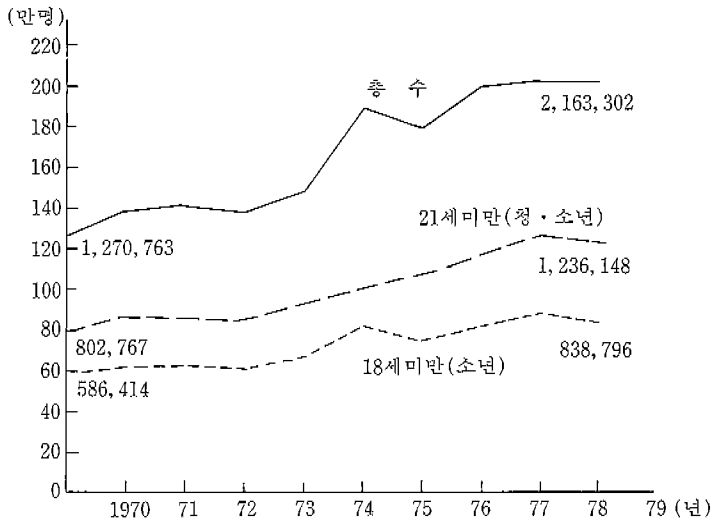
미국의 형법범(단, 지표범죄만) 검거인원 중 18세 미만의 소년 검거인원 및 21세 미만의 청·소년 검거인원의 추이(1970~1979)를 도시하면 [그림 1-1]과 같다. 또한 <표 1-1>과 <표 1-2>는 형법범 총수 및 살인, 강도, 상해, 절도, 강간, 방화의 주요 6 죄종별 소년 검거인원, 청년 검거인원, 소년비·청년비 및 소년·청년·성인의 인구비(1970, 1977~1979)를 나타낸 것이다.

소년의 검거인원은 형법범 총수에 있어서 1970~1979년의 10년간 약 59만명에서 약 84만명으로 약 1.4배, 청년을 포함하면 약 80만명에서 약 124만명으로 약 1.5배 증가하였다. 소년비는 46.1에서 38.8로 떨어졌지만, 청년비는 17.0에서 18.4로 상승하여 양자를 합하면 청·소년총이 검거인원에서 점하는 비율은 1979년에 57.1%에 달하고 있다. 인구비를 보면 1970~1978년

[그림 1-1]

형법범 검거인원의 추이

미국(1970~1979)



자료 : Uniform Crime Reports, Crime in U.S.; Current Population Reports, Population Estimates and Projections.

- 주 : 1) 형법범 검거인원은 지표범죄(Crime Index)인 폭력범(살인, 강도, 상해, 강간)과 재산범(절도)의 합계이며 1979년의 경우에는 방화도 포함.
- 2) 소년은 18세 미만, 청년은 18세 이상 21세 미만, 성인은 21세 이상.

의 9년간 소년은 18.0에서 28.2로, 청년은 19.5에서 29.9로 현저하게 상승하였다.

주요 6죄종의 1978년 통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살인은 소년비 9.3, 청년비 14.8, 청·소년비 24.1이며, 인구비는 소년이 5.6, 청년이 21.6이다. 살인은 범죄학에서 청·소년이 관여하는 비율이 낮은 범죄유형으로 간주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살인 검거인원의 약 1/4이 청·소년에 의해서 점유되고 있다.

〈표 1-1〉 형법범 검거인원의 소년비·청년비 및 인구비

미국(1970, 1977~79)							
검 거 인 원				인 구 비			
계	소년 (소년비)	청 년 (청년비)	청·소년 (청·소년비)	소년	청년	성인	
1970	1,270,763	586,414 (46.1)	216,353 (17.0)	802,767 (63.2)	18.0	19.5	3.8
1977	1,983,110	818,667 (41.3)	352,041 (17.8)	1,170,708 (59.0)	25.7	27.3	5.8
1978	2,169,262	878,770 (40.5)	384,157 (17.7)	1,262,927 (58.2)	28.2	29.9	6.4
1979	2,163,302	838,796 (38.8)	397,352 (18.4)	1,236,148 (57.1)	—	—	—

자료 : *Uniform Crime Reports, Crime in U.S.; Current Population Reports, Population Estimates and Projections.*

주 : 1) 형법범 검거인원은 지표범죄(Crime Index)인 폭력범(살인, 강도, 상해, 강간)과 재산범(절도)의 합계이며 1979년의 경우에는 방화도 포함.

2) 연령층에 따른 소년비 및 인구비의 산출에 있어서 연령불명자는 제외.

3) 소년은 18세 미만, 청년은 18세 이상 21세 미만, 성인은 21세 이상.

4) 인구비는 각 연령층 1,000명에 대한 검거인원의 비율.

강도는 소년비 34.0, 청년비 22.5, 청·소년비 56.5이며, 인구는 소년이 154.5, 청년이 247.6이다. 즉 검거인원의 약 6할이 청소년으로서 인구비로 보면 소년은 성인(43.2)의 약 4배, 청년은 약 6배나 검거되었음을 의미한다.

상해(지표범죄로서의 상해는 「가중폭행상해」(aggravated assault), 즉 신체에 대한 심한 가해행위를 가리킴)는 소년비 16.0, 청

〈표 1-2〉 주요죄종별 형법범 검거인원의 소년비·청년비 및 인구비
미국(1970, 1977~79)

① 살 인

	계	검 거 인 원			인 구 비		
		소 년 (소년비)	청 년 (청년비)	청·소년 (청·소년비)	소년	청년	성인
1970	12,836	1,346 (10.5)	1,894 (14.8)	3,240 (25.2)	4.1	17.1	7.8
1977	17,163	1,670 (9.7)	2,509 (14.6)	4,179 (24.3)	5.2	19.5	9.3
1978	18,755	1,735 (9.3)	2,784 (14.8)	4,519 (24.1)	5.6	21.6	10.0
1979	18,264	1,707 (9.3)	2,720 (14.9)	4,427 (24.2)	—	—	—

② 강 도

	계	검 거 인 원			인 구 비		
		소 년 (소년비)	청 년 (청년비)	청·소년 (청·소년비)	소년	청년	성인
1970	87,687	29,289 (33.4)	20,385 (23.2)	49,674 (56.6)	90.0	183.8	30.7
1977	122,514	39,259 (32.0)	27,973 (22.8)	67,232 (54.9)	123.3	217.1	39.5
1978	141,481	48,088 (34.0)	31,845 (22.5)	79,933 (56.5)	154.5	247.6	43.2
1979	130,753	41,157 (31.5)	30,141 (23.1)	71,298 (54.5)	—	—	—

③ 상 해

	계	검 거 인 원			인 구 비		
		소 년 (소년비)	청 년 (청년비)	청·소년 (청·소년비)	소년	청년	성인
1970	125,971	20,756 (16.5)	16,832 (13.4)	37,588 (29.8)	63.7	151.8	71.5
1977	221,329	36,182 (16.3)	32,663 (14.8)	68,845 (31.1)	113.6	253.6	109.1
1978	257,629	41,253 (16.0)	38,115 (14.8)	79,368 (30.8)	132.5	296.3	125.2
1979	256,597	39,860 (15.5)	39,560 (15.4)	79,420 (31.0)	—	—	—

④ 절 도

	계	검 거 인 원			인 구 비		
		소 년 (소년비)	청 년 (청년비)	청·소년 (청·소년비)	소년	청년	성인
1970	1,028,858	531,818 (51.7)	173,914 (16.9)	705,732 (68.6)	1,633.3	1,568.5	261.5
1977	1,596,304	737,299 (46.2)	284,210 (17.8)	1,021,509 (64.0)	2,315.5	2,206.3	410.6
1978	1,723,140	783,177 (45.5)	306,664 (17.8)	1,089,841 (63.2)	2,515.7	2,383.9	444.4
1979	1,710,137	742,409 (43.4)	317,259 (18.6)	1,059,668 (62.0)	—	—	—

⑤ 강 간

		검 거 인 원			인 구 비		
계		소 년 (소년비)	청 년 (청년비)	청·소년 (청·소년비)	소년	청년	성인
1970	15,411	3,205 (20.8)	3,328 (21.6)	6,533 (42.4)	9.8	30.0	7.2
1977	25,800	4,257 (16.5)	4,686 (18.2)	8,943 (34.7)	13.4	36.4	12.1
1978	28,257	4,517 (16.0)	4,749 (16.8)	9,266 (32.8)	14.5	36.9	13.3
1979	29,164	4,651 (15.9)	5,257 (18.0)	9,908 (34.0)	—	—	—

⑥ 방 화

		검 거 인 원			인 구 비		
	계	소 년 (소년비)	청 년 (청년비)	청·소년 (청·소년비)	소년	청년	성인
1970	9,409	5,594 (59.5)	949 (10.1)	6,543 (69.5)	17.2	8.6	2.8
1977	16,525	8,235 (49.8)	2,068 (12.5)	10,303 (62.3)	25.9	16.1	4.4
1978	18,114	8,760 (48.4)	2,253 (12.4)	11,013 (60.8)	28.1	17.5	5.0
1979	18,387	9,012 (49.0)	2,415 (13.1)	11,427 (62.1)	—	—	—

자료 : Uniform Crime Reports, Crime in U.S.; Current Population Reports, Population Estimates and Projections.

주 : 1) 연령층에 따른 소년비 및 인구비의 산출에 있어서 연령불명자는 제외.

2) 소년은 18세 미만, 청년은 18세 이상 21세 미만, 성인은 21세 이상.

3) 인구비는 각 연령층 10만명에 대한 검거인원의 비율.

년비 14.8, 청·소년비 30.8이다. 인구비에서 보면 소년은 성인과 거의 같은 수준이고, 청년은 성인의 2배 이상이다.

절도는 소년비 45.5, 청년비 17.8, 청·소년비 63.2이다. 인구비로 보면 소년, 청년 모두 성인의 약 6배나 검거되었다. 절도는 청·소년이 관여하는 비율이 높은 범죄로 간주되고 있는데, 이 수치는 그것을 실증하고 있다.

강간은 소년비 16.0, 청년비 16.8, 청·소년비 32.8이다. 인구비로 보면 소년은 성인과 같은 수준, 청년은 성인의 약 3배이다.

방화는 소년비 48.4, 청년비 12.4, 청·소년비 60.8이다. 인구비에서 소년은 성인의 약 6배, 청년은 약 4배이다. 방화는 청·소년이 관여하는 비율이 높은 범죄로서 이것을 뒷받침하는 수치라고 할 수 있다.

2) 소년사법제도

미국의 소년사법제도는 50개주 및 Columbia특별구(수도 Washington시)마다 상이하지만, 소년법원(또는 가정법원)을 중심으로 하는 미국 소년사법에 공통된 특색으로는 다음의 사항을 지적할 수 있다.

(1) 범죄에 대한 징벌보다는 소년의 재사회화를 중시하는 이념.

(2) 소년법원은 범죄소년(delinquent)뿐만 아니라 우범소년(status offender : 불량교우, 부모의 감독에 복종하지 않는 등 성인의 경우라면 범죄가 되지않는 문제행동을 하는 소년) 및 방임소년(dependent and neglected youth : 부모로부터 학대받는 소년, 보호·감독 능력이 없는 가정의 소년 등)에 대해서도 관할권을 갖고 있다는 점.

(3) 소년에 대해서 「처벌」보다는 「처우」를 중시하는 이념에 따라 소년심판절차에서는 형사재판에서와 같은 절차상의 엄격성

(대심구조, 증거법칙 등)은 그다지 중시되지 않고 오히려 비공식적이고 유연한 심판이 소년에게 적절한 것으로 간주된다. 한편 처우(처분)에 있어서는 소년의 자질·환경에 관한 과학적 감별에 기초하여 개별적이고 다양한 처우방법이 채택되고 있다.

법무성의 자료(전국 소년사법평가센터보고서, 1980)에 따르면 소년법원의 범죄소년에 대한 관할권은 51개주(Columbia특별구도 주로 간주)중 범행 당시 18세 미만이 39개주, 17세 미만이 8개주, 16세 미만이 4개주이다. 또한 하한을 7세(common law상의 형사책임연령)로 하는 주가 47개주, 10세로 하는 주가 4개주이다. 이와 같은 연령층의 범죄소년에 대해서 많은 주에서는 소년법원이 전속관할권을 갖고 있지만(41개주, 다른 10개주에서는 살인, 강간 등 일정한 중대범죄를 범한 소년에 관해서는 통상의 형사법원이 소년법원과 함께 공동관할권(concurrent jurisdiction)을 갖고 있다. 공동관할권의 경우에는 통상 검사의 결정에 따라 형사법원으로 소추된다), 그 경우에도 일정한 중죄를 범한 소년 등에 관해서는 소년법원이 관할권을 포기하고 형사법원으로 이송(waiver, transfer)하여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소추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또한 이 절차를 갖고 있는 48개주 중 38개주는 이송절차에 연령상의 제한을 설정하여 이송할 수 있는 소년을 16세 이상으로 규정한 것이 15개주, 15세 이상이 9개주, 14세 이상이 12개주, 13세 이상이 2개주이다).

경찰에 의한 체포후의 송치, 피해자의 고발 등에 의해 소년법원으로 넘어온 사건은 일반적으로 소년법원에 소속된 보호관찰관(probation officer)으로 구성되는 「수리부」(intake unit)에 의해서 감호조치(detention : 일종의 구류)에 관한 결정이 내려져, 조사·감별상 공식 심판절차(범죄의 심리와 처분)로 이행하는 사건과 비공식처분(이른바 diversion으로서 복지기관으로의 인도 등)에 맡겨지는 사건으로 선별된다. 공식의 심판절차는 일반적으로 수리부의

「심판신청」(filing a petition : 일종의 기소)에 의해서 행해지지만, Columbia특별구같이 검사가 심판신청을 행하는 곳도 있다. 심판 절차는 일반적으로 사실인정절차와 처분절차로 나뉘어 범죄(비행)사실이 「인정」(adjudication)되면 「처분」(disposition)이 내려진다. 처분은 소년원(training school)수용, 농장·삼림캠프 등의 개방적 작업시설 수용, 정신병원 수용, 보호관찰(probation)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또한 California주처럼 청소년국(Youth Authority : 일종의 행정위원회)에 처우위탁을 행하는 주도 있다.

3) 소년사법의 운용

이와 같은 소년사법제도가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체계적인 통계자료는 매우 부족하지만, 입수가능한 자료에 따라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경찰에 검거된 소년의 처리상황을 보면(〈표 1-3〉), 1977년 검거인원 총수 약 178만명 중 경찰내에서만 처리된 경우가 38.1%, 형사법원에 송치(공동관할사건)된 경우가 3.9% 등이며, 소년법원에 송치된 소년은 약 반수인 53.2%이다. 미국에서는 경찰내에서의 소년처우가 실무상 전통적으로 행해져 왔고 「소년사법·비행방지에 관한 국가자문위원회」의 「소년사법운영기준」(1980)은 소년비행방지에 관한 경찰 책무의 중요성을 근거로 이 실무를 인정하고 있다.

소년법원의 처분별 인원의 통계가 없기 때문에 시설구금중인 인원 및 보호관찰에 회부된 인원을 전 미국 및 주요 2개주에 대해서 살펴보면 〈표 1-4〉와 같다. 전국에서 구금중인 소년은 1975년 6월 30일 현재 약 47,000명으로서 이중 심판대기 또는 이송대기로 단기수용소(detention center), 소년감별센터(reception or diagnostic center) 등에 수용중인 소년이 약 13,000명(27.1%)

〈표 1-3〉

경찰에 검거된 소년의 처리상황

미국(1977)

총 수	경찰내 처 리	소년법원 송 치	복지기관 송 치	기타기관 송 치	성인형사 법원송치
1,782,049 (100.0)	679,230 (38.1)	948,677 (53.2)	53,165 (3.0)	31,562 (1.8)	69,415 (3.9)

자료 : *Sourcebook of Criminal Justice Statistics*, 1979.

주 : 교통사건과 방임소년사건(neglect cases)은 제외.

〈표 1-4〉

소년구금시설의 종류별 수용인원 (1975)과
보호관찰 인원 (1976)

미국(1975, 1976)

	구			금		보호관찰
	계	단 기 수용소등	소년원	농 림 캠 프	halfway house등	
전 미 국	46,980	12,725	26,748	5,385	2,122	328,854
California	8,720	3,825	2,360	2,452	83	52,372
New York	1,950	290	924	290	446	8,454

자료 : *Sourcebook of Criminal Justice Statistics*, 1978, 1979.주 : 소년구금시설(공공시설과 사설시설은 제외)의 종류별 수용인원은
1975년 6월 30일 현재이며 보호관찰인원은 1976년 9월 1일 현재.

을 점하고 있다. 보호관찰에 회부된 소년은 1976년 9월 1일 현재
약 33만명이다.

4) 소년사법의 신동향

1899년 일리노이주의 소년법원 설치에 의해 시작된 미국의 소
년사법제도는 세계의 소년사법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현대의 소년비행, 특히 소년의 중대범죄의 급증과 누범상황의 악

화에 따라 소년사법제도는 소년비행의 방지에 효과적인 기능을 담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대두되었고, 또한 소년심판절차는 헌법 수정 제14조의 「법의 적정절차」(due process of law)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형사사법의 운영에 관한 대통령자문위원회」(1967), 「형사사법의 기준과 목표에 관한 국가자문위원회」(1973)의 각 보고서, 「소년사법·비행에 관한 국가자문위원회」의 「소년사법운영기준」(1980) 등을 기초로 이들 비판의 대상이 된 문제점을 포함하여 소년비행방지와 소년사법의 형태에 관한 다방면의 연구·분석이 추진되었다.

그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는 「소년사법운영기준」에 나타난 기본적 방향의 하나는 소년사법에 있어서의 적정절차의 보장이다. 이것은 연방최고법원의 Gault사건 판결(In Re Gault, 387 U.S. (1967) : 소년심판에 있어서도 형사재판의 경우와 동일하게 고발사실의 고지, 변호인 선임권, 증인대질권 및 묵비권 등을 보장한 판결), Winship사건 판결(In Re Winship, 397, U.S. 358(1970) : 소년심판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의심을 입증하는」 범죄의 증명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판결) 등의 획기적인 판결이 미친 영향에 따른 것이었다. 미국의 소년심판에 있어서는 검사의 심판신청 또는 심판관여는 Columbia특별구, California주 등 일부 주를 제외하고는 전통적으로 행해지지 않았지만, 앞서의 「소년사법운영기준」은 이 적정절차 보장에 관한 연방최고판결의 취지에 따라 사실인정절차에 있어서의 당사자주의(검사와 피심판신청인·변호인의 공격방어에 의한 대심구조)와 증거법칙(강제적인 자백 및 불합리한 수색·차압에 의한 증거의 사용금지, 「증거의 우월」이 아니라 「합리적인 의심을 입증하는」 범죄의 증명을 필요로 간주하는 등의 법칙)의 적용 등, 범죄(비행) 사실인정의 절차를 엄격하게 수행할 것과 심판신청에 있어

서의 검사의 최종책임(특히 법률적응과 혐의의 충분성에 관해서) 및 심판관여권과 범죄사실의 입증책임을 확립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한편 동 기준은 소년사법에 있어서의 재사회화의 이념을 전면적으로 지지하여, 수리심사에 있어서의 「비공식적 대체조치」(diversion), 공식 심판절차에 있어서의 처분절차(일종의 양형절차)의 유연성과 처분의 다양성 등을 권고하고 있어 소년심판에 있어서의 유연성과 적정절차의 보장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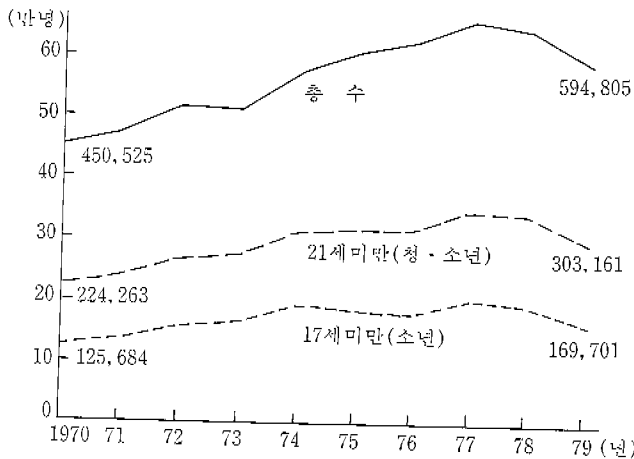
또한 소년의 중대범죄의 급증에 대응하여 중대범죄를 범한 소년 또는 누범소년에 대해서는 소년의 보호와 재사회화를 기본이념으로 하는 소년심판절차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형법의 사회방위기능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각주의 입법에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New York주는 「1976년 소년사법개혁법」 및 1978년의 동법 개정에 따라 살인·유괴 등 일정한 중대범죄를 범한 14세와 15세의 소년 및 살인을 저지른 13세의 소년(이 주에서 소년은 7세 이상 16세 미만)을 가정법원의 관할에서 제외시키는 입법을 행하였고, California주는 「복지·시설법」(소년법)의 1975년 및 1976년의 개정에 따라 형사법원으로서의 이송절차에 있어서 범죄소년이 소년법원의 보호절차에 적절하지 않은 자라는 입증책임을 소년측에 과하는 등의 개혁을 행하였다(앞서 법무성의 1980년 자료에 의함). 이와 같은 미국 소년사법의 신동향은 앞으로도 주목할만하다고 생각된다.

2. 영 국

1) 소년비행의 동향

영국(England와 Wales단)의 형법범(단, 정식기소범죄만) 검거인원 중 17세 미만의 소년 검거인원 및 21세 미만의 청·소년 검거인원의 추이(1979~1979)를 도시하면 [그림 1-2]와 같다. 또한 <표 1-5>와 <표 1-6>은 형법범 총수 및 살인, 강도, 상해, 절도, 강간, 방화의 주요 6죄종별 소년 검거인원, 청년 검거인원,

[그림 1-2] 형법범 검거인원의 추이
영국(1970~1979)



자료 : Criminal Statistics England and Wales; Annual Abstract of Statistics.

주 : 1) 검거인원은 유죄가 인정된 자 및 경찰에서 경고를 받은 자를 가리킴.

2) 교통범죄는 제외.

3) 소년은 10세 이상 17세 미만, 청년은 17세 이상 21세 미만.

〈표 1-5〉 형법범 검거인원의 소년비·청년비 및 인구비

영국(1970, 1977~1979)

	계	검 거 인 원			인 구 비		
		소년 (소년비)	청년 (청년비)	청·소년 (청·소년비)	소년	청년	성인
1970	450,525	125,684 (27.9)	98,579 (21.9)	224,263 (49.8)	26.1	36.5	6.8
1977	658,047	203,984 (31.0)	141,799 (21.5)	345,783 (52.5)	36.4	49.0	9.2
1978	646,172	197,421 (30.6)	145,423 (22.5)	342,844 (53.1)	35.2	49.0	9.0
1979	594,805	169,701 (28.5)	133,460 (22.4)	303,161 (51.0)	—	—	—

자료 : *Criminal Statistics England and Wales; Annual Abstract of Statistics.*

- 주 : 1) 검거인원은 유죄가 인정된 자 및 경찰에서 경고를 받은 자를 가리킴.
 2) 교통범죄는 제외.
 3) 소년은 10세 이상 17세 미만, 청년은 17세 이상 21세 미만.
 4) 인구비는 각 연령층 1,000명에 대한 검거인원의 비율.

소년비 및 소년·청년·성인의 각 인구비(1974, 1977~1979)를 나타낸 것이다.

소년의 검거인원은 형법범 총수에서 10년간 약 13만명에서 약 17만명으로 약 1.4배, 청년을 포함하면 약 22만명에서 약 30만명으로 약 1.4배 증가하였다. 소년비는 27.9에서 28.5로, 청년비는 21.9에서 22.4로 모두 상승하여 양자를 합치면 청·소년총이 검거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9.8에서 51.0으로 높아졌다. 인구비는 1970년부터 1978년의 9년간 소년은 26.1에서 35.2로, 청년은 36.5에서 49.0으로 현저하게 상승하였다.

〈표 1-6〉 주요죄종별 형법범 검거인원의 소년비·청년비 및 인구비
영국(1974, 1977~1979)

① 살 인

	계	검 거 인 원			인 구 비		
		소 년 (소년비)	청 년 (청년비)	청·소년 (청·소년비)	소년	청년	성인
1974	1,403	55 (3.9)	232 (16.5)	287 (20.5)	1.0	8.6	3.3
1977	1,120	38 (3.4)	179 (16.0)	217 (19.4)	1.7	6.2	2.7
1978	1,226	62 (5.1)	215 (17.5)	277 (22.6)	1.1	7.2	2.8
1979	1,454	50 (3.4)	260 (17.9)	310 (21.3)	—	—	—

② 강 도

	계	검 거 인 원			인 구 비		
		소 년 (소년비)	청 년 (청년비)	청·소년 (청·소년비)	소년	청년	성인
1974	5,905	1,509 (25.6)	2,165 (36.7)	3,674 (62.2)	28.1	79.9	6.7
1977	7,348	1,333 (18.1)	2,675 (36.4)	4,008 (54.5)	23.8	92.4	9.9
1978	7,770	1,444 (18.6)	2,901 (37.3)	4,345 (55.9)	25.7	97.7	10.1
1979	6,961	1,222 (17.6)	2,608 (37.5)	3,830 (55.0)	—	—	—

③ 상 해

	계	검 거 인 원			인 구 비		
		소 년 (소년비)	청 년 (청년비)	청·소년 (청·소년비)	소년	청년	성인
1974	48,338	7,981 (16.5)	11,849 (24.5)	19,830 (41.0)	148.6	437.5	85.0
1977	58,112	8,342 (14.4)	15,064 (25.9)	23,406 (40.3)	148.8	520.5	102.8
1978	61,107	8,607 (14.1)	16,061 (26.3)	24,668 (40.4)	153.4	541.0	107.5
1979	72,898	10,478 (14.4)	20,415 (28.0)	30,893 (42.4)	—	—	—

④ 절 도

	계	검 거 인 원			인 구 비		
		소 년 (소년비)	청 년 (청년비)	청·소년 (청·소년비)	소년	청년	성인
1974	375,510	149,475 (39.8)	75,050 (20.3)	225,525 (60.1)	2,782.6	2,808.1	447.1
1977	437,411	161,008 (36.8)	91,161 (20.8)	252,169 (57.7)	2,872.2	3,149.7	548.6
1978	424,891	154,279 (36.3)	92,150 (21.7)	246,429 (58.0)	2,749.6	3,104.3	526.7
1979	391,509	139,061 (35.5)	85,981 (22.0)	225,042 (57.5)	—	—	—

⑤ 강 간

	계	검 거 인 원			인 구 비		
		소 년 (소년비)	청 년 (청년비)	청·소년 (청·소년비)	소년	청년	성인
1974	4,530	893 (19.7)	1,832 (40.4)	2,725 (60.2)	16.6	67.6	5.4
1977	3,759	630 (16.8)	1,473 (39.2)	2,103 (55.9)	11.2	50.9	4.9
1978	3,762	652 (17.3)	1,384 (36.8)	2,036 (54.1)	11.6	46.6	5.1
1979	3,778	680 (18.0)	1,419 (37.6)	2,099 (55.6)	—	—	—

⑥ 방 화

	계	검 거 인 원			인 구 비		
		소 년 (소년비)	청 년 (청년비)	청·소년 (청·소년비)	소년	청년	성인
1974	3,257	1,832 (56.2)	530 (16.3)	2,362 (72.5)	34.1	19.6	2.7
1977	3,283	1,617 (49.3)	571 (17.4)	2,188 (66.6)	28.8	19.7	3.2
1978	3,817	1,878 (49.2)	792 (20.7)	2,670 (70.0)	33.5	26.7	3.4
1979	3,676	1,718 (46.7)	713 (19.4)	2,431 (66.1)	—	—	—

자료 : *Criminal Statistics England and Wales; Annual Abstract of Statistics.*

- 주 : 1) 검거인원은 유죄가 인정된 자 및 경찰에서 경고를 받은 자를 가리킴.
 2) 소년은 10세 이상 17세 미만, 청년은 17세 이상 21세 미만.
 3) 강간에는 16세 이하 소녀와의 불법적인 성교를 포함.
 4) 인구비는 각 연령층 10만명에 대한 검거인원의 비율.

주요 6죄종의 1978년 통계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살인은 청·소년비가 22.6이며 청년의 인구비(7.2)는 성인(2.8)의 약 3배이다. 강도는 청·소년비가 55.9이며 청년의 인구비(97.7)는 성인(10.1)의 약 10배이다. 상해는 청·소년비가 40.4이며 청년의 인구비(541.0)는 성인(107.5)의 약 5배이다. 절도는 청·소년비가 58.0이며 청년의 인구비(3,104.3)는 성인(526.7)의 약 6배이다. 강간은 청·소년비가 54.1이며 청년의 인구비(46.4)는 성인(5.1)의 약 9배이다. 방화는 청·소년비가 70.0이며 소년의 인구비(33.5)는 성인(3.4)의 약 10배이다.

2) 소년사법제도

영국의 소년사법제도는 아동소년법(1933, 1963, 1969), 형사재판법(1948, 1961, 1967) 등에 규정되어 있다. 10세 미만은 형사 미성년자이며,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아동은 행위의 위법성을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인정되면 형사책임이 있다고 간주된다. 14세 이상 17세 미만을 소년, 17세 이상을 성인으로 간주한다. 소년(아동 포함. 이하 동일)에 의한 범죄는 소년법원(juvenile court)의 관할이고 17세 이상의 성인에 의한 범죄는 「치안판사법원」(Magistrates' Court) 또는 「형사법원」(Crown Court) 등의 관할이다. 단, 살인죄와 그밖의 중대범죄를 범한 소년, 성인과 공범 관계에 있는 소년의 사건은 통상 법원의 관할이다. 또한 17세 이상 21세 미만의 청년에 대해서도 형사법원에서 소년처우로서의 감화원훈련(Borstal training : 일종의 소년원 수용) 명령을 언도할 수 있다.

소년법원은 치안판사법원 중의 특별법원으로서 소년사건 재판에 적합한 자질·경험을 가진 소년법원구성원(juvenile court panel) 중에서 임명되는 3명의 치안판사(justice)로 구성된다(3명

중 1명은 여성이어야 한다).

소년의 형사소추에 있어서는 성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경찰관이 검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사실심리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판결에 의해서 각종 처분이 언도된다(경찰관이 형사소추에 임함에 있어서 곤란한 법률문제를 포함한 사건 등의 소추를 담당하는 「공소국장」(Director of Public Projection)의 제도가 있지만 처리하는 사건은 극히 적어서 매년 약 40만건의 전체 형사사건 중 1,000건 정도이다).

소년법원의 절차에는 이 형사절차와 더불어 소년에 대한 「보호절차」(care proceeding)라는 민사적인 소년복지절차가 있어 범죄 소년, 우범소년 및 방임소년에 대해서 소년보호의 이념에 기초하여 다양한 처우가 행해진다. 또한 1969년 아동소년법에는 보호절차의 형사절차에 대한 우선성의 원칙 등 보호주의의 이념이 강하게 반영되어 이에 관한 동법의 중요한 규정(살인 이외의 범죄를 저지른 아동에 대한 형사절차의 금지에 관한 제4조,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의 제한에 관한 제5조 제1항 내지 제7항, 감화원훈련의 언도가 가능한 최저연령을 15세에서 17세로 올린 제7조 제1항 등)들은 동법 시행 첫해인 1971년 이후에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또한 경찰은 형사소추할 수 있는 범죄의 피의자가 자백을 한 경우 소추하지 않고 경찰내에서 「경고」(caution)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검거인원 중 이 경고처분을 받은 자의 비율은 1979년에 10세 이상 17세 미만 소년 중 48.5%, 17세 이상 21세 미만의 청년 중 2.8%, 21세 이상 성인 중 3.7%로서, 주로 소년에 대해서 이 처분이 널리 행해지고 있다.

소년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소년에 대해서는 절대적 면책(absolute discharge), 조건부 면책(conditional discharge), 벌금, 감독명령(supervision order : 지방당국 또는 보호관찰관의 감독에 회

부하는 보호관찰적인 사회내처우), 보호명령(care order : 지방당국의 community home 등의 시설에 수용하는 보호적인 시설내처우), 출두소(attendance center) 출두명령(원칙적으로 1회 3시간 이내, 합계 12시간 이내에 생활지도 등을 행함), 단기수용소(detention center) 수용명령(원칙적으로 3개월의 단기구금으로 short, sharp, shock의 이른바 3S주의에 기초한 처우를 행함), 감화원 훈련명령(수용기간은 원칙적으로 6개월 내지 2년. 일종의 소년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청소년형무소라 할 수 있음) 등 다양한 처분이 행해지고 있다. 또한 유죄인정 없이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신병원 입원명령을 내릴 수 있다. 단지 감화원훈련은 형사법원에서만 과해질 수 있기 때문에 소년법원이 이 처분을 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처분언도를 위해서 사건을 이송한다.

원칙적으로 소년에 대한 구금형은 인정되지 않고 있지만, 일정한 중대범죄를 범한 소년에 대해서 형사법원은 「다른 적당한 처우방법이 없다고 사료될 때」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의 구금처분을 언도할 수 있다(1973년 형사법원권한법 제19조 제1항, 1933년 아동소년법 제53조).

이상과 같이 영국의 소년사법은 보호절차와 형사절차의 이중성, 보호주의의 이념, 경찰선의의(경찰에 의한 소추와 경고처분), 형사절차에 있어서의 대심구조(對審構造), 소년처우의 다양성 등이 특색이라고 할 수 있다.

3) 소년사법의 운용

이와 같은 소년사법제도가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가를 공식 통계자료에 의거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식기소범죄에 의한 소년 및 청년의 유죄인원을 보면(<표 1-7>), 1979년에 유죄인원 총수 약 41만명 중 소년이 약 8만명(19.

8%), 청년이 약 11만명(25.9%), 합계 약 19만명(45.7%)에 달하고 있다.

〈표 1-7〉 형법범의 연령층별 유죄인원

영국(1979)

형법범 총수	10세 이상 17세 미만			17세 이상 21세 미만
	계	10세 이상 14세 미만	14세 이상 17세 미만	
412,146 (100.0)	81,592 (19.8)	18,218 (4.4)	63,374 (15.4)	106,892 (25.9)

자료 : *Criminal Statistics England and Wales*, 1979.

주 : ()안의 수치는 구성비.

〈표 1-8〉 구금형 및 감화원 훈련의 연령층별 인원

영국(1979)

	총 수	구금형 및 감화원 훈련			기 타
		계	구금형	감화원훈련	
총 수	188,484 (100.0)	18,532 (9.8)	10,855 (5.8)	7,677 (4.1)	169,952 (90.2)
10세이상 14세미만	18,218	—	—	—	18,218
14세이상 17세미만	63,374	1,666	—	1,666	61,708
17세이상 21세미만	106,892	16,866	10,855	6,011	90,026

자료 : *Criminal Statistics England and Wales*, 1979.

주 : ()안의 수치는 구성비.

소년 및 청년의 유죄인원 약 19만명 중 구금형 또는 감화원 훈련처분을 받은 자에 관해서 살펴보면(〈표 1-8〉), 구금형은 10,855명(5.8%), 감화원 훈련은 7,677명(4.1%)이다.

소년 유죄인원 약 8만명의 주요죄종별 처분을 보면 〈표 1-9〉와 같다. 감화원 훈련 및 단기수용소 수용의 장기 및 단기의 구금처우를 받은 자는 총수 6,938명(8.5%)을 점하고 있고 그 비율은 생명·신체범의 7.5%, 강도의 34.4%, 절도의 8.4%, 성범죄의 8.1%이다.

〈표 1-9〉 소년의 주요죄종별 처분종류별 인원
영국(1979)

	총 수	감화원 훈 련	단 기 수용소	출두소	벌 금	기 타
총 수	81,592 (100.0)	1,666 (2.0)	5,272 (6.5)	9,910 (12.1)	27,789 (34.1)	36,955 (45.3)
생명· 신체범	6,563 (100.0)	88 (1.3)	408 (6.2)	777 (11.8)	2,784 (42.4)	2,506 (38.2)
강 도	715 (100.0)	122 (17.1)	124 (17.3)	90 (12.6)	112 (15.7)	267 (37.3)
절 도	67,604 (100.0)	1,354 (2.0)	4,359 (6.4)	8,393 (12.4)	22,116 (32.7)	31,382 (46.4)
성범죄	660 (100.0)	17 (2.6)	36 (5.5)	40 (6.1)	103 (15.6)	464 (70.3)

자료 : *Criminal Statistics England and Wales*, 1979.

주 : 1) 절도에는 장물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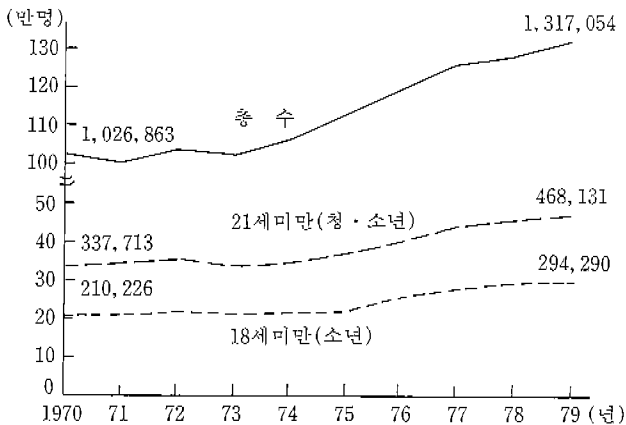
2) 소년은 10세 이상 17세 미만.

3. 서 독

1) 소년비행의 동향

서독의 형법범 검거인원 중 18세 미만의 소년 검거인원 및 21세 미만의 청·소년 검거인원의 추이(1970~1979)를 도시하면 [그림 1-3]과 같다. 또한 <표 1-10> 및 <표 1-11>은 형법범 총수 및 살인, 강도, 상해, 절도, 강간 및 방화의 주요 6죄종별 소년 검거인원, 청년 검거인원, 소년비·청년비 및 소년·청년·성인의 인구비(1970, 1977~1979)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1-3] 형법범 검거인원의 추이
서독(1970~1979)



자료 : *Polizeiliche Kriminalstatistik*, 1979 (Zeitreihen).

주 : 1) 소년에는 형사책임연령인 14세에 달하지 않은 아동도 포함.

2) 교통관계사건 및 국가보호범죄 제외.

소년 검거인원은 형법범 총수에 있어서 10년간 약 21만명에서 약 29만명으로 약 1.4배, 청년을 포함하면 약 34만명에서 약 47만명으로 약 1.4배 증가하였다. 소년비는 20.5에서 22.3으로, 청년비는 12.4에서 13.2로 모두 상승하였고 양자를 합친 청·소년비는 32.9에서 35.5로 상승하였다. 인구비를 보면 10년 동안 소년은 31.3에서 36.0으로, 청년은 51.5에서 60.9로 상승하여 1979년에는 성인(19.5)에 비해 각각 약 2배 및 3배가 되었다.

주요 6죄종의 1979년 통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살인은 청·소년비가 18.0이며 청년의 인구비(11.8)는 성인(5.0)의 약 2배이다. 강도는 청·소년비가 51.9이며 청년의 인구비

〈표 1-10〉 형법범 검거인원의 소년비·청년비 및 인구비

서독(1970, 1977~1979)							
	총 수	검 거 인 원			인 구 비		
		소 년 (소년비)	청 년 (청년비)	청·소년 (청·소년비)	소년	청년	성인
1970	1,026,863	210,226 (20.5)	127,487 (12.4)	337,713 (32.9)	31.3	51.5	16.4
1977	1,252,885	278,162 (22.2)	161,165 (12.9)	439,327 (35.1)	34.4	60.3	18.8
1978	1,271,025	291,868 (23.0)	163,687 (12.9)	455,555 (35.8)	35.8	59.3	18.8
1979	1,317,054	294,290 (22.3)	173,841 (13.2)	468,131 (35.5)	36.0	60.9	19.5

자료 : Polizeiliche Kriminalstatistik, 1979 (Zeitreihen).

주 : 1) 소년에는 형사책임연령인 14세에 달하지 않은 아동도 포함.

2) 교통관계사건 및 국가보호범죄 제외.

3) 인구비는 각 연령총인구(단, 소년은 10세 이상 18세 미만의 인구) 1,000명당 검거인원의 비율.

〈표 1-11〉 주요 죄종별 형법범 검거인원의 소년비·청년비 및 인구비
서독(1970, 1977~1979)

① 살 인

		검 거 인 원			인 구 비		
	계	소 년 (소년비)	청 년 (청년비)	청·소년 (청·소년비)	소년	청년	성인
1970	2,335	114 (4.9)	259 (11.1)	373 (16.0)	1.7	10.5	4.7
1977	2,633	152 (5.8)	306 (11.6)	458 (17.4)	1.9	11.5	5.0
1978	2,632	154 (5.9)	305 (11.6)	459 (17.4)	1.9	11.0	5.0
1979	2,641	137 (5.2)	338 (12.8)	475 (18.0)	1.7	11.8	8.0

② 강 도

		검 거 인 원			인 구 비		
	계	소 년 (소년비)	청 년 (청년비)	청·소년 (청·소년비)	소년	청년	성인
1970	10,603	2,467 (23.3)	2,333 (22.0)	4,800 (45.3)	36.7	94.2	13.8
1977	15,929	4,711 (29.6)	3,475 (21.8)	8,186 (51.4)	58.3	130.1	17.9
1978	16,699	5,205 (31.2)	3,625 (21.7)	8,830 (52.9)	63.9	131.3	18.1
1979	16,847	5,035 (29.9)	3,707 (22.0)	8,742 (51.9)	61.6	129.8	18.6

③ 상 해

		검 거 인 원			인 구 비		
	계	소 년 (소년비)	청 년 (청년비)	청·소년 (청·소년비)	소년	청년	성인
1970	106,885	8,560 (8.0)	13,401 (12.5)	21,961 (20.5)	127.4	541.3	201.6
1977	137,607	15,913 (11.6)	18,211 (13.2)	34,124 (24.8)	197.0	681.6	239.6
1978	139,960	16,035 (11.5)	18,898 (13.5)	34,933 (25.0)	196.8	684.3	242.1
1979	155,538	17,656 (11.4)	21,095 (13.6)	38,751 (24.9)	216.1	738.5	267.8

④ 절 도

		검 거 인 원			인 구 비		
	계	소 년 (소년비)	청 년 (청년비)	청·소년 (청·소년비)	소년	청년	성인
1970	426,229	144,537 (33.9)	62,624 (14.7)	207,161 (48.6)	2,151.2	2,529.8	520.0
1977	552,549	201,474 (36.5)	75,105 (13.6)	276,579 (50.1)	2,493.8	2,811.1	638.9
1978	558,180	212,876 (38.1)	75,210 (13.5)	288,086 (51.6)	2,612.1	2,723.5	622.7
1979	564,174	212,959 (37.7)	78,218 (13.9)	291,177 (51.6)	2,606.7	2,738.2	626.0

⑤ 강 간

	계	검 거 인 원			인 구 비		
		소 년 (소년비)	청 년 (청년비)	청·소년 (청·소년비)	소년	청년	성인
1970	5,729	664 (11.6)	1,003 (17.5)	1,667 (29.1)	9.9	40.5	9.6
1977	5,379	455 (8.5)	844 (15.7)	1,299 (24.1)	5.6	31.6	9.4
1978	5,170	450 (8.7)	870 (16.8)	1,320 (25.5)	5.5	31.5	8.9
1979	5,077	413 (8.1)	829 (16.3)	1,242 (24.5)	5.1	29.0	8.8

⑥ 방 화

	계	검 거 인 원			인 구 비		
		소 년 (소년비)	청 년 (청년비)	청·소년 (청·소년비)	소년	청년	성인
1970	1,917	839 (43.8)	176 (9.2)	1,015 (52.9)	12.5	7.1	2.1
1977	2,367	939 (39.7)	312 (13.2)	1,251 (52.9)	11.6	11.7	2.6
1978	2,482	929 (37.4)	340 (13.7)	1,269 (51.1)	11.4	12.3	2.8
1979	2,666	977 (36.6)	388 (14.6)	1,365 (51.2)	12.0	13.6	3.0

자료 : Polizeiliche Kriminalstatistik, 1979 (Zeitreihen).

주 : 1) 소년에는 형사책임연령인 14세에 달하지 않은 아동도 포함.

2) 강도는 강도 및 강도적 공갈을, 상해는 중·위험상해 및 경상해
를, 절도는 중절도 및 단순절도를 각각 지칭함.

3) 인구비는 각 연령층(단, 소년은 10세 이상 18세 미만) 10만명
당 검거인원의 비율.

(129.8)는 성인(18.6)의 약 7배이다. 상해는 청·소년비가 24.9이며 청년의 인구비(738.5)는 성인(267.8)의 약 3배이다. 절도는 청·소년비가 51.6이며 청년의 인구비(2,738.2)는 성인(626.0)의 약 4배이다. 강간은 청·소년비가 24.5이며 청년의 인구비(29.0)는 성인(8.8)의 약 3배이다. 방화는 청·소년비가 51.2이며 청년의 인구비(13.6)은 성인(3.0)의 약 4배이다.

2) 소년사법제도

서독의 소년사법제도는 소년법원법(1953, 1974)에 규정되어 있다. 형사책임연령은 14세이며 18세 미만을 소년, 18세 이상 21세 미만을 청년, 21세 이상을 성인으로 간주한다. 소년에 의한 범죄는 원칙적으로 소년법원(Jugendgericht)의 관할이고 청년 및 성인에 의한 범죄는 통상의 형사법원의 관할이지만, 청년에 관해서는 「행위시에 있어서의 그 도덕적 및 정신적 발육의 면에서 아직 소년과 동등하다」고 평가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년법원법이 적용되어 소년과 동일한 절차와 처우가 행해진다(소년법원법 제105조 내지 109조).

소년법원은 간이법원, 지방법원 형사재판부 등 통상 법원의 판사 중 소년사건의 재판에 적합한 자질과 경험이 있는 소년판사(및 배심원)에 의해서 구성되며, 소년계판사, 소년배심법원 및 지방법원 소년재판부의 3종류로 나뉘어 통상의 형사법원의 특별부와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다.

소년(소년법원법이 적용된 청년도 포함. 이하 본항에서 동일)의 형사소추는 성인의 경우와 기본적으로 동일하여 경찰로부터 송치된 소년사건에 대해서 소년계 검사가 수사하여 기소·불기소를 결정하지만, 소년사건에 있어서는 기소유예의 권한이 성인사건보다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

소년법원의 심리절차는 대심구조를 취하고 있으며(단, 간이소년 절차에서는 검사의 심리관여의 의무는 없다), 유죄가 인정된 소년에 대해서는 교육처분(Erziehungsmaßregel), 징계처분(Zuchtmittel) 또는 소년형(Jugendstrafe) 등의 처분이 행해진다.

교육처분은 소년의 생활태도를 규제하고 교육을 촉진하기 위한 처분으로서 지시(거주, 교제, 흡연에 관한 지시 등)의 부여, 교육원 조 및 교호의 조치(소년복지법상의 조치)의 세종류가 있다.

징계처분은 「소년형은 필요치 않지만 소년에 대해서 범죄행위에 관한 책임을 자각시키기」 위해 행해지는 처분으로서 경고, 의무의 부과(손해배상, 피해자에 대한 사과 및 공공시설에 대한 일정 금액의 지불) 및 소년구금(Jugendarrest)의 세종류가 있다. 소년구금에는 휴일구금(주말휴일에 1회 내지 4회 부과되는 구금), 단기구금(6일 이내의 계속적인 구금) 및 계속구금(1주간 내지 4주간의 계속적인 구금)의 세종류가 있다. 징계처분은 형으로서의 법적 효과가 없고 전과로 기록되지 않는다.

소년형은 소년에 대한 형벌로서 정기형(6개월 내지 10년)과 부정기형(단기 6개월 이상, 장기 4년 이하)이 있다. 서독에는 소년원 제도가 없기 때문에 소년형의 단기 6개월과 소년구금의 장기 4주간 사이의 간격을 메워줄 시설내 처우가 없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소년법원법에는 교육처분의 우선성 및 소년처분의 보충성(소년형은 교육처분 또는 징계처분이 소년의 교육에 불충분할 경우, 또는 책임의 중대성에 비추어 형벌이 필요한 경우에만 부과된다)의 원칙 등 소년사법에 있어서의 교육적 이념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동법 제5조, 제17조).

이상과 같이 서독의 소년사법은 교육주의의 이념, 청년에 대한 중간적 처리, 검찰관선의(先議), 형사절차에 있어서의 대심구조,

소년처우 절차의 일원화(소년법원이 교육처분, 징계처분 또는 소년형 등을 선택적으로 과할 수 있다), 소년처우의 다양성 등을 특색으로 들 수 있다.

3) 소년사법의 운용

이와 같은 소년사법제도가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가를 공식 통계자료를 통해서 보면 다음과 같다.

형법범의 연령층별 유죄인원(교통범죄 포함. 이하 동일)을 보면(<표 1-12>), 1979년에 유죄인원 약 72만명 중 소년은 약 8만명(10.8%), 청년은 약 9만명(13.4%), 합계 약 17만명(24.2%)을 점하고 있다.

소년법원에 있어서의 같은 해의 형법범 유죄인원 약 13만명(소년이 약 8만명, 청년이 약 5만명, 이밖에 통상의 형사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청년이 약 4만명)에 대한 처분건수 약 18만건(유죄 소년 및 청년에 대해서는 징계처분과 교육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의 처분별 건수를 보면(<표 1-13>), 총수에서 교육처분은 21.3%, 징계처

<표 1-12> 형법범의 연령층별 유죄인원

서독(1979)			
총 수	소 년 (14세 이상 18세 미만)	청 년 (18세 이상 21세 미만)	성 인 (21세 이상)
718,779 (100.0)	77,857 (10.8)	96,240 (13.4)	544,682 (75.8)

자료: *Rechtspflege Reihe 1 (Ausgewählte Zahlen für die Rechtspflege)*, 1979.

주 : ()안의 수치는 구성비.

분은 68.6%, 소년형은 10.1%이다. 소년형을 받은 인원을 소년·청년별로 보면 소년이 6,487명(5.8%), 청년이 11,558명(17.2%)으로서 소년형은 소년보다 청년에 대해서 월등히 많이 부과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징계처분의 종류별 건수를 보면(〈표 1-14〉), 총수 약 12만건 중 의무의 부과가 40.7%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고(37.4), 소년구금(22.0%)의 순서이다. 소년구금의 건수를 소년·청년별로 보면 소년이 17,414건(23.4%), 청년이 9,519건(19.7%)으로서

〈표 1-13〉 소년법원에 있어서의 소년·청년별 형법법
유죄인원 및 처분별 건수

서독(1979)

	유죄인원	처분건수 총 수	소년형	징계처분	교육처분
총 수	127,236	178,627	18,045	122,593	37,989
		(100.0)	(10.1)	(68.6)	(21.3)
소년 (14세 이상 18세 미만)	77,857	111,363	6,487	74,350	30,526
		(100.0)	(5.8)	(66.8)	(27.4)
청년 (18세 이상 21세 미만)	49,379	67,264	11,558	48,243	7,463
		(100.0)	(17.2)	(71.7)	(11.1)

자료 : *Rechtspflege Reihe 1 (Ausgewählte Zahlen für die Rechtspflege)*, 1979.

주 : 1) 처분은 병과될 수 있기 때문에 처분건수 총수는 유죄인원과 일치하지 않음.

2) ()안의 수치는 구성비.

〈표 1-14〉 소년법원에 있어서의 연령종별 징계처분건수

서독(1979)

	총 수	소 년 구 금				의무의 부과	계
		계	계속 구금	단기 구금	휴일 구금		
총 수	122,593 (100.0)	26,933 (22.0)	10,462 (8.5)	1,908 (1.6)	14,563 (11.9)	49,850 (40.7)	45,810 (37.4)
소 년 (14세 이상 18세 미만)	74,350 (100.0)	17,414 (23.4)	5,606 (7.5)	1,198 (1.6)	10,610 (14.3)	25,364 (34.1)	31,572 (42.5)
청 년 (18세 이상 21세 미만)	48,243 (100.0)	9,519 (19.7)	4,856 (10.1)	710 (1.5)	3,953 (8.2)	24,486 (50.8)	14,238 (29.5)

자료 : *Rechtspflege Reihe 1 (Ausgewählte Zahlen für die Rechtspflege)*, 1979.

주 : ()안의 수치는 구성비.

청년보다는 소년에 대해서 보다 많이 부과되었음을 알 수 있다.

소년 및 청년의 소년법원에 있어서의 형법범 유죄인원 약 13만 명에 대한 주요죄종별 처분 및 소년형의 형기에 관해서 살펴보면 〈표 1-15〉와 같다. 소년형이 부과된 인원의 비율은 살인이 87.9%, 방화가 67.2%로서 소년형에 관한 보충성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의 중대범죄에서는 소년형이 상당히 많이 부과되고 있다.

〈표 1-15〉

소년법원에 있어서의 주요죄종별·처분의
종류별 유죄인원

서독(1979)

유죄 인원	소 년 형						징계 처분	교육 처분
	계	6월이상 1년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부정기			
총수	127,236	18,045	12,957	3,484	1,286	318	94,495	14,696
		(11,316)	(10,439)	(877)				
살인	145	145	3	15	125	2	—	—
		(12)	(2)	(10)				
강도	2,772	2,079	1,188	488	333	70	630	63
		(1,186)	(1,027)	(159)				
상해	7,071	1,258	950	216	77	15	5,336	477
		(787)	(745)	(42)				
절도	52,220	8,822	6,465	1,727	452	178	36,418	6,980
		(5,537)	(5,169)	(368)				
강간	306	269	131	86	49	3	33	4
		(143)	(112)	(31)				
방화	177	119	77	26	14	2	48	10
		(79)	(67)	(12)				

자료 : *Rechtspflege Reihe 3*, 1979.

주 : 1) 소년 및 청년을 합산하여 계산하였음.

2) 강도는 강도 및 강도적 공갈을, 상해는 위험·중상해 및 경상해를, 절도는 중절도 및 단순절도를 각각 가리킴.

3) 처분이 병과된 경우는 소년형, 징계처분, 교육처분의 순으로 주된 한가지를 계산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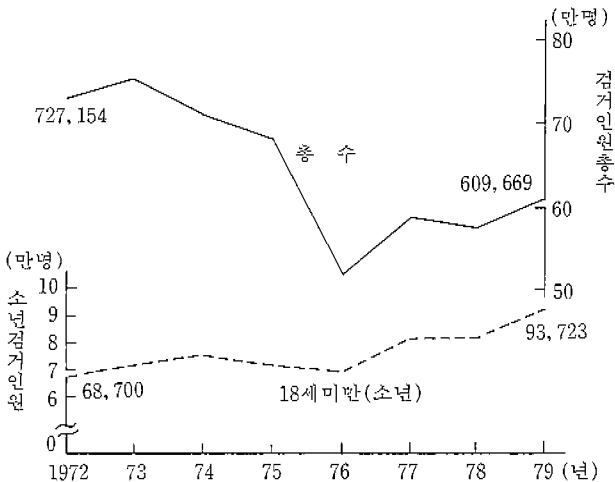
4) ()안의 수치는 형의 집행유예를 안도받은 자의 수.

4. 프랑스

1) 소년비행의 동향

프랑스의 형법범 검거인원 및 18세 미만의 소년 검거인원의 추이(1972~1979)를 도시하면 [그림 1-4]와 같다. 또한 <표 1-16> 및 <표 1-17>은 1972년과 1977~1979년의 형법범 총수, 살인, 강도, 상해, 절도, 강간, 방화의 주요 6죄종별 소년 검거인원, 소

[그림 1-4] 형법범 검거인원의 추이
프랑스(1972~1979)



자료 : *International Criminal Statistics; La Criminalité en France.*

인구에 관해서는 *Statistiques* 및 *Eurostat*도 참조.

주 : 1) 인원은 교통범죄를 제외한 형법범(중죄 및 경죄)의 검거인원.

2) 소년은 13세 이상 18세 미만.

〈표 1-16〉

형법범 검거인원의 소년비 및 인구비

프랑스(1972, 1977~1979)

	검 거 인 원			인 구 비	
	계	소년	소년비	소년	성인
1972	727,154	68,700	9.4	16.1	—
1977	582,770	82,151	14.1	19.1	13.0
1978	574,937	81,765	14.2	19.1	—
1979	609,669	93,723	15.4	21.8	—

자료 : *International Criminal Statistics; La Criminalité en France.*인구에 관해서는 *Statistiques* 및 *Eurostat*도 참조.

주 : 1) 인원은 교통범죄를 제외한 형법범(중죄 및 경죄)의 검거 인원.

2) 소년은 13세 이상 18세 미만.

3) 인구비는 인구 1,000명당 검거인원.

소년비 및 소년·성인의 인구비(1974, 1977~1979)를 나타낸 것이다(프랑스는 검거인원의 연령층별 통계가 없기 때문에 청년의 검거인원을 파악할 수 없고, 또한 검거인원에는 13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소년의 검거인원은 형법범 총수에서 1972~1979년의 8년간 약 69,000명에서 약 94,000명으로 약 1.4배 증가하였고, 소년비는 9.4에서 15.4로 상승하였다. 소년의 인구비는 1977년에 19.1로서 성인의 인구비(13.0)을 상회하고 있다.

주요 6죄종의 1977년 통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살인은 소년비가 5.6이며 소년의 인구비(2.6)는 성인(4.8)의 약 절반이다. 강도는 소년비가 21.4이며 소년의 인구비(51.8)는 성인(21.2)의 약 2배이다. 상해는 소년비가 8.3이며 소년의 인구비(58.5)는 성인(72.4)보다 낮다. 절도는 소년비가 28.4이며 소년의

〈표 1-17〉 주요죄종별 검거인원의 소년비 및 인구비
프랑스(1974, 1977~1979)

① 살 인

	검 거 인 원			인 구 비	
	계	소 년	소년비	소 년	성 인
1974	1,398	77	5.5	1.8	3.5
1977	1,952	110	5.6	2.6	4.8
1978	1,869	119	6.4	2.8	—
1979	1,988	108	5.4	2.5	—

② 강 도

	검 거 인 원			인 구 비	
	계	소 년	소년비	소 년	성 인
1974	7,907	1,565	19.8	37.6	16.9
1977	10,383	2,226	21.4	51.8	21.2
1978	10,710	2,650	24.7	61.7	—
1979	11,381	2,936	25.8	68.3	—

③ 상 해

	검 거 인 원			인 구 비	
	계	소 년	소년비	소 년	성 인
1974	28,499	2,064	7.2	49.6	70.4
1977	30,371	2,513	8.3	58.5	72.4
1978	28,347	2,180	7.7	50.8	—
1979	29,834	2,634	8.8	61.3	—

④ 절 도

	검 거 인 원			인 구 비	
	계	소 년	소년비	소 년	성 인
1974	192,019	51,617	26.9	1,239.3	373.7
1977	209,759	59,547	28.4	1,385.9	390.3
1978	205,775	59,811	29.1	1,393.5	—
1979	237,424	69,419	29.2	1,615.5	—

⑤ 강 간

	검 거 인 원			인 구 비	
	계	소 년	소년비	소 년	성 인
1974	1,468	215	14.6	5.2	3.3
1977	1,629	276	16.9	6.4	3.5
1978	1,711	220	12.9	5.1	—
1979	1,717	237	13.8	5.5	—

⑥ 방 화

	검 거 인 원			인 구 비	
	계	소 년	소년비	소 년	성 인
1974	1,520	382	25.1	9.2	3.0
1977	1,337	387	28.9	9.0	2.5
1978	1,461	435	29.8	10.1	—
1979	1,745	611	35.0	14.2	—

자료 : *International Criminal Statistics; La Criminalité en France.*

인구에 관해서는 *Statistiques* 및 *Eurostat*도 참조.

주 : 1) 소년은 13세 이상 18세 미만.

2) 인구비는 인구 10만명당 검거인원.

인구비(1,385.9)는 성인(390.3)의 약 4배이다. 강간은 소년비가 16.9이며 소년의 인구비(6.4)는 성인(3.5)의 약 2배이다. 방화는 소년비가 28.9이며 소년의 인구비(9.0)는 성인(2.5)의 약 4배이다.

2) 소년사법제도

프랑스의 소년사법제도는 소년법(범죄소년에 관한 1945년 2월 2일 조령(Ordonance)) 등에 규정되어 있다. 형사책임연령은 13세이며 13세 이상 18세 미만을 소년, 18세 이상을 성인으로 간주한다. 소년에 의한 범죄는 소년계판사(juge des enfants), 소년법원(cour d'assises des mineurs)의 3종류의 소년법원에 의해서 범죄유형(위경죄 제5류, 경죄, 중죄) 및 범행시 연령의 구분(16세)에 따라 관할이 결정된다. 또한 소년에 의한 통상의 위경죄(違警罪)는 성인과 동일하게 위경죄법원의 관할이다.

소년법원과 소년중죄법원(16세 이상 소년의 중죄사건을 관할)은 각각 지방법원과 중죄법원에 대응하는 소년법원이다. 프랑스의 소년사법에서 특색있는 점은 소년계 판사이다. 소년계 판사는 각 소년법원에 배속되어 경죄사건에 관해서 예비조사에 의거하여 소년의 인격·환경에 관한 사회조사 및 자질감별을 하고(감별수용소 등의 가감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예비판사적 기능을 행함과 아울러 사건을 심판한다. 단, 내릴 수 있는 처분은 가벼운 교육처분(훈계, 친권자 등에의 위탁) 뿐이다. 소년계 판사는 또한 소년법원에서 재판장으로서 다른 2명의 배심원과 더불어 재판을 진행한다.

소년의 형사소추 및 재판은 성인의 경우와 기본적으로 동일하여 경찰 등으로부터 송치받은 소년사건에 관해서 검사가 기소·불기소를 결정한다. 프랑스에서는 기소판의주의(형사소송법 제40

조 제1항)에 따라 소년을 불기소처분할 수 있다. 또한 예심제도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불기소처분되지 않은 소년사건은 소년계판사 또는 예심판사에게 송치되어 예비조사 또는 예심을 거쳐서 앞서의 각 소년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

소년법원 및 소년중죄법원에 있어서의 심리는 대심구조를 채택하며, 유죄가 인정된 소년에 대해서는 교육처분(보호처분, mesure de rééducation) 또는 형사처분이 부과된다. 소년계판사의 심판은 자유로운 절차의 방식에 따라 판사실 등에서 행해진다.

교육처분은 훈계, 친권자 등에의 위탁, 교육·직업훈련시설 수용, 의료시설 등 수용, 소년원 수용 등 다양한 종류가 있고, 형사처분은 구금형(정기형만)과 벌금형이 있다. 이 양 처분에 관해서는 교육처분의 우선성의 원칙에 따라 형사처분은 「범죄의 정황 및 범인의 인격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만 부과할 수 있다(소년법 제2조).

이와 같은 형사절차 외에 「요보호소년」(mineurs en danger : 21세 미만의 우범 또는 방임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적인 성격의 보호절차가 소년계판사의 관할 아래 있다.

이상과 같이 프랑스의 소년사법은 교육(보호)주의의 이념, 검사선의, 형사절차에 있어서의 대심구조, 소년계판사의 제도, 소년처우에 있어서의 절차의 일원화, 교육처분의 다양성 등이 특색이라고 할 수 있다.

3) 소년사법의 운용

이와 같은 소년사법제도가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가를 공식 통계자료에 의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년(13세 미만 포함)의 유죄인원의 처분을 보면(<표 1-18>), 1979년에 총수 약 6만명 중 교육처분이 약 4만명(67.4%), 형사

〈표 1-18〉

범죄소년의 처분종류별 연도인원

프랑스(1979)

	13세 미만		13세 이상 18세 미만	
	교육처분	형사처분	교육처분	형사처분
60,219	2,846	—	37,743	19,630
(100.0)	(4.7)	(—)	(62.7)	(32.6)

자료 : 프랑스 법무성 감독교육국(Direction de l'Education Surveillée)의 자료.

주 : ()안의 수치는 구성비.

처분이 약 2만명(32.6%)이다(프랑스에서는 13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하고 교육처분을 언도할 수 있다 : 소년법 제15조).

교육처분을 받은 약 4만명의 소년에 관해서 종류별 연도인원을 보면(〈표 1-19〉), 혼계가 66.8%로서 가장 많고, 친권자 등에

〈표 1-19〉

범죄소년의 교육처분 종류별 연도인원

프랑스(1979)

총 수	소년원	의료·치료 교육시설	사회원조 기관	친권자 등 위탁	혼 계
40,589	1,150	52	138	12,125	27,124
(100.0)	(2.8)	(0.1)	(0.3)	(29.9)	(66.8)

자료 : 프랑스 법무성 감독교육국(Direction de l'Education Surveillée)의 자료.

주 : 1) 「소년원」이란 이른바 소년원(Les internats professionnels d'éducation surveillée, I.P.E.S. 및 Les institutions spéciales d'éducation surveillée, I.S.E.S.) 외에 공립·사립의 재교육시설 포함.

2) ()안의 수치는 구성비.

의 위탁의 29.9%가 그 다음이며 소년원 수용은 2.8%(1,150명)이다.

형사처분을 받은 약 2만명의 소년에 관해서 형의 종류별 인원 및 구금형 중 실형의 언도를 받은 자의 형기별 구성비를 보면(<표 1-20>), 구금형이 13,946명(71.0%), 벌금이 5,684명(29.0%)이며, 구금형(실형)의 언도를 받은 4,125명 중 형기 4개월 이하가 83.9%를 차지하고 있다.

<표 1-20> 범죄소년의 형사처분 종류별 언도인원 및 실형의 형기내역
프랑스(1979)

형사처분 종 수	구		금 형				벌 금
	종 수	실 형	실형의 형기별 구성비				
			소계	4개월 이하	1년 이하	1년 초과	
19,630 (100.0)	13,946 (71.0)	4,125 (21.0)	100.0	83.9	13.3	2.8	5,684 (29.0)

자료: 프랑스 법무성 감독교육국(Direction de l'Education Surveillée)의 자료.

주 : ()안의 수치는 구성비.

5. 일본 소년비행의 국제비교

앞에서 설명한 구미제국의 소년비행의 동향 중 미국과 서독의 1979년 형법범 총수 및 주요 6죄종의 소년비, 청·소년비를 일본과 대비하여 표로 정리하면 〈표 1-21〉과 같다.

〈표 1-21〉 미국, 서독 및 일본에 있어서의 형법범 검거인원의
주요죄종별 소년비(및 청·소년비)

(1979)

	총수	살인	강도	상해	절도	강간	방화
미국	38.8 (57.1)	9.3 (24.2)	31.5 (54.5)	15.5 (31.0)	43.4 (62.0)	15.9 (34.0)	49.0 (62.1)
서독	22.3 (35.5)	5.2 (18.0)	29.9 (51.9)	11.4 (24.9)	37.7 (51.6)	8.1 (24.5)	36.6 (51.2)
일본	39.0 (45.1)	2.9 (5.3)	17.7 (31.4)	13.7 (20.8)	48.2 (54.2)	18.7 (33.3)	36.9 (39.5)

자료 : 미국은 *Uniform Crime Reports, Crime in U.S.*, 서독은 *Polizeiliche Kriminalstatistik*, 일본은 경찰청 통계.

- 주 : 1) 형법범 총수는 서독은 형법범에서 교통범죄 및 국가보호 범죄를, 일본은 형법범에서 교통관계 업무상(중)과실 치사상을 제외하였고, 미국은 지표범죄(Crime Index), 즉 폭력범(살인, 강도, 상해, 강간), 재산범(절도) 및 방화의 합계.
- 2) 소년은 각국 모두 18세 미만.
- 3) 소년비는 검거인원총수중에서 점히는 소년검거인원의 비율.
- 4) ()안은 소년 및 청년(미국과 서독은 18세 이상 21세 미만, 일본은 18세 이상 20세 미만)의 검거인원 합계가 검거인원 총수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청·소년비).
- 5) 서독의 강도는 강도 및 강도적 공갈을, 상해는 위험·중상해 및 경상해를, 절도는 중절도 및 단순절도를 가리킴.

일본의 소년비 39.0은 서독의 22.3을 훨씬 상회하고 있으며 미국의 38.8을 근소하게 앞서고 있다. 살인과 강도에 있어서는 양국보다 상당히 낮지만 상해, 방화의 경우에는 서독보다 높고 절도, 강간은 3개국 중 최고수준이다. 청·소년비를 살펴보면 일본의 45.1은 미국의 57.1보다는 낮지만 서독의 35.5를 월등하게 상회하고 있다. 살인, 강도, 상해 및 방화의 경우에는 양국보다 낮지만, 절도, 강간은 서독보다 높다(또한 일본의 「청년」에는 20세의 검거인원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 서독과 동일하게 일본도 20세의 검거인원을 포함하여 청·소년비를 산출하면 앞서 표의 수치보다도 훨씬 높게 나타나리라 예상되지만 연령별 통계가 없기 때문에 이를 산출할 수 없다).

다음으로 3개국의 소년인구비 및 청년인구비를 1978년의 형법범 총수 및 주요 6죄종에 관해서 정리해 보면 <표 1-22>와 같다. 일본 형법범 총수의 소년인구비 11.4는 서독의 35.8보다 현저하게 낮다(미국의 형법범 총수의 인구비는 지표범죄에만 국한되었기 때문에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주요죄종별 소년인구비를 보면, 살인은 일본(0.4)이 미국(5.6)의 약 1/15, 서독(1.9)의 약 1/6이며, 강도는 일본(2.2)이 미국(154.5)의 약 1/70, 서독(63.9)의 약 1/30에 머물러 있는 등 일본의 소년인구비는 6죄종 모두에 걸쳐서 현저하게 낮다. 청년인구비도 일본의 수치는 양국보다 현저하게 낮다.

한편 인구비의 비교에 있어서는 각국의 검거율의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검거율의 높고낮음은 검거인원과 인구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일본의 강도검거율은 1978년에 78.0으로서 미국(25.9)의 약 3배이기 때문에 실제 인구비에 있어서의 양국의 격차는 보다 현저할 것이다. 구미제국과 일본의 형법범 총수 및 주요 6죄종의 1979년의 검거율은 <표 1-23>과 같다.

〈표 1-22〉 미국, 서독 및 일본에 있어서의 소년형법범 검거인원의
주요 죄종별 소년인구비(및 청년인구비)

(1978)

	총수	살인	강도	상해	절도	강간	방화
미국	28.2 (29.9)	5.6 (21.6)	154.5 (247.6)	132.5 (296.3)	2,515.7 (2,383.9)	14.5 (36.9)	28.1 (17.5)
서독	35.8 (59.3)	1.9 (11.0)	63.9 (131.3)	196.8 (684.3)	2,612.1 (2,723.5)	5.5 (31.5)	11.4 (12.3)
일본	11.4 (7.9)	0.4 (1.2)	2.2 (7.2)	34.9 (75.9)	928.2 (500.7)	3.4 (15.2)	3.0 (1.3)

자료: 〈표 1-21〉과 동일. 인구에 관해서는 미국은 *Current Population Reports*, 서독은 *Polizeiliche Kriminalstatistik*, 일본은 총리부 통계국의 인구자료.

- 주 : 1) 형법범 총수는 서독은 형법범에서 교통범죄 및 국가보호범죄를, 일본은 형법범에서 교통관계업무상(중)과실치사상을 제외하였고, 미국은 지표범죄(Crime Index), 즉 폭력범(살인, 강도, 상해, 강간), 재산범(절도)의 합계.
- 2) 소년은 각국 모두 18세 미만.
- 3) 서독의 강도는 강도 및 강도적 공갈을, 상해는 위험·중상해 및 경상해를, 절도는 중절도 및 단순절도를 가리킴.
- 4) 인구비는 10세 이상 18세 미만 연령층의 10만명(총수의 경우에는 1,000명)에 대한 소년형법범 검거인원(18세 미만)의 비율.
- 5) ()안의 수치는 청년(미국과 서독은 18세 이상 21세 미만, 일본은 18세 이상 20세 미만)에 관한 인구비.

이상과 같이 일본의 소년비행은 인구비에서 구미제국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 이것은 범죄발생율이 낮고 치안상태가 양호한 일본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10년간의 소년 검거인원의 증가율은 약 1.4배로 매우 높고, 또한 소년비에

〈표 1-23〉 구미제국과 일본에 있어서의 형법범 주요죄종별 검거율

(1979)

	총수	살인	강도	상해	절도	강간	방화
미 국	19.8	73.4	24.9	59.2	17.1	47.8	—
영 국	41.3	85.5	31.1	76.3	36.2	88.2	34.1
서 독	44.7	95.4	52.7	88.6	29.4	71.8	40.9
프랑스	39.0	61.1	27.3	77.7	18.2	77.2	38.5
일 본	59.4	97.5	76.3	93.3	54.7	89.3	87.7

자료 : 〈표 1-21〉과 동일. 영국은 *Criminal Statistics England and Wales*, 1979, 프랑스는 *La Criminalité en France*, 1979.

- 주 : 1) 형법범 총수는 독일은 형법범에서 교통범죄 및 국가보호범죄를, 일본은 형법범에서 교통관계업무상(중)과실치사상을 제외하였고, 미국은 지표범죄(Crime Index), 즉 폭력범(살인, 강도, 상해, 강간), 재산범(절도) 및 방화의 합계.
- 2) 서독의 강도는 강도 및 강도적 공갈을, 상해는 위협·중상해 및 경상해를, 절도는 중절도 및 단순절도를 가리킴.
- 3) 검거율은($\frac{\text{검거건수}}{\text{발생건수}} \times 100$)임. 또한 일본의 검거율은 교통관계업무상(중)과실치사상을 제외한 형법범 총수의 검거율임.

서 나타나듯이 범죄에 관여하는 소년의 비율은 점차 증가하여 이미 구미의 수준에 도달해 있어, 살인과 강도를 제외한 형법범 총수, 상해, 절도, 강간 및 방화에서는 서독을 상회하고 있다.

Ⅲ. 소년비행의 요인과 대책

1. 소년비행의 요인과 배경

구미제국에 있어서의 소년비행의 급증의 요인과 배경으로서 미국의 국가(대통령) 자문위원회, 영국의 내무성·소년아동문제위원회, 구주공동체의 범죄문제위원회 등의 공식보고서와 여러 학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1) 풍요로운 사회(도시형·대중소비사회)에 있어서의 물질주의와 감각주의(약물, 성, 스피드 등), 소유와 향락에의 과도한 자극·유혹, 비행기회의 확대(백화점, 슈퍼마켓의 상품진열방식 등)

(2) 교육·취직기회의 불평등, 실업, 슬럼 등의 제문제

(3) 전통적인 사회윤리상의 가치관 또는 이상형(국가·가족에 대한 헌신, 정의, 근면 등)의 변화 내지는 다양화, 소년교육에 있어서의 부모와 교사의 권위 저하와 자신감의 상실, 가정·학교·종교·지역사회 등 비공식적인 사회통제기능의 약화

(4) 소년의 신체적·성적 발달의 「가속화」와 정신적·정서적 발달의 「퇴행」(유아화현상), 사회의식 및 자발성의 미성숙

(5) 소년의 신체적·정신적 에너지를 소모·승화시킬 수 있는 건전한 놀이, 스포츠 및 노동 기회의 감소

(6) 애정과 규율에 의거하여 자녀의 인격적 발전을 위한 기초를 형성하는 가족공동체의 붕괴 또는 기능저하(이혼, 별거, 핵가족화 등)에서 비롯되는 교육기능의 퇴화(방임, 과보호, 지나친 간섭, 부모 교육방침의 모순 등)

(7) 현대공업사회에 있어서의 교육기간의 연장(고학력사회)과 학교교육의 지성주의와 기술주의

(8) TV·출판물 등 매스미디어의 영향(특히 폭력의 예찬 또는 합리화)

(9) 생활수준의 향상과 종류화에 따른 「보수의 연기모델」(장기적인 시야에서 합리적인 목표의 달성을 위해 일시적인 욕구의 충족을 희생하는 것)의 포기(부모가 자녀가 원하는 모든 물건을 사주거나 필요이상의 용돈을 주기 때문에 억제, 결핍, 노동, 절약 등의 가치가 상실됨. 그리고 소년의 「구속받지 않는 전능한 힘」(omnipotence)의 의식으로부터 일상생활의 무의미, 권태, 무관심, 목표상실현상이 나타남)

(10) 물질적 욕망의 자극, 억제력의 감퇴, 가치관의 변화 등에서 비롯되는 규범(윤리·법)의식의 저하

이와 같은 배경 아래 구미선진제국의 소년비행에 공통된 특질은 상점에서 물건훔치기, 자전거·오토바이 절도 등의 이욕·놀이형의 재산범, 강도(특히 노상에서 여성이나 노인을 습격하는 소년의 노상강도) 및 흉악범·조폭범(폭력범죄) 및 약물범죄의 증가현상으로서, 특히 미국에서는 학교내폭력과 가정내폭력 및 「소년폭력단」(youth gang)의 학교개입이 문제가 되고 있다.

가정내폭력, 특히 부모에 대한 살인, 상해 등 폭력사범 증가의 요인으로서 유아기에 있어서의 부모의 체벌에 의한 「유아기 피학대증후군」(battered child syndrome), 부모의 자녀에 대한 과대

한 기대에 대한 반발과 증오, 인격형성기에 있어서의 부모에 대한 애증이 혼합된 정신상태(ambivalence) 등이 지적되고 있다.

교내폭력, 특히 미국의 공립학교에 있어서의 폭력범죄는 가정내 폭력과도 연관되어 있지만, 나아가서는 인종문제, 약물, 총기, 슬럼, 소년폭력단 등의 요인에 의해서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어 의회의 조사위원회에서 수차례 다루어졌다. 법무성의 자료(「도시학교에 있어서의 범죄에 의한 피해」, 1979)에 따르면 <표 1-24>에 나타나 있듯이 1974~1975년에 뉴욕, 시카고, 로스앤젤리스 등 26개 도시의 학교내에서만 추정치로 약 27만건의 강도, 강간, 폭행상해 및 절도가 발생하였다. 절도를 제외한 폭력사범에만 국한하면 교사에 대한 사건은 강도가 약 450건, 폭행상해가 약 4,100건이며, 학생에 대한 사건은 강도가 약 13,000건, 폭행상해가 약

<표 1-24> 교내폭력의 발생건수 및 피해자별 구성비

미국						
	총수	강도	가중폭 행상해	단순폭 행상해	강간	접촉 절도
총수	270,296	14,992	9,428	20,858	529	5,948
		(100)	(100)	(100)	(100)	(100)
학생	212,244	(88)	(69)	(73)	(74)	(82)
교사	22,098	(3)	(17)	(12)	(0)	(2)
기타	35,954	(9)	(13)	(15)	(26)	(16)

자료 : *Criminal Victimization in Urban Schools*, 1979.

주 : 1) 이 표의 수치는 1974~1975년 동안 미국의 주요 26개도시, 26만세대, 약 57만명의 표본에 대해서, 법무성·LEAA, 통계국의 직원이 실시한 면접조사에 기초한 추정치임.

2) 「기타」는 고용원, 경비원, 간호사, 영양사 등.

3) ()안의 수치는 구성비.

21,000건, 강간이 약 400건이다.

이 폭력사건 중 흉기가 사용된 사건은 <표 1-25>에 나타난대로 강도에서는 22%~38%, 가중폭행상해에서는 98%~99%이다. 그러나 교내폭력사건의 경찰신고율은 매우 낮아서 <표 1-26>에 나타난대로 총수의 7% 내지 22%에 불과하다. 학교당국 및 학생이 피해를 경찰에 통보하지 않은 이유로서는 보복에 대한 공포, 교내 규율문란에 대한 학부형의 비난을 면하기 위해, 학교체면에 대한 고려 등이 제시되었다.

또한 폭력조직의 학교개입은 매우 현저하여 그 활동은 학생에 대한 폭행·공갈뿐만 아니라 학교행정을 약제화시키고 학교시설을 지배하는 조직적인 「이득과 통제」(폭력의 피해를 받지 않고 정상적인 학교운영이 가능한 대가로서의 공갈피해 등)의 형태로 전개되

<표 1-25> 교내폭력의 피해자별 흉기사용 비율

	미국			
	학 생		교사·기타	
	강 도	가중폭행 상 해	강 도	가중폭행 상 해
총 수	100 (13,185)	100 (6,528)	100 (1,808)	100 (2,900)
흉기사용 비율	22	98	38	99

자료 : *Criminal Victimization in Urban Schools*, 1979.

주 : 1) 이 표의 수치는 1974~1975년 동안 미국의 주요 26개도시, 26만세대, 약 57만명의 표본에 대해서, 법무성·LEAA, 통계국의 직원이 실시한 면접조사에 기초한 추정치임.

2) 「기타」는 고용원, 경비원, 간호사, 영양사 등.

3) ()안의 수치는 실수.

〈표 1-26〉

교내 폭력의 경찰신고 비율

미국

피해자	총 수	강 도	가중폭 행상해	단순폭 행상해	강 간
학 생	7	9	18	14	47
교사·기타	22	29	41	25	12

자료 : *Criminal Victimization in Urban Schools*, 1979.

주 : 1) 이 표의 수치는 1974~1975년동안 미국의 주요 26개도시, 26만세대, 약 57만명의 표본에 대해서, 법무성·LEAA, 통계국의 직원이 실시한 면접조사에 기초한 추정치임.

2) 「기타」는 고용원, 경비원, 간호사, 영영사 등.

3) 표중의 수치는 각 항목에 있어서 경찰신고를 한 인원의 백분비.

고 있다. 이밖에 학교설비의 파괴 및 방화(vandalism), 약물남용 등을 포함하여 학교에 있어서의 「폭력의 공포」와 「교육의 황폐」는 특히 대도시의 중심지역에서 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상과 같은 구미제국의 소년비행의 급증의 요인과 배경은 일본의 소년비행과 공통되는 점이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의 소년비행이 인구비에서 보면 구미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는 것은 민족적·문화적 동질성, 가족·지역사회 등 사회집단의 연대성, 경제의 발전과 고용기회의 증대, 높은 교육수준과 교육기회의 균등, 국민의 근면성과 상송의욕, 전반적인 사회적 안정성 등 일본 고유의 사회적·문화적 특질에 따른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일본의 소년비행의 수준은 소년비에 있어서는 이미 구미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더 높은 수준에 있다. 또한 교내폭력의 증가, 폭주족에 의한 폭력사범의 증가 등에서 볼 수 있는 소년비

행의 조폭화경향, 소년 약물사범의 급증 등 최근의 소년비행의 실정을 보면 일본 고유의 사회적·문화적 특질도 현대의 사회적 변화에 따라 점차 변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소년비행의 방지대책

소년비행은 앞서 설명했듯이 복잡·다양한 요인들과 관련되어 있다. 「풍요로운 사회속에서의 범죄(비행)의 급증」이라는 구미선진제국과 일본에 공통된 현상은 현대의 격심한 사회적 변화와 불가분하게 결부되어 있다. 증대하는 소년비행은 이와 같은 사회적 배경하에 발생하는 대량적인 반사회적(반규범적) 행위로서 사회병리적인 의미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소년비행의 방지는 소년사법 또는 형사정책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사회적인 문제로서 전국민적인 대응이 필요불가결하다.

그 대응은 일반적으로, 제1차적인 대응(가정, 학교, 고용, 사회보장, 레크리에이션, 매스미디어 등의 각 분야에 있어서의 소년비행 방지를 위한 사회적·경제적·문화적 환경의 정비), 제2차적 대응(비행화의 우려가 있는 소년에 대한 경찰 및 소년복지기관의 보도·원조에 의한 소년비행의 방지) 및 제3차적 대응(형사법의 적절·타당한 집행에 의한 검거, 적정·효과적인 소년사법의 운용과 시설내처우 및 사회내처우 등에 의한 비행소년의 재사회화와 재범방지)의 세단계로 구분되며, 특히 제1차적 대응이 소년비행방지에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구미에서는 최근 소년비행의 요인으로서 생물적·사회적 요인(사춘기·술람·빈곤 등)에 관한 전통적인 「유전과 환경」설을 넘어서 인격형성기에 있는 소년에 관한 정신적·문화적 요인을 중시하는 견해가 유력해졌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사회윤리의 기초로서의 법규범의 의미(예를 들면, 절도를 하면 왜 체포되고 처벌받는가에 대한 윤리적 의미)에 대한 가정, 학교, 매스미디어 등을 통한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미국의 「소년사범·비행방지에 관한 국가자문위원회」의 「소년사범운영기준」(1980)은 학교 교육과정에서 소년사범제도를 학생들에게 이해시키는 것을 「법에 대한 신뢰·존중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필요불가결한 요소」로 보고, 소년사범의 목적·작용·규제 등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설정하여 경찰관, 검찰관 또는 재판관을 강사로 초빙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매스미디어의 사회적 책임으로서 소년이 사회에 대해서 「적극적인 이미지」를 갖고 「건설적인 목적」하에 「법을 지키는 행동」을 할 것을 촉진하기 위해 그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가정내폭력의 대책으로서는 구미에서는 사회복지기관에 의한 문제가정의 조기발견과 카운슬링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동시에 가정내에 공권력이 개입하기 곤란한 점과 부모의 자녀에 대한 징계권의 행사에 관한 법률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교내폭력의 대책으로서 미국에서는 보안관리(학생집단에 의한 교내순찰, 학교경비담당 경찰관의 집무실 설치, 침입경보장치의 설치 등), 카운슬링활동(폭력단 구성원에 대한 개인 카운슬링, 집단토의 등), 교육과정(형법의 학습 등)이 행해지고 있다.

이와 같은 구미제국에 있어서의 소년비행의 방지대책은 일본의 사회적·문화적 환경과의 차이와 더불어 교내폭력 및 기타 폭력사범이 아직 미국만큼 확산·심각화되어 있지 않은 일본의 현상에 비추어 볼 때 반드시 적절하다고만은 평가할 수 없는 측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일본에도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소년비행의 저연령화경향이 현저한 현실에서 가정과 학교에서 사회생활의 기초로서의 윤리 또는 법의 정당한 의미를 교육시킬 필요성이 점차 강하게 인식되고 있다. 또한 경찰, 검찰, 가정법원 및 교정·보호기관이 소년비행의 방지와 소년처우에서 담당해야 할 사회적 책임도 앞으로 점차 높아질 것이다.

제 2 부
소년비행과 소년사범의 동향 II :
1980년대

I. 개 설

여기서는 한국의 소년비행과 비행소년의 처우상황을 외국과 비교하기 위해 입수가능한 공식적 자료의 범위내에서 외국 소년비행의 동향 및 소년사법제도와 운용상황에 관해서 개관하기로 한다.

비교대상국으로 선정된 나라는 미국, 영국(단 England 및 Wales에 국한됨), 서독(통일 이전), 프랑스, 일본의 5개국이다. 비교대상 기간은 1980년부터 1988년까지이다.

각국의 범죄·사법통계는 나라에 따라 법률상의 범죄구성요건 및 통계분류상의 차이(예컨대, 중죄·경죄, 정식기소범죄, 지표범죄 등), 소년연령의 법률상의 차이(예컨대, 소년사법상의 소년은 구미에서는 18세 또는 17세 미만의 경우가 많음에 비해 한국 및 일본에서는 20세 미만)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소년비행의 동향을 통일적인 기준에 따라 국제적으로 비교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가능한 한 동일한 연령층별로 통계수치를 정리하고 또한 형법범 등 주요범죄 전체 및 범죄구성요건이 거의 동일한 몇가지의 죄종을 비교대상으로 하는 방법을 통해, 각국의 소년비행의 동향을 개괄적으로 비교·검토하는 것이 결코 불가능한 것은 아

니다.

비교대상 5개국의 소년사법제도 및 통계상의 구분을 검토한 결과, 여기서는 편의상 18세 미만(단, 영국은 17세 미만)을 「소년」, 18세 이상 21세 미만(단, 한국과 일본은 20세 미만)을 「청년」, 그 이외의 사람들은 「성인」으로 지칭하기로 했다(단, 프랑스에는 법률상 청년이라는 개념이 없고 또한 연령별 통계도 입수할 수 없었기 때문에 18세 이상을 일괄해서 「성인」으로 지칭했다. 아울러 소년과 청년 모두를 일괄해서 언급할 때는 「청·소년」이라고 했다).

이를 토대로 각국의 형법범 등 주요범죄 전체 및 살인, 강도, 상해, 절도, 강간, 방화의 여섯가지 죄종(이하 「특정6죄종」이라 한다)의 소년, 청년별 검거인원의 추이에 의거하여 비행의 동향을 개괄하기로 한다. 또한 살인, 강도 등을 「죄명」이라고 하지 않고 「죄종」이라고 지칭했는데, 이것은 비교대상국에 따라서 여러 죄명의 통계수치를 합산해야만 한국의 한 죄명과 비교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비행의 동향을 나타내는 지표로서는 ① 소년비(청년비, 청·소년비), 즉 검거인원에서 접하는 소년(청년, 청·소년)의 비율과 ② 소년인구비(청년인구비, 성인인구비), 즉 각 연령층의 인구 10만명당 검거인원의 비율을 이용하기로 했다. 단, 형법범 등 주요범죄 전체의 통계에 있어서는 수치를 간명하게 표시하기 위해 소년인구비, 청년인구비, 성인인구비 모두 인구 1,000명당 비율을 사용했다.

II. 세계 주요국의 동향

1. 한 국

1) 소년비행의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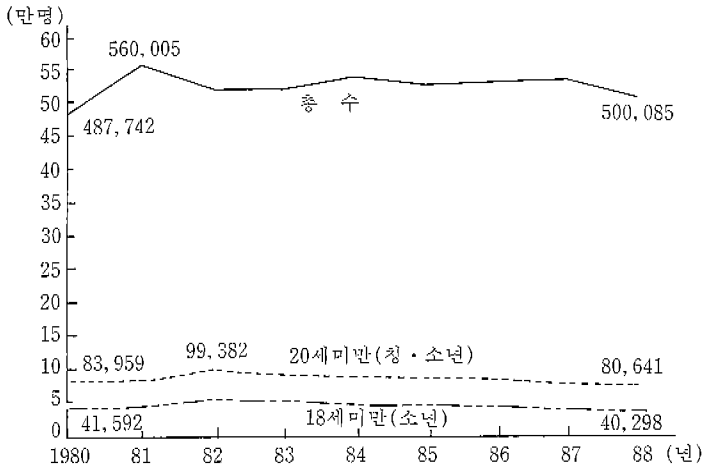
한국에 있어서 1980~1989년 기간 동안의 형법범 검거인원의 총수, 18세 미만의 소년 검거인원 및 20세 미만의 청·소년 검거인원의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2-1]과 같다. 형법범 검거인원은 1981년에 급증, 약 56만명에 달하여 이 기간 중 최고를 기록한 뒤 다소 기복이 있기는 해도 점차 감소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청·소년의 형법범 검거인원은 1982년의 99,382명을 정점으로 그뒤 대체로 줄어들어서 1988년에는 80,641명으로 되었다. 또한 18세 미만 소년의 경우에도 거의 동일한 경향이 발견된다.

〈표 2-1〉은 1980년 및 1986년부터 1988년까지 최근 3년간의 형법범 송치인원 총수, 소년·청년별 송치인원, 소년비·청년비 및 소년·청년·성인의 인구비를 나타낸 것이다. 모든 해에 걸쳐서 청·소년형법범 송치인원은 8만명대, 청·소년비는 15%~17%

[그림 2-1]

형법범 검거인원의 추이

한국(1980~1988)



자료 : 「범죄백서」

주 : 1) 폭력행위등 처벌법 위반 포함.

2) 소년에는 14세 이상의 범죄소년뿐만 아니라 12세 이상의 촉법소년도 포함됨.

정도로써 일본의 형법범 전체에서 점하는 청·소년비가 5할대를 넘고 있음에 비하면 현저하게 낮다.

〈표 2-2〉는 1980년 및 1986년부터 1988년까지 최근 3년간 특정 6죄종의 송치인원 총수, 소년·청년별 송치인원, 소년비·청년비 및 소년·청년·성인의 인구비 등을 나타낸 것이다.

살인은 총수가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비의 증가율이 현저하여 1988년에는 18.9%(138명)가 되었다. 강도는 청·소년비가 높아서 1988년에는 총수 4,731명중 53.5%(2,529명)였다. 인구비별로 보면 살인, 강도 모두 청년인구비가 높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상해의 경우에는 청·소년비가 낮은 편으로서

〈표 2-1〉 형법범 송치인원, 소년비·청년비 및 인구비

한국(1980, 1986~1988)

	계	송 치 인 원			인 구 비		
		소 년 (소년비)	청 년 (청년비)	청·소년 (청·소년비)	소년	청년	성인
1980	487,742	41,592 (8.5)	42,367 (8.7)	83,959 (17.2)	5.8	22.9	19.6
1986	533,235	47,443 (8.9)	41,763 (7.8)	89,206 (16.7)	6.7	24.2	18.0
1987	536,036	41,659 (7.8)	38,366 (7.2)	80,025 (14.9)	6.0	21.6	18.0
1988	500,085	40,298 (8.1)	40,343 (8.1)	80,641 (16.1)	5.9	22.1	16.2

자료 : 「범죄백서」, 법무연수원 및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의 자료.

주 : 1) 인구비는 각 연령층인구(18세 미만의 소년에 있어서는 10세 이상 18세 미만의 인구) 1,000명당 송치인원의 비율.

2) 폭력행위등 처벌법 위반 포함.

3) 소년에는 14세 이상의 범죄소년뿐만 아니라 12세 이상의 촉법소년도 포함됨.

6% 전후에서 거의 평형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절도는 일본의 청·소년비가 5할을 넘고 있음에 대해서 한국의 그것은 45%전후로 약간 낮고, 또한 소년비가 청년비의 2.2배임이 주목된다. 강간의 청·소년비는 35%에서 40%정도에 이르고 있고, 청년의 인구비가 성인의 인구비보다 높다. 방화의 청·소년비는 10%에도 못미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표 2-2〉 특정 죄종별 송치인원, 소년비·청년비 및 인구비
한국(1980, 1986~1988)

① 살 인

	계	송 치 인 원			인 구 비		
		소 년 (소년비)	청 년 (청년비)	청·소년 (청·소년비)	소년	청년	성인
1980	689	39 (5.7)	49 (7.1)	88 (12.8)	0.5	2.7	2.9
1986	643	36 (5.6)	50 (7.8)	86 (13.4)	0.5	2.9	2.3
1987	703	46 (6.5)	66 (9.4)	112 (15.9)	0.7	3.7	2.3
1988	732	52 (7.1)	86 (11.7)	138 (18.9)	0.8	4.7	2.3

② 강 도

	계	송 치 인 원			인 구 비		
		소 년 (소년비)	청 년 (청년비)	청·소년 (청·소년비)	소년	청년	성인
1980	3,853	923 (24.0)	899 (23.3)	1,822 (47.3)	12.9	48.6	9.8
1986	4,615	1,250 (27.1)	1,064 (23.1)	2,314 (50.1)	17.6	61.6	9.3
1987	4,171	958 (23.0)	1,015 (24.3)	1,973 (47.3)	13.7	57.2	8.7
1988	4,731	1,249 (26.4)	1,280 (27.1)	2,529 (53.5)	18.3	70.1	8.5

③ 상 해

		총 치 인 원			인 구 비		
	계	소 년 (소년비)	청 년 (청년비)	청·소년 (청·소년비)	소년	청년	성인
1980	16,616	457 (2.8)	821 (4.9)	1,278 (7.7)	6.4	44.4	74.3
1986	23,671	519 (2.2)	892 (3.8)	1,411 (6.0)	7.3	51.6	90.1
1987	24,305	499 (2.1)	710 (2.9)	1,209 (5.0)	7.1	40.0	91.3
1988	24,554	457 (1.9)	824 (3.4)	1,281 (5.2)	6.7	45.1	89.8

④ 절 도

		총 치 인 원			인 구 비		
	계	소 년 (소년비)	청 년 (청년비)	청·소년 (청·소년비)	소년	청년	성인
1980	63,059	18,404 (29.2)	8,525 (13.5)	26,929 (42.7)	258.1	461.1	174.9
1986	67,851	21,811 (32.1)	9,681 (14.3)	31,492 (46.4)	306.4	560.5	147.2
1987	61,780	19,678 (31.9)	8,563 (13.9)	28,241 (45.7)	281.6	482.5	132.6
1988	57,034	17,147 (30.1)	7,954 (13.9)	25,101 (44.0)	251.1	435.4	123.2

⑤ 강 간

	계	송 치 인 원			인 구 비		
		소 년 (소년비)	청 년 (청년비)	청·소년 (청·소년비)	소년	청년	성인
1980	5,441	1,344 (24.7)	934 (17.2)	2,278 (41.9)	18.9	50.5	15.3
1986	6,868	1,560 (22.7)	1,162 (16.9)	2,722 (39.6)	21.9	67.3	16.8
1987	6,034	1,167 (19.3)	906 (15.0)	2,073 (34.4)	16.7	51.0	15.7
1988	5,836	1,124 (19.3)	912 (15.6)	2,036 (34.9)	16.5	49.9	14.7

⑥ 방 화

	계	송 치 인 원			인 구 비		
		소 년 (소년비)	청 년 (청년비)	청·소년 (청·소년비)	소년	청년	성인
1980	397	17 (4.3)	11 (2.8)	28 (7.1)	0.2	0.6	1.8
1986	602	28 (4.7)	28 (4.7)	56 (9.3)	0.4	1.6	2.2
1987	508	21 (4.1)	16 (3.1)	37 (7.3)	0.3	0.9	1.9
1988	797	34 (4.3)	34 (4.3)	68 (8.5)	0.5	1.9	2.8

자료: 「범죄백서」, 법무연수원 및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자료.

주 : 1) 인구비는 각 연령층 인구(소년은 10세 이상 18세 미만) 10만명당 송치인원의 비율.

2) 상해 및 절도의 총수는 검찰 처리인원임.

3) 소년에는 14세 이상의 범죄소년뿐만 아니라 12세 이상의 촉법소년도 포함됨.

2) 소년사법제도

다음으로 한국의 소년사법제도에 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한국에서는 1988년 12월 31일 소년법 및 소년원법이 개정되고(양법 모두 1989년 7월 1일 시행), 그와 아울러 1989년 7월에 새롭게 보호관찰법이 제정·시행됨으로써 소년사법제도는 보호처분의 종류, 기간 등에서 변경이 있었다.

한국의 소년법에서 소년은 20세 미만으로 정의되어 있다(이하 본절에서는 한국의 법제도에 따라 20세 미만의 자를 소년으로 지칭한다). 심판의 대상이 되는 비행소년은 「촉법소년」(12세 이상 14세 미만), 「범죄소년」(14세 이상 20세 미만) 및 「우범소년」(12세 이상 20세 미만)으로 구분된다.

소년에 대한 심판은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이하 양자를 합쳐서 「소년부」라 한다)에서 행해진다. 일본과 다른 점은 일본에서는 원칙적으로 가정재판소로 사건을 모두 송치하게 되어 있음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검사선의제도(檢事先議制度)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14세 이상의 범죄소년은 성인의 형사 사건과 동일하게 검사에게 송치되어, 검사가 보호처분을 받게하기 위해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할 것인가 아니면 형사처분을 받게하기 위해 지방법원에 기소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검사는 일반 형사 사건과 동일하게 기소유예의 처분을 내릴 수 있고, 그 경우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실무상의 운용을 행할 수 있다. 이것은 갱생의 전망이 있는 소년에 대해서 기소 또는 소년부 송치를 일정기간 유예하고, 본인의 동의하에 그 기간 동안 지역사회에서 학습이나 덕망이 있는 선도위원의 지도를 받게 하는 것이다.

개정전의 소년법에 따르면, 보호처분의 종류로는 ① 보호자 또는 그밖의 적당한 자(개정후는 보호자에 갈음하는 자)의 감호위탁

② 소년보호단체·사원 또는 교회의 감호 위탁 ③ 병원 또는 요양소 위탁 ④ 감화원 송치 ⑤ 소년원 송치 ⑥ 보호관찰의 6종류가 있었는데, 개정 뒤에는 ②와 ④가 폐지되고 새롭게 단기보호관찰, 아동복지시설·소년보호시설의 감호 위탁, 단기소년원 송치의 3종류가 추가되어 7종류로 되었다. 또한 16세 이상의 소년에 대해서는 보호관찰처분과 함께 사회 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보호처분의 기간은 개정전 소년법에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었지만, 개정 뒤에는 보호자와 다른 기관에의 위탁, 단기보호관찰 및 단기소년원 송치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6개월, 보호관찰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소년에 대한 감형처분으로서, 범행시 18세 미만(개정전 소년법에서는 16세 미만)의 소년이 사형 또는 무기형에 상당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유기징역을 과하도록 되어 있고, 소년이 법정형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되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그 법정기간의 범위내(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할 수 없다)에서 부정기형을 언도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소년법에 대해서 조기에 가석방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개정 소년원법은 소년원을 기능별로 교과교육소년원, 직업훈련소년원, 여자소년원, 특별소년원으로 나누어 교정효과의 증대를 꾀하고 있다. 교과교육소년원에서는 소정의 교과교육을 이수한 소년에게 출신 중학교장 명의의 졸업증서를 수여할 수 있고, 직업훈련 소년원에서는 직업훈련을 위한 공장 등 외부시설 통근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3) 소년사법의 운용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에서는 1988년에 소년법 등이 개정되어

1989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여기서는 다른 나라와의 비교를 위하여 주로 1988년까지의 운용상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한국의 소년사범 운용상황에서 독특한 점은 검사의 선의제도에 기소유예가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검사에 의한 소년 형법범 처리상황을 구성비로 살펴보면, 전체 검거인원 중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가 39.3%(그중 공판청구 19.1%, 약식청구 20.2%), 소년부로 송치된 자가 9.1%이고, 반수를 넘는 51.6%가 불기소처분(그중 기소유예가 30.4%)을 받았다. 그러나 앞서 설명했듯이 검사가 기소를 유예할 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실무상의 운용이 행해지고 있어 1988년에는 전국적으로 5,084명의 선도위원을 위촉하여 7,521명의 소년에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다.

1988년도 제1심 소년형사공판사건의 과형상황을 보면, 정기형 1,212명(7.3%), 부정기형 3,699명(22.2%), 집행유예 4,845명(29.1%) 등으로 되어 있다(〈표 2-3〉).

1988년 가정법원(서울 이외의 지역에서는 지방법원) 소년부가 수리한 소년의 인원은 모두 18,000명을 넘고 있다.

〈표 2-3〉 제1심 소년형사공판사건 과형상황

한국(1988)											
계	사형	무기형	정기형	부 정 기 형				형의			
				소계	장기10 년 이내	장기5 년 이내	장기3 년 이내	장기2 년 이내	집행 유예	징금	기타
16,661	—	2	1,212	3,699	97	363	976	2,263	4,845	469	6,434
(100.0)	—	(0.0)	(7.3)	(22.2)	(0.6)	(2.2)	(5.9)	(13.6)	(29.1)	(2.8)	(38.6)

자료: 「범죄백서」

주: ()안은 구성비임.

보호처분의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보호자 또는 적당한 자의 감호위탁	15,459명
(2) 소년보호단체, 사원 또는 교회의 감호 위탁	606명
(3) 소년원 송치	7,464명
(4) 보호관찰	6,692명

단, 보호관찰은 통상 보호자 등에게 감호를 위탁할 때 부수처분으로 활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비행소년의 시설은 전국에 2개소의 소년교도소(25세 미만의 수형자를 수용) 및 11개소의 소년원이 있다. 1988년말 현재 소년교도소 소년수형자는 1,740명, 소년원 수용자는 1,825명이다. 소년원에 소년이 수용되는 기간은 평균 15.1개월이다. 또한 소년의 자질을 조사·감별하기 위한 시설인 소년감별소가 4개소에 설치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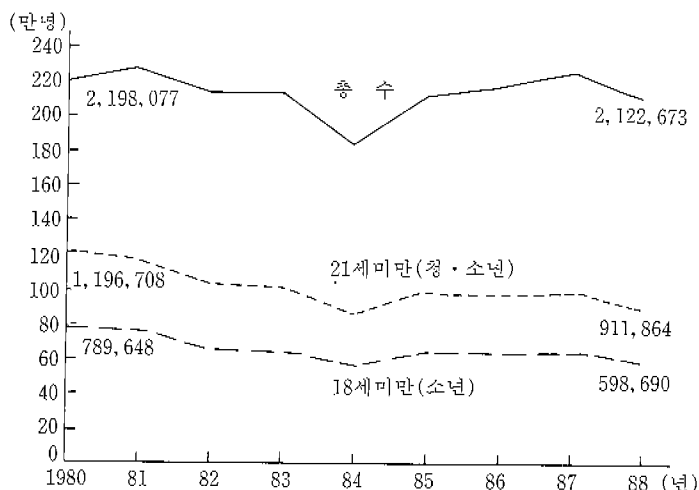
1983년 이래 소년교도소와 소년원으로부터 가석방된 자들을 대상으로 실험적으로 실시되어 온 보호관찰은 점차 그 실시지역과 대상을 확대해서 1989년 7월부터는 보호관찰법의 제정과 아울러 전국적으로 시행되게 되었다.

2. 미 국

1) 소년비행의 동향

1980~1988년 기간 동안의 미국의 지표범죄(Crime Index offense : 살인, 강간, 강도, 상해, 불법목적침입, 절도, 자동차 절도 및 방화의 8종류로서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FBI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검거인원의 총수, 18세 미만의 소년 검거인원, 21세 미만의 청·소년 검거인원의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2-2]와 같다. 또한 <표 2-4>는 지표범죄 전체, <표 2-5>는 특정 6죄종에 관해서, 1980년 및 1986년에서 1988년까지 3년간의 검거인원 총수, 소년

[그림 2-2] 지표범죄 검거인원의 추이
미국(1980~1988)



자료 : Crime in the United States.

〈표 2-4〉 지표범죄 검거인원, 소년비·청년비 및 인구비

미국(1980, 1986~1988)

	계	검 거 인 원			인 구 비		
		소 년 (소년비)	청 년 (청년비)	청·소년 (청·소년비)	소년	청년	성인
1980	2,198,077	789,648 (35.9)	407,060 (18.5)	1,196,708 (54.4)	25.8	30.9	6.6
1986	2,167,071	641,405 (29.6)	332,717 (15.4)	974,122 (45.0)	23.0	29.6	7.1
1987	2,266,467	658,491 (29.1)	337,903 (14.9)	996,394 (44.0)	23.8	30.4	7.5
1988	2,122,673	598,690 (28.2)	313,174 (14.8)	911,864 (43.0)	21.9	27.9	7.1

자료 : *Crime in the United States; Current Population Report United States Population Estimates.*

주 : 인구비는 각 연령층 인구(소년은 10세 이상 18세 미만의 인구) 1,000명당 검거인원의 비율.

· 청년별 검거인원, 소년비·청년비 및 소년·청년·성인의 인구비를 나타낸 것이다.

소년의 검거인원은 1980~1988년기간 동안 약 79만명에서 약 60만명으로, 청년을 포함한 청·소년의 검거인원은 약 120만명에서 약 90만명으로 감소하였다. 소년비는 35.9%에서 28.2%로, 청년비도 18.5%에서 14.8%로 줄어들었으며 양자를 합친 청·소년비는 54.4%에서 43.0%로 감소하였다. 인구비는 1980~1988년기간 동안 소년은 25.8에서 21.9로, 청년은 30.9에서 27.9로 각각 감소하였다.

특정 6죄종의 1988년도 통계를 살펴보면, 살인은 검거인원의 1/4을 청·소년이 점하고 있고, 인구비에서 소년은 성인과 거의

〈표 2-5〉 특정죄종별 검거인원·소년비·청년비 및 인구비
미국(1980, 1986~1988)

① 살 인

		검 거 인 원			인 구 비		
	계	소 년 (소년비)	청 년 (청년비)	청·소년 (청·소년비)	소년	청년	성인
1980	18,745	1,742 (9.3)	2,886 (15.4)	4,628 (24.7)	5.7	21.9	9.4
1986	16,066	1,396 (8.7)	2,321 (14.4)	3,717 (23.1)	5.0	20.7	7.4
1987	16,714	1,592 (9.5)	2,571 (15.4)	4,163 (24.9)	5.8	23.1	7.4
1988	16,326	1,765 (10.8)	2,669 (16.3)	4,434 (27.2)	6.5	23.8	6.9

② 강 도

		검 거 인 원			인 구 비		
	계	소 년 (소년비)	청 년 (청년비)	청·소년 (청·소년비)	소년	청년	성인
1980	139,476	41,997 (30.1)	31,996 (22.9)	73,993 (53.1)	137.1	242.6	43.4
1986	124,245	27,987 (22.5)	23,181 (18.7)	51,168 (41.2)	100.5	206.3	43.7
1987	123,306	27,682 (22.4)	22,022 (17.9)	49,704 (40.3)	100.2	197.9	43.5
1988	111,344	24,337 (21.9)	19,683 (17.7)	44,020 (39.5)	88.9	175.5	39.3

③ 상 해

		검 거 인 원			인 구 비		
	계	소 년 (소년비)	청 년 (청년비)	청·소년 (청·소년비)	소년	청년	성인
1980	258,721	38,135 (14.7)	38,705 (15.0)	76,840 (29.7)	124.5	293.5	120.6
1986	293,952	37,528 (12.8)	34,230 (11.6)	71,758 (24.4)	134.7	304.6	133.0
1987	301,754	38,646 (12.8)	33,480 (11.1)	72,126 (23.9)	139.9	300.9	135.7
1988	304,490	38,536 (12.7)	34,574 (11.4)	73,110 (24.0)	140.8	308.3	135.1

④ 철 도

		검 거 인 원			인 구 비		
	계	소 년 (소년비)	청 년 (청년비)	청·소년 (청·소년비)	소년	청년	성인
1980	1,733,245	695,267 (40.1)	325,916 (18.8)	1,021,183 (58.9)	2270.0	2471.5	472.0
1986	1,686,157	563,425 (33.4)	267,461 (15.9)	830,886 (49.3)	2022.9	2380.2	511.9
1987	1,778,268	579,523 (32.6)	274,513 (15.4)	854,036 (48.0)	2097.4	2467.3	546.1
1988	1,647,520	523,718 (31.8)	251,366 (15.3)	775,084 (47.0)	1914.0	2241.5	509.4

⑤ 강 간

		검 거 인 원			인 구 비		
	계	소 년 (소년비)	청 년 (청년비)	청·소년 (청·소년비)	소년	청년	성인
1980	29,431	4,346 (14.8)	5,041 (17.1)	9,387 (31.9)	14.2	38.2	13.3
1986	31,128	4,798 (15.4)	3,836 (12.3)	8,634 (27.7)	17.2	34.1	13.5
1987	31,276	4,909 (15.7)	3,753 (12.0)	8,662 (27.7)	17.8	33.7	13.4
1988	28,482	4,118 (14.5)	3,489 (12.2)	7,607 (26.7)	15.1	31.1	12.2

⑥ 방 화

		검 거 인 원			인 구 비		
	계	소 년 (소년비)	청 년 (청년비)	청·소년 (청·소년비)	소년	청년	성인
1980	18,459	8,161 (44.2)	2,516 (13.6)	10,677 (57.8)	26.6	19.1	5.2
1986	15,523	6,271 (40.4)	1,688 (10.9)	7,959 (51.3)	22.5	15.0	4.5
1987	15,169	6,139 (40.5)	1,564 (10.3)	7,703 (50.8)	22.2	14.1	4.4
1988	14,505	6,216 (42.9)	1,393 (9.6)	7,609 (52.5)	22.7	12.4	4.0

자료 : *Crime in the United States; Current Population Report United States Population Estimates.*

주 : 인구비는 각 연령층 인구(소년은 10세 이상 18세 미만의 인구) 10만명당 검거인원의 비율.

동일하지만, 청년은 성인의 3.4배에 달하고 있다.

강도는 점거인원의 약 4할이 청·소년으로서, 인구비는 소년이 성인의 2.3배, 청년은 성인의 4.5배가 되고 있다.

상해는 인구비에서 소년이 성인과 거의 동일하지만, 청년은 성인의 2.3배에 이르고 있다.

절도는 인구비가 소년은 성인의 3.8배, 청년이 성인의 4.4배가 되어 청·소년이 점유하는 비율이 높다.

강간은 인구비에서 소년은 성인의 1.2배이지만, 청년은 성인의 2.5배가 되고 있다.

방화는 인구비에서 소년은 성인의 5.7배, 청년은 3.1배가 되어 청소년이 점유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다.

2) 소년사법제도

미국의 소년사법제도는 50개주 및 Columbia특별구(수도 Washington시, 이하, 본절에서는 주(州)로 다름)에 따라 다양하지만, 연방최고재판소에서 「Kent사건 판결」(1966), 「Gault사건 판결」(1967), 「Winship사건 판결」(1970) 등 소년사법절차 등에 관한 헌법재판 판결이 내려진 뒤 많은 주에서 소년사법제도의 주요부분에 관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들 판결 이전에 각주에 공통되었던 소년사법제도의 특색은, 이른바 「국친사상」(國親思想)의 이념에 기초하여

(1) 소년의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보다는 소년의 보호와 갱생을 목적으로 하는 처우가 중시되고

(2) 소년법원이 범죄소년(delinquent)뿐만 아니라 우범소년(status offender : 불량교우, 부모의 감독에 복종하지 않는 등 범죄를 구성하지는 않지만 문제행동을 행하는 소년) 및 요보호소년(dependent and neglected youth : 부모로부터 학대받는 소년, 보호·감독능

력이 없는 가정의 소년 등)에 대해서 관할권을 갖고

(3) 소년심판의 절차가 비형식적이고 탄력성있게 수행되어 형사재판에서의 대심구조, 증거법칙 등을 엄격하게 준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종전의 「국친사상」에 기초한 전통적인 소년사법절차는 소년의 「보호」에만 치중, 「치안유지」의 측면을 경시하여 소년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소년심판절차의 비형식성을 강조한 결과 범죄소년에 대한 적정한 사법절차가 경시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연방최고법원은 「Kent사건 판결」에서 소년법원이 소년사건의 관할권을 포기하고 사건을 통상의 형사사건으로서 형사법원에서 심판케 하기 위해서는 ① 소년에게 변호인 선임권을 보장하고, ② 변호인이 해당소년의 사회기록과 보호관찰기록 등을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③ 최종판결의 이유를 명백히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이 절차는 형사사건의 심리와 통상의 행정청문과 완전히 동일할 필요는 없지만, 적정절차와 공정한 처우의 본질에 적합한 것이지 않으면 안된다고 판시하였다. 「Gault사건 판결」에서는 소년사건의 적정절차의 한 내용으로서, ① 피의사실의 고지, ② 변호인 선임권, ③ 증인과의 대질권·반대신문권, ④ 묵비권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Winship사건 판결」에서는 성인을 보호하기 위해 사실인정시 고도의 신중성이 요구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소년의 비행사실의 인정시에도 성인 형사사건의 경우와 같이 「합리적인 의심을 입증하는 증명」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였다.

이와 같은 판결에 따라 소년법원의 범죄소년, 우범소년 및 요보호소년에 대한 관할권은 계속 유지되면서도, 그 뒤 각 주에서 소년사법의 비형식성이 폐지되어 소년사건에서도 적정절차의 보장

이 인정되게 되었다.

1987년의 법무성 전국소년사법센터(National Center for Juvenile Justice, March 1987) 자료에 의거하여 미국의 소년사법제도를 개관하면, 소년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범죄소년의 상한연령은 51개주(Columbia특별구 포함) 중 재판시 19세 미만인 1개주, 18세 미만이 40개주, 17세 미만이 7개주, 6세 미만이 3개주이다. 한편 하한은 6세가 1개주, 10세가 8개주, 12세가 1개주인데 그밖의 주들은 common law(영국에 기원을 둔 관습법)상의 형사책임연령으로 간주되는 7세로 규정하거나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범죄소년에 대해서는 소년법원이 관할권을 갖고 있는 것이 통례이지만, 살인 등의 중대한 범죄 혹은 교통위반과 같은 경미한 사항은 소년법원의 관할에서 제외하고 있는 주도 있다. 한편 살인, 강간 등 중범죄를 범한 소년에 대해서는 소년법원과 통상의 형사법원이 공동으로 경합관할권(concurrent jurisdiction)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는 주도 적지 않다. 경합관할권을 갖고 있는 경우 어느쪽에 소추하는가는 검사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 통례이다. 또한 일정한 중죄를 범한 소년에 대해서는 소년재판소가 그 사건의 관할권을 포기(waiver)하거나 그 사건을 형사재판소로 이송(transfer)하여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소추를 행하도록 규정한 예도 있다. 이 관할권의 포기 또는 이송에 있어서 연령상의 제한을 설정하고 있는 주도 적지 않아서, 16세 이상이 7주, 15세 이상이 8주, 14세 이상이 14주, 13세 이상이 3주, 12세 이상, 10세 이상이 각각 1주이다.

경찰에 의한 체포후의 송치, 피해자의 고발 등에 의해서 소년법원에 계류된 소년보호 사건은 일반적으로 소년법원 또는 사건을 정식으로 접수하기에 앞서 예비적 조사를 행하는 수리부(intake unit)에 의해 감호조치(detention)에 관한 결정이 행해지는데, 이

경우 조사·감별하여 공식의 심판절차(범죄의 심리와 처분)로 이행하는 사건과 이른바 탈사법(diversion)정책에 따라 복지기관으로의 인도 등 비공식적인 처분에 위탁하는 사건으로 선별된다.

공식의 심판절차는 일반적으로 수리부의 심판신청(filing a petition : 일종의 기소)에 의해서 행해지지만, 검사가 심판신청의 필요 여부를 판단하여 심판을 소추하거나 불소추하여 석방하거나의 양자중 어느 한쪽을 결정할 수 있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주도 있다. 심판절차는 일반적으로 사실인정절차와 처분절차로 나뉘어 범죄(비행)사실이 인정(adjudication)되면, 처분(disposition)이 행해진다. 심판절차에서는 소년에게 변호인 선임권이 인정되고, 사실인정절차는 당사자주의화되어 검사가 심판에 출석해서 유죄를 입증하는 책임을 지고 변호인도 심판에 출석해서 변호활동을 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주도 있다. 제기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받지 않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인정되었을 때에 처분절차로 이행한다.

처분은 소년원(training school) 등 폐쇄적 시설 수용, 농장·삼림 캠프·halfway house 등의 개방적 시설 수용, 보호관찰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3) 소년사법의 운용

법무성의 자료에 의거하여 소년원 수용상황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6〉은 1983년과 1985년 공립소년원의 남녀·연령층별 수용인원을 살펴본 것이다. 1985년은 1983년에 비해 총수가 약간 증가하고 있는 외에 비율에 있어서는 거의 변화가 없다.

〈표 2-7〉은 1985년 공립소년원에 수용된 소년을 최종별·남녀별로 살펴본 것이다. 남자는 재산범과 폭력범이 과반수를 점하고

〈표 2-6〉

공립소년원의 성·연령층별 수용인원

미국(1983, 1985)

	성 별			연 령 층 별				
	총수	남자	여자	9세 이하	10~ 13세	14~ 17세	18~ 20세	21세 이상
1983	48,701 (100.0)	42,182 (86.6)	6,519 (13.4)	42 (0.1)	3,104 (6.4)	39,571 (81.3)	4,804 (9.9)	86 (0.2)
1985	49,322 (100.0)	42,549 (86.3)	6,773 (13.7)	60 (0.1)	3,181 (6.4)	40,640 (82.4)	5,409 (11.0)	32 (0.1)

자료 : *Sourcebook of Criminal Justice Statistics*, 1987.

주 : 1) 1983년의 「연령층별」에서는 연령미상(남자 1,094명)은 제외.

2) ()안의 수치는 구성비.

〈표 2-7〉

공립소년원의 죄종·성별 수용인원

미국(1985)

		총 수		남 자		여 자	
총	수	49,322	(100.0)	42,549	(100.0)	6,773	(100.0)
폭	력	12,245	(24.8)	11,214	(26.4)	1,031	(15.2)
재	산	22,020	(44.6)	19,978	(47.0)	2,042	(30.1)
약	물	2,660	(5.4)	2,319	(5.5)	341	(5.0)
질	서	1,936	(3.9)	1,505	(3.5)	431	(6.4)
법	령						
위	반						
보	호	4,557	(9.2)	3,652	(8.6)	905	(13.4)
관	찰						
준	수						
사	항						
위	반						
우	범	2,293	(4.6)	1,096	(2.6)	1,197	(17.7)
기	타	3,611	(7.3)	2,785	(6.5)	826	(12.2)

자료 : *Sourcebook of Criminal Justice Statistics*, 1987.

주 : ()안의 수치는 구성비.

있다.

〈표 2-8〉는 1985년의 소년시설(juvenile facilities: detention center, 소년원, half-way house 등 소년을 수용하고 있는 시설)의 수, 규모 등에 관해서 살펴본 것이다. 사립시설은 정원 20명 이내의 소규모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표 2-8〉 소년시설의 수 · 종류 및 규모

		미국(1985)		
	계	공립시설	사립시설	
계	3,036 (100.0)	1,040 (100.0)	1,996 (100.0)	
10인 미만	1,053 (34.7)	141 (13.6)	912 (45.7)	
10~ 20명	913 (30.1)	326 (31.3)	638 (32.0)	
21~ 40명	464 (15.3)	226 (21.7)	207 (10.4)	
41~ 99명	387 (12.7)	174 (16.7)	193 (9.7)	
100~199명	146 (4.8)	114 (11.0)	32 (1.6)	
200명 이상	73 (2.4)	59 (5.7)	14 (0.7)	

자료 : *Report to the Nation on Crime and Justice*, 1988.

주 : ()안의 수치는 구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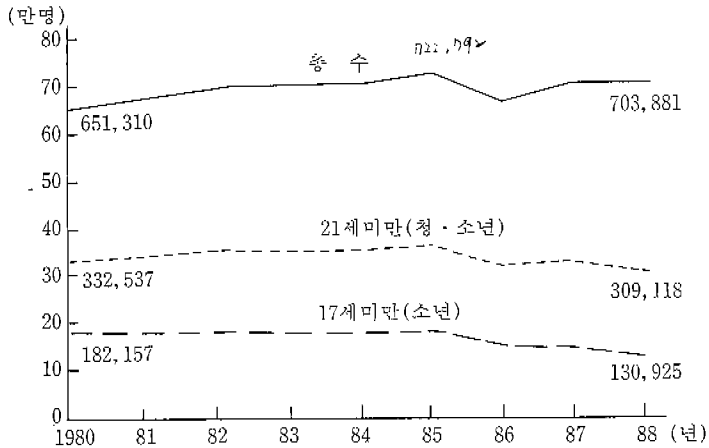
3. 영 국

1) 소년비행의 동향

영국의 형사책임연령 하한은 10세로서, 10세 이상 14세 미만을 아동(child), 14세 이상 17세 미만을 소년(young person), 17세 이상 21세 미만을 청년(young adult offender)으로 구분하는데,

[그림 2-3] 정식기소범죄 검거인원의 추이

영국(1980~1988)



자료 : Criminal Statistics England and Wales, Supplementary Tables, vol. 1, vol. 2, vol. 4.

주 : 1) 검거인원이란 기소된 자 및 경찰에서 경고처분을 받은 자를 지칭함.

2) 교통범죄는 제외. 단, 무모운전치사(causing death by reckless driving)는 포함.

여기서는 편의상 아동 및 소년을 일괄해서 소년으로 지칭하기로 한다. 영국의 정식기소범죄(indictable offence) 검거인원의 총수, 10세 이상 17세 미만의 소년 검거인원, 10세 이상 21세 미만의 청·소년 검거인원의 추이(1980~1988)를 살펴보면, [그림 2-3]과 같다. <표 2-9> 및 <표 2-10>은 정식기소범죄와 그중의 특정 6죄종의 1980년 및 1986년에서 1988년까지 최근 3년간의 검거인원 총수, 소년·청년별 검거인원, 소년비·청년비 및 소년·청년·성인의 인구비를 나타낸 것이다.

<표 2-9> 정식기소범죄 검거인원, 소년비·청년비 및 인구비

영국(1980, 1986~1988)

	계	검 거 인 원			인 구 비		
		소 년 (소년비)	청 년 (청년비)	청·소년 (청·소년비)	소년	청년	성인
1980	651,310	182,157 (28.0)	150,380 (23.1)	332,537 (51.1)	32.4	47.4	9.2
1986	660,402	150,617 (22.8)	166,767 (25.3)	317,384 (48.1)	31.8	51.9	9.6
1987	702,243	148,986 (21.2)	179,848 (25.6)	328,834 (46.8)	32.7	57.1	10.3
1988	703,881	130,925 (18.6)	178,193 (25.5)	309,118 (43.9)	30.0	57.4	10.8

자료 : Criminal Statistics England and Wales, Supplementary Tables, vol. 1, vol. 2, vol. 4, 중앙통계청의 자료.

주 : 1) 검거인원이란 기소된 자 및 경찰에서 경고처분을 받은 자를 지칭함. 교통범죄는 제외. 단, 무모운전치사(causing death by reckless driving)을 포함.

2) 인구비는 각 연령층인구(소년은 10세 이상 17세 미만의 인구) 1,000명당 검거인원의 비율임.

〈표 2-10〉 특정죄종별 검거인원, 소년비·청년비 및 인구비
영국(1980, 1986~1988)

① 살 인

	계	검 거 인 원			인 구 비		
		소 년 (소년비)	청 년 (청년비)	청·소년 (청·소년비)	소년	청년	성인
1980	1,565	62 (4.0)	246 (15.7)	308 (19.7)	1.1	7.8	3.6
1986	1,934	88 (4.6)	288 (14.9)	376 (19.4)	1.9	9.0	4.3
1987	2,283	73 (3.2)	289 (12.7)	362 (15.9)	1.6	9.2	5.3
1988	3,004	67 (2.2)	421 (14.0)	488 (16.2)	1.5	13.6	6.9

② 강 도

	계	검 거 인 원			인 구 비		
		소 년 (소년비)	청 년 (청년비)	청·소년 (청·소년비)	소년	청년	성인
1980	8,028	1,333 (16.6)	3,015 (37.6)	4,348 (54.2)	23.7	95.0	10.7
1986	10,041	1,662 (16.6)	3,645 (36.3)	5,307 (52.9)	35.1	113.3	13.2
1987	11,060	1,830 (16.5)	3,890 (35.2)	5,720 (51.7)	40.2	123.5	14.7
1988	10,919	1,932 (17.7)	4,051 (37.1)	5,983 (54.8)	44.3	130.4	13.5

③ 상 해

	계	검 거 인 원			인 구 비		
		소 년 (소년비)	청 년 (청년비)	청·소년 (청·소년비)	소년	청년	성인
1980	78,408	11,832 (15.1)	22,403 (28.6)	34,235 (43.7)	210.6	705.9	128.1
1986	84,741	10,847 (12.8)	22,902 (27.0)	33,749 (39.8)	228.9	712.2	142.0
1987	97,326	11,329 (11.6)	26,027 (26.7)	37,356 (38.4)	249.0	826.0	165.6
1988	109,254	12,009 (11.0)	27,773 (25.4)	39,782 (36.4)	275.6	893.9	190.5

④ 절 도

	계	검 거 인 원			인 구 비		
		소 년 (소년비)	청 년 (청년비)	청·소년 (청·소년비)	소년	청년	성인
1980	416,176	146,455 (35.2)	93,909 (22.6)	240,364 (57.8)	2,607.3	2,959.2	510.0
1986	404,705	119,846 (29.6)	204,784 (25.9)	224,630 (55.5)	2,529.2	3,258.4	501.4
1987	409,801	115,852 (28.3)	108,002 (26.4)	223,854 (54.6)	2,546.4	3,427.7	513.4
1988	371,986	96,266 (25.9)	98,034 (26.4)	194,300 (52.2)	2,209.1	3,155.3	487.1

⑤ 강 간

	계	검 거 인 원			인 구 비		
		소 년 (소년비)	청 년 (청년비)	청·소년 (청·소년비)	소년	청년	성인
1980	3,608	679 (18.8)	1,376 (38.1)	2,055 (57.0)	12.1	43.4	4.5
1986	3,433	515 (15.0)	1,034 (30.1)	1,549 (45.1)	10.9	32.2	5.2
1987	3,714	562 (15.1)	1,000 (26.9)	1,562 (42.1)	12.4	31.7	5.9
1988	4,227	639 (15.1)	1,146 (27.1)	1,785 (42.2)	14.7	36.9	6.7

⑥ 방 화

	계	검 거 인 원			인 구 비		
		소 년 (소년비)	청 년 (청년비)	청·소년 (청·소년비)	소년	청년	성인
1980	4,501	2,164 (48.1)	844 (18.8)	3,003 (66.8)	38.5	26.6	4.3
1986	4,407	1,724 (39.1)	1,041 (23.6)	2,765 (62.7)	36.4	32.4	4.6
1987	4,573	1,668 (36.5)	1,185 (25.9)	2,853 (62.4)	36.7	37.6	4.7
1988	4,959	1,796 (36.2)	1,125 (22.7)	2,921 (58.9)	41.2	36.2	5.6

자료 : Criminal Statistics England and Wales, Supplementary Tables, vol. 1, vol. 2, vol. 4, 중앙통계청 자료.

- 주 : 1) 검거인원이란 기소된 자 및 경찰에서 경고처분을 받은 자를 지칭함.
 2) 절도에는 불법행위목적 침입(burglary) 포함.
 3) 강간에는 16세 이하의 소녀와의 불법적인 성교 포함.
 4) 인구비는 각 연령층 인구(소년은 10세 이상 17세 미만의 인구) 10만명당 검거인원의 비율임.

검거인원 총수는 1980년의 약 65만명에서 1985년에는 약 75만명으로 상승한 뒤 1986년에는 약 66만명으로 감소하기는 했지만, 1987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올라가 1988년에는 약 70만명이 되었다. 청년 검거인원은 전체적으로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어 1980년의 약 15만명에서 1988년에는 약 18만명으로 약 1.2배가 되었다. 이에 대해서 소년 검거인원은 1980년부터 1985년까지는 18만 전후에서 맴돌았지만 그 뒤 감소하여 1986년에는 약 15만명, 1988년에는 약 13만명이 되었다.

각 연령층의 인구비를 비교해 보면, 소년인구비는 매년 30이상의 수준에서 거의 평형상태에 있지만 청년인구비 및 성인인구비는 상승경향에 있다.

특정 6죄종에 관한 1988년의 수치를 보면, 청·소년비는 방화(58.9), 강도(59.8), 절도(52.2), 강간(42.2), 상해(36.4), 살인(16.2)의 순서로 되어 있다.

2) 소년사법제도

영국의 소년사법제도는 아동소년법(1933, 1963, 1969), 형사재판법(1948, 1961, 1967, 1972, 1982, 1987, 1988) 등에 규정되어 있다. 소년법원(juvenile court)은 치안판사재판소(magistrates' court)중의 특별재판소로서, 치안판사 3명으로 구성된다. 그 대상이 되는 것은 10세 이상 17세 미만의 소년이다. 17세 이상 21세 미만의 성인, 즉 청년사건은 치안판사재판소 또는 형사재판소(Crown Court)가 관할하지만, 21세 이상의 성인과는 다른 처분을 행하여 소년처우로서의 출두소 출두명령(attendance centre order), 소년시설 수용명령(detention in a young offender institution)을 언도할 수 있다.

소년법원에서 유죄로 간주된 소년에게 과할 수 있는 처분의 종

류는 출두소 출두명령, 소년시설 수용명령 외에 절대적 형의 면제(absolute discharge), 조건부 형의 면제(conditional discharge), 벌금, 감독명령(supervision order), 보호명령(care order), 사회봉사명령(community service order) 등이 있다. 이중 소년시설 수용명령, 보호명령, 감독명령 및 출두소 출두명령은 청소년들에게만 해당되는 처분이다.

영국의 소년사법제도는 1982년과 1988년의 두차례에 걸친 형사재판법 개정에 따라 커다란 변화를 겪었다.

1982년의 형사재판법에 의한 가장 커다란 개정사항은 한국의 소년원 송치처분과 유사한 감화원 훈련명령(borstal training order)이 폐지되고 그에 대신해서 소년구금명령(youth custody order)이 채택된 것이다. 소년구금은 15세 이상 21세 미만의 자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과해지는 시설 수용처분이다. 단기수용명령(detention centre order)에 있어서도 종래에 3개월에서 6개월까지라고 되어 있던 기간이 21일에서 4개월로 단축되었다. 또한 사회봉사명령 적용연령의 하한이 17세에서 16세로 하향조정되었고, 감독명령시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권한을 법원에 부여하는 등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1988년의 형사재판법에서는 소년구금명령과 단기수용명령이 모두 폐지되고 대신에 소년시설 수용명령이 창설되었다. 소년시설 수용명령은 14세 이상 21세 미만의 남자와 21세 미만의 여자에 대해서 일정기간 과하는 시설수용처분으로서, 연령과 성별에 따라 수용가능한 기간이 장기와 단기로 구분되어 있다.

또한 영국에서는 소년사건에도 기소유예에 상당하는 경고(caution)처분이 행해지고 있는데 특히 소년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1988년에 정식기소범죄로 경고처분을 받은 자는 모두 140,703명인데 그중 10세 이상 17세 미만의 소년이 점하는

비율이 58.9%, 17세 이상 21세 미만의 청년이 접하는 비율이 13.7%로서 청·소년이 전체의 7할 이상을 점하고 있다.

소년법원의 심리는 비공개로서 배심제도는 인정되지 않고 있고, 심리의 방법은 이른바 당사자주의에 의한 것으로서 검찰관이 입증책임을 지고 있다.

3) 소년사법의 운용

정식기소범죄의 소년 및 청년의 유죄인원을 살펴보면(〈표 2-11〉), 1988년의 경우 유죄인원 총수 386,604명 중 소년이 36,427명(9.4%), 청년이 108,698명(28.1%)를 점하고 있다.

소년 및 청년 유죄인원 145,125명의 처분내용을 연령총별로 살펴본 것이 〈표 2-12〉이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에서는 절대적 또는 조건부 형의 면제(48.1%)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출두소출두명령(19.4%), 감독명령(14.6%), 벌금(13.3%)의 순서이다.

〈표 2-11〉 정식기소범죄사건의 연령총별 유죄인원

영국(1988)				
정식기소 범죄유죄 인원총수	소년(10세 이상 17세 미만)			청년 (17세 이상 21세 미만)
	계	10세 이상 14세 미만	14세 이상 17세 미만	
386,604 (100.0)	36,427 (9.4)	3,986 (1.0)	32,441 (8.4)	108,698 (28.1)

자료 : *Criminal Statistics England and Wales, Supplementary Tables*, 1988, vol. 1, vol. 2.

주 : ()안의 수치는 구성비.

〈표 2-12〉 제1심에 있어서의 연령총·처분종류별 유죄인원

영국(1988)

	계	10세 이상 14세 미만	14세 이상 17세 미만	17세 이상 21세 미만
계	145,125 (100.0)	3,986 (100.0)	32,441 (100.0)	108,698 (100.0)
절대적또는조	23,902	1,917	8,755	13,230
건부형의면제	(16.5)	(48.1)	(27.0)	(12.2)
별 금	51,583 (35.5)	532 (13.3)	7,230 (22.3)	43,821 (40.3)
보 호 관 찰	14,662	—	—	14,662
명 령	(10.1)			(13.5)
감 독 명 령	6,765 (4.7)	583 (14.6)	5,955 (18.4)	227 (0.2)
사 회 봉 사	15,169 (10.5)	—	1,461 (4.5)	13,708 (12.6)
명 령				
출 두 소	7,500 (5.2)	773 (19.4)	4,682 (15.0)	1,865 (1.7)
출 두 명 령				
보 호 명 령	480 (0.3)	133 (3.3)	343 (1.1)	4 (0.0)
소 년 시 설	23,058 (15.9)	—	3,270 (10.1)	19,788 (18.2)
수 용 명 령				
기 타	2,006 (1.4)	48 (1.2)	565 (1.7)	1,393 (1.3)

자료 : *Criminal Statistics England and Wales, Supplementary Tables*, 1988, vol. 1, vol. 2.

주 : 1) 소년시설 수용명령에는 단기수용명령과 소년구금명령을 포함.

2) ()안의 수치는 구성비.

〈표 2-13〉

제1심에 있어서의 소년의 주요 죄종 ·
처분종류별 유죄인원

영국(1988)

	유죄인 원총수	생명 · 신체법	강 도	절 도	성범죄
계	36,427 (100.0)	4,326 (100.0)	843 (100.0)	26,678 (100.0)	362 (100.0)
절대적또는 조건부형의 면 제	10,672 (29.3)	1,307 (30.2)	105 (12.5)	7,986 (29.9)	88 (24.3)
별 금	7,762 (21.3)	1,095 (25.3)	46 (5.5)	5,488 (20.6)	36 (9.9)
감독명령	6,538 (17.9)	496 (11.5)	193 (22.9)	5,074 (19.0)	136 (37.6)
사회봉사 명 령	1,461 (4.0)	205 (4.7)	36 (4.3)	1,016 (3.8)	14 (3.9)
출 두 소	5,635 (15.5)	692 (16.0)	137 (16.3)	4,170 (15.6)	24 (6.6)
출두명령	476 (1.3)	36 (0.8)	37 (4.4)	313 (1.2)	23 (6.4)
소년시설	3,270 (9.0)	332 (7.7)	197 (23.4)	2,406 (9.0)	23 (6.4)
수용명령	613 (1.7)	163 (3.8)	92 (10.9)	225 (0.8)	18 (5.0)
기 타					

자료 : *Criminal Statistics England and Wales, Supplementary Tables*,
1988, vol. 1, vol. 2.

- 주 : 1) 소년시설 수용명령에는 단기수용명령 및 소년구금명령 포함.
2) 생명 · 신체법이란 살인, 상해 및 폭행 등을 의미.
3) 절도에는 불법행위목적 침입 외에 장물죄(handling stolen goods)를 포함.
4) ()안의 수치는 구성비.

14세 이상 17세 미만에서는 절대적 또는 조건부 형의 면제(27.0%), 벌금(22.3%), 감독명령(18.4%)의 순서로 되어있다. 17세 이상 21세 미만에서는 벌금(40.3%)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소년시설 수용명령(18.2%)이다.

〈표 2-13〉은 10세 이상 17세 미만 소년의 죄종별 처분내용을 살펴본 것이다. 소년시설 수용명령이 접하는 비율은 생명·신체범 7.7%, 강도 23.4%, 절도 9.0%, 성범죄 6.4%이다. 생명·신체범과 절도에서는 절대적 또는 조건부 형의 면제를 받는 자가 가장 많고, 강도에서는 소년시설 수용명령이, 성범죄에서는 감독명령이 각각 가장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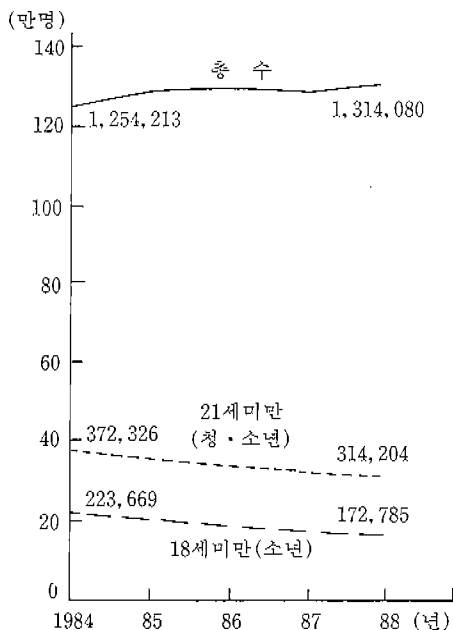
4. 서 독

1) 소년비행의 동향

서독의 연방형사국은 1984년 이래 검거인원에 관한 통계방식을 개정하여 동일인이 같은 해에 2번 이상 검거되더라도 검거인원을

[그림 2-4] 형법범 검거인원의 추이

서독(1984~1988)



자료 : *Polizeiliche Kriminal-statistik*.

주 : 1) 교통범죄 및 국가보호범죄는 제외.

2) 소년에는 형사책임연령(14세)에 도달하지 않은 아동 포함.

1인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1984년 이후의 통계에 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1984년부터 1988년까지 5년간의 형법범 검거인원의 총수, 18세 미만 소년 및 21세 미만 청·소년의 검거인원의 추이는 [그림 2-4]와 같다. 같은 기간 동안의 형법범 검거인원의 총수, 소년·청년별 검거인원, 소년비·청년비 및 소년·청년·성인의 인구비는 <표 2-14>와 같다.

전체 검거인원은 최근 5년간 4.8% 증가되었음에 비해 소년 검거인원은 5년간 약 22만명에서 약 17만명으로 22.7% 감소했고,

<표 2-14> 형법범 검거인원, 소년비·청년비 및 인구비
서독(1984~1988)

	세	검 거 인 원			인 구 비		
		소 년 (소년비)	청 년 (청년비)	청·소년 (청·소년비)	소년	청년	성인
1984	1,254,213	223,669 (17.8)	148,657 (11.9)	372,326 (29.7)	32.6	46.0	19.5
1985	1,290,999	205,984 (16.0)	151,880 (11.8)	357,864 (27.7)	32.3	47.3	20.5
1986	1,306,910	192,555 (14.7)	152,332 (11.7)	344,887 (26.4)	32.3	48.4	20.9
1987	1,290,441	182,496 (14.1)	147,017 (11.4)	329,513 (25.5)	32.7	47.8	20.6
1988	1,314,080	172,785 (13.1)	141,419 (10.8)	314,204 (23.9)	33.0	48.0	21.2

자료 : Polizeiliche Kriminalstatistik, 서독 통계국 자료.

주 : 1) 인구비는 각 연령층 인구(소년은 10세 이상 18세 미만의 인구) 1,000명당 검거인원의 비율.

2) 교통범죄 및 국가보호범죄는 제외.

3) 소년에는 형사책임연령(14세)에 도달하지 않은 아동 포함.

소년비도 17.8%에서 13.1%로 4.7포인트 저하하였다. 청년의 검거인원도 소년만큼의 급속한 감소는 아니지만, 1987년부터 2년간 계속해서 감소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의 검거인원은 5년간 약 37만명에서 약 31만명으로 15.6% 감소하여 청·소년비는 29.7%에서 23.9%로 5.8포인트 저하하였다.

그러나 인구비를 보면, 소년은 32.6에서 33.0으로 거의 평형상태이고, 청년은 1984년의 46.0에서 1986년까지는 약간 상승했지만 이후로는 역시 평형상태로 1988년에는 48.0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 검거인원의 감소현상은 청·소년인구의 감소가 그 주된 요인으로서 청·소년 인구에서 차지하는 검거인원의 비율은 최근 5년간 큰 변동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성인의 인구비는 다소 상승경향은 있지만 대체로 평형상태로서 1988년에는 21.2로 되어 있다. 같은 해의 소년인구비는 성인인구비의 1.6배, 청년인구비는 2.3배 이다.

특정 6죄종의 최근 5년간 검거인원의 총수, 소년·청년별 검거인원, 소년비·청년비 및 소년·청년·성인의 인구비는 <표 2-15>와 같다. 소년의 살인 및 방화, 청년의 방화를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검거인원 및 소년비, 청년비는 해가 갈수록 체감하고 있다. 특히 청년의 경우 강간에 의한 검거인원은 5년간 37.5%나 감소하였고, 살인, 강도 등 흉악범 검거인원의 감소율도 현저하다.

청년의 인구비는 상해, 방화에서 연차적인 변동이 인정되는 외에는 대체로 저하경향에 있다. 소년의 인구비는 살인, 강간, 절도는 대체로 평형상태에 있는 반면, 강도, 상해, 방화는 최근 수년간 상승경향에 있다.

서독 국내에는 1988년말 현재 약 449만명의 외국인(총인구의 약 7%)이 체재하고 있고 그 대부분이 노동자와 그 가족이다. 경

〈표 2-15〉 특정 최종별 검거인원·소년비·청년비 및 인구비
 서독(1984~1988)

① 살 인

검 거 인 원					인 구 비		
	계	소 년 (소년비)	청 년 (청년비)	청·소년 (청·소년비)	소년	청년	성인
1984	2,785	139 (5.0)	311 (11.2)	450 (16.2)	2.0	9.6	5.2
1985	2,897	130 (4.5)	327 (11.3)	457 (15.8)	2.0	10.2	5.4
1986	2,734	137 (5.0)	282 (10.3)	419 (15.3)	2.3	9.0	5.0
1987	2,678	134 (5.0)	266 (9.9)	400 (14.9)	2.4	8.6	4.9
1988	2,591	115 (4.4)	227 (8.8)	342 (13.2)	2.2	7.7	4.8

② 강 도

		검 거 인 원			인 구 비		
	계	소 년 (소년비)	청 년 (청년비)	청·소년 (청·소년비)	소년	청년	성인
1984	18,691	4,295 (23.0)	4,039 (21.6)	3,334 (44.6)	62.5	125.1	22.9
1985	18,996	4,229 (22.3)	3,890 (20.5)	8,119 (42.7)	66.2	121.2	23.9
1986	17,565	3,537 (20.1)	3,548 (20.2)	7,085 (40.3)	59.4	112.7	22.8
1987	17,233	3,443 (20.0)	3,481 (20.2)	6,924 (40.2)	61.6	113.2	22.2
1988	16,688	3,315 (19.9)	3,105 (18.6)	6,420 (38.5)	63.2	105.5	21.8

③ 상 해

	계	검 거 인 원			인 구 비		
		소 년 (소년비)	청 년 (청년비)	청·소년 (청·소년비)	소년	청년	성인
1984	171,134	18,904 (11.0)	23,241 (13.6)	42,145 (24.6)	275.5	719.8	284.8
1985	175,556	17,709 (10.1)	23,488 (13.4)	41,197 (23.5)	277.3	732.0	294.7
1986	176,791	17,477 (9.9)	22,977 (13.0)	40,454 (22.9)	293.5	730.1	296.1
1987	176,116	16,278 (9.2)	22,098 (12.5)	38,376 (21.8)	291.4	718.3	296.0
1988	175,900	15,878 (9.0)	21,521 (12.2)	37,399 (21.3)	302.9	731.0	294.3

④ 절 도

	계	검 거 인 원			인 구 비		
		소 년 (소년비)	청 년 (청년비)	청·소년 (청·소년비)	소년	청년	성인
1984	515,827	154,125 (29.9)	64,902 (12.6)	219,027 (42.5)	2,244.0	2,010.2	655.4
1985	518,151	141,029 (27.2)	66,160 (12.8)	207,189 (40.0)	2,208.2	2,061.8	682.0
1986	501,533	128,599 (25.6)	63,433 (12.6)	192,032 (38.3)	2,159.5	2,015.7	672.2
1987	495,922	123,089 (24.8)	62,364 (12.6)	185,453 (37.4)	2,203.3	2,027.2	667.1
1988	489,337	113,208 (23.1)	58,310 (11.9)	171,518 (35.1)	2,159.7	1,980.6	675.3

⑤ 강 간

	계	검 거 인 원			인 구 비		
		소 년 (소년비)	청 년 (청년비)	청·소년 (청·소년비)	소년	청년	성인
1984	4,302	360 (8.4)	606 (14.1)	966 (22.5)	5.2	18.8	7.4
1985	4,268	327 (7.7)	548 (12.8)	875 (20.5)	5.1	17.1	7.4
1986	4,030	302 (7.5)	560 (13.9)	862 (21.4)	5.1	17.8	6.9
1987	3,741	256 (6.8)	452 (12.1)	708 (18.9)	4.6	14.7	6.5
1988	3,708	264 (7.1)	379 (10.2)	643 (17.3)	5.0	12.9	6.5

⑥ 방 화

	계	검 거 인 원			인 구 비		
		소 년 (소년비)	청 년 (청년비)	청·소년 (청·소년비)	소년	청년	성인
1984	9,936	2,990 (30.1)	779 (7.8)	3,769 (37.9)	43.5	24.1	13.6
1985	9,412	2,362 (25.1)	741 (7.9)	3,103 (33.0)	37.0	23.1	13.8
1986	9,368	2,507 (26.8)	675 (7.2)	3,182 (34.0)	42.1	21.4	13.4
1987	9,239	2,460 (26.6)	738 (8.0)	3,198 (34.6)	44.0	24.0	13.0
1988	7,785	2,361 (26.9)	642 (7.3)	3,003 (34.2)	45.0	21.8	12.3

자료 : Polizeiliche Kriminalstatistik, 서독 통계국 자료.

주 : 1) 소년에는 형사책임연령(14세)에 도달하지 않은 아동 포함.

2) 살인은 모살(謀殺), 고살(故殺), 촉탁살인 및 영아살해를, 강도는 강도, 강도적 공갈 및 자동차운전자에 대한 강도적 공격을, 상해는 위험·중상해 및 경상해를 각각 가리킴.

3) 인구비는 각 연령층 인구(소년은 10세 이상 18세 미만의 인구) 10만명당 검거인원의 비율임.

찰의 범죄통계(Polizeiliche Kriminalstatistik, 1988)에 따르면, 근년 독일인 청·소년의 검거인원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에 비해서 외국인 청·소년의 검거인원은 상당한 증가를 나타내고 있고, 특히 14세 이상 18세 미만 소년의 검거인원 증가경향이 현저하다. 즉 외국인 청·소년 검거인원은 1984년의 61,619명에서 1988년에는 75,731명으로 증가하여 청·소년 검거인원에서 차지하는 외국인의 비율은 16.5%에서 24.1%로 상승하였다.

2) 소년사법제도

서독 소년사법제도의 근간은 소년법원법(Jugendgerichtsgesetz, 1953)이다. 그 대상은 행위시 14세 이상 18세 미만의 자(소년: Jugendlicher)이지만, 18세 이상 21세 미만의 자(청년: Heranwachsender)의 경우에도 도덕적·정신적 발달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소년과 동등하다고 판단되거나 행위의 종류와 동기, 상황 등의 측면에서 소년비행으로 간주될 수 있을 때에는 소년법원법이 적용될 수 있다. 행위시 14세 미만의 자(아동: Kind)는 형사상 책임이 없다.

소년법원(Jugendgericht)에는 다음 세종류가 있다. 우선, ① 소년에게 비교적 처분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방법원 소년판사(Jugendrichter)가 단독으로 심리를 행한다. 다음으로, ② 지방법원 소년배심법원(Jugendschöffengericht)은 소년판사 및 다음에 설명할 소년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비행을 담당한다. ③ 지방법원 소년부(Jugendkammer)는 살인, 강도치사 등 중대사건을 관할하고 또한 소년판사 및 소년배심법원의 판결에 대한 공소제기에 관한 심리 및 재판을 행할 권한을 갖고 있다. 소년배심법원은 재판장으로서의 1인의 판사와 2인의 소년배심원으로 구성된다. 소년배심원(Jugendschöffen)은 소년복지위원회의 추천에 의거하

여 선임되며, 남녀(성인) 각 1인이 재판에 임하게 된다.

또한 검사는 소년사건에 관해서도 기소·불기소의 결정권을 갖고 있고 재판에도 입회한다.

유죄라고 인정된 소년(소년법원법이 적용된 청년을 포함. 이하 본항에서 동일)에 대해서는 교육처분, 징계처분 또는 소년형이 과해진다.

교육처분(Erziehungsmaßregeln)에는 소년의 생활태도를 지도하고 교육을 촉진함과 아울러 보장할 수 있는 지시(거주, 취업, 교제 등의 규제)의 부여 외에 교육원조 및 교호의 조치가 있다.

징계처분(Zuchtmittel)은 소년형을 과할 필요는 없지만 소년이 행한 위법행위를 절실히 자각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 부과된다. 징계처분에는 경고(Verwarnung), 의무의 부과(Auflagen) 및 소년구금(Jugendarrest)의 세종류가 있다. 이중 의무의 부과는 손해배상과 공공시설을 위해 일정금액을 지불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년구금은 휴일구금(매주 휴일에 1회~4회의 구금), 단기구금(연속 6일 이내의 구금) 및 계속구금(1주간에서 4주간의 구금)으로 구분된다.

소년형(Jugendstrafe)은 소년형사시설내에서의 자유의 구속으로서 교육처분 혹은 징계처분으로는 교육상 충분하지 않는 경우, 또는 책임이 중대하기 때문에 형벌이 필요한 경우에 부과된다. 그 형기는 6개월에서 10년까지로서 정기형을 원칙으로 하지만, 소년을 교육시키는 데 필요한 기간을 예견할 수 없을 때에는 최고 4년의 부정기형을 과할 수도 있다.

교육처분과 징계처분, 복수의 교육처분 또는 복수의 징계처분, 및 소년형과 지시의 부여, 의무의 부과 등은 병과될 수 있다.

3) 소년사범의 운용

1987년의 유죄인원(교통범죄 포함. 이하 동일)을 연령층별로 살펴보면 <표 2-16>와 같다. 유죄인원 총수 약 69만명중 소년은 약 5만명, 청년은 약 8만명으로 모두 13만명이다. 청년의 유죄인원 중 약 3만명은 통상의 형사재판절차에 회부되었고 나머지 약 5만명이 소년법원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표 2-16> 형법법의 소년·청년·성인별 유죄인원

서독(1989)

계	소년 (14세 이상 18세 미만)	청년 (18세 이상 21세 미만)	성인 (21세 이상)
691,394 (100.0)	47,183 (6.8)	82,798 (12.0)	561,413 (81.2)

자료 : *Rechtspflege, Reihe 1 (Ausgewählte Zahlen für die Rechtspflege)*

주 : ()안의 수치는 구성비.

소년법원에 있어서의 유죄인원에 대한 같은 해의 처분별 건수를 소년·청년별로 살펴보면 <표 2-17>과 같다. 앞서 설명했듯이 처분은 병과될 수 있기 때문에 총 처분건수는 유죄인원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징계처분이 특히 많이 부과되면서, 교육처분은 소년에게, 소년형은 청년에게 상대적으로 많이 언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18>은 소년·청년별로 같은 해의 징계처분의 내용을 살펴본 것이다. 소년구금은 소년, 청년 모두 1만건에 채 못미치는

〈표 2-17〉 소년법원에 있어서의 소년·청년별 형법법 유죄인원
및 처분별 건수

서독(1987)

유죄인원			처 분 건 수			
			계	청년형	징계처분	교육처분
총 수	100,073		140,209 (100.0)	15,054 (10.7)	83,496 (59.6)	41,659 (29.7)
소년 (14세 이상 18세 미만)	47,183		67,187 (100.0)	4,339 (6.5)	37,921 (56.4)	24,927 (37.1)
청년 (18세 이상 21세 미만)	52,890		73,022 (100.0)	10,715 (14.7)	45,575 (62.4)	16,732 (22.9)

자료 : *Rechtspflege, Reihe 1 (Ausgewählte Zahlen für die Rechtspflege)*

주 : ()안의 수치는 구성비.

데, 소년쪽에 다소 많이 적용되고 있다. 경고도 소년이 많다. 의무의 부과는 청년에게 많이 과해지는데 그 대부분이 벌금의 형태로 부과된다.

소년법원에서의 유죄인원에 관한 주요죄종별 처분의 종류 및 소년형의 형기는 〈표 2-18〉와 같다. 소년형은 살인의 95.2%, 강간의 88.5%, 강도·공갈의 69.6%에 각각 과해지고 있음에 대해서 절도·횡령, 상해에 과해지는 경우는 각각 17.9%, 15.3%에 머물고 있다.

최근 수년간의 경향을 보면, 유죄인원에 있어서 성인도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청·소년 특히 소년의 감소율이 현저하다. 자유형의 판결을 받은 성인은 다소 증가한 반면 청년은 격감하였고, 소

년법원에 있어서의 소년형 및 징계처분에 관해서도 청년은 점차 감소, 소년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청년중 교육처분을 받는 자가 현저하게 증가한 것이 주목된다(〈표 2-19〉).

〈표 2-18〉 소년법원에 있어서의 소년·청년별 징계처분 건수

서독(1987)

	총수	소 년 구 금				의무의 부과	징고
		소계	계속 구금	단기 구금	휴일 구금		
계	83,496 (100.0)	19,208 (23.0)	8,152 (9.8)	1,617 (1.9)	9,439 (11.3)	32,213 (38.6)	32,075 (38.4)
청 년 (14세 이상 18세 미만)	37,921 (100.0)	9,697 (25.6)	3,580 (9.4)	798 (2.1)	5,319 (14.0)	11,217 (29.6)	17,007 (44.8)
청 년 (18세 이상 21세 미만)	45,575 (100.0)	9,511 (20.9)	4,572 (10.0)	819 (1.8)	4,120 (9.0)	20,996 (46.1)	15,068 (33.1)

자료 : *Rechtspflege. Reihe 1 (Ausgewählte Zahlen für die Rechtspflege)*.

주 : ()안의 수치는 구성비.

〈표 2-19〉 소년법원에 있어서의 주요 죄종별·처분종류별 유죄인원

서독(1987)								
유죄 인원	소 년 형						징계	교육
	계	6개월 ~1년 이하	1년~ 2년	2년 초과	부 정기		처분	처분
계	100,073	15,054	9,552	4,051	1,354	97	66,260	18,759
		(9,731)	(7,685)	(2,046)				
살 인	125	119	1	18	100	—	6	—
		(17)	(1)	(16)				
강도· 공갈	2,593	1,809	808	676	313	12	641	143
		(1,107)	(688)	(419)				
상해	7,231	1,106	734	286	79	7	5,117	1,008
		(719)	(603)	(116)				
절도· 횡령	43,904	7,871	5,268	2,007	537	59	26,941	9,092
		(5,120)	(4,196)	(924)				
강간	253	224	69	90	63	2	20	9
		(114)	(61)	(53)				

자료 : *Rechtspflege. Reihe 1 (Ausgewählte Zahlen für die Rechtspflege)*

주 : 1) 소년비 및 청년비를 합산한 인원임.

2) 살인은 모살(謀殺) 및 고살(故殺)을, 상해는 위험상해 및 경상해를 각각 가리킴.

3) 처분이 병과되고 있는 경우는 소년형, 징계처분, 교육처분의 순으로 주요한 하나를 계상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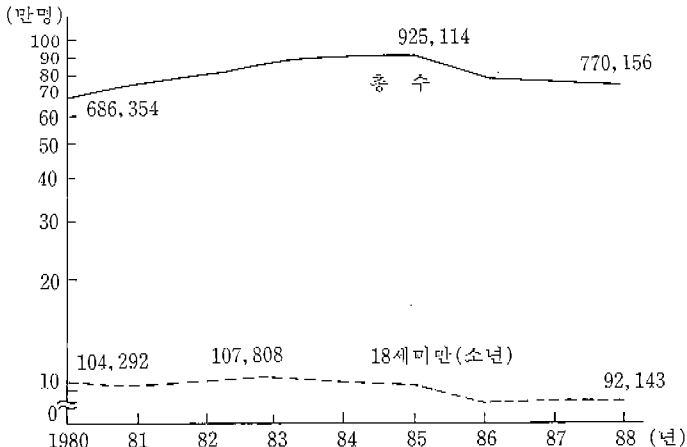
4) ()안은 형의 집행유예를 얻도받은 자의 수.

5. 프랑스

1) 소년비행의 동향

프랑스의 형법범 검거인원의 총수, 13세 이상 18세 미만 소년 검거인원의 1980년~1988년기간 동안의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2-5]와 같다. 또한 <표 2-20>은 1980년 및 1986년부터 1988년까지 3년간의 형법범 검거인원 총수, 소년 검거인원, 소년비 및 소년·성인의 인구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같은 기간의 특정 6죄종에 관해서 살펴본 것이 <표 2-21>이다. 프랑스에서는 형사법상 청년이라는 개념이 없고, 또한 입수가능한 통계로부터 청년으로

[그림 2-5] 형법범 검거인원의 추이
프랑스(1980~1988)



자료 : La Criminalité en France.

주 : 형법범은 중죄 및 경죄(crime et délit)로서 교통범죄는 제외.

〈표 2-20〉

형법범 검거인원, 소년비 및 인구비

프랑스(1980, 1986~1988)

	검 거 인 원			인 구 비	
	계	소 년	소년비	소 년	성 인
1980	686,354	104,292	15.2	15.4	14.9
1986	809,059	90,501	11.2	13.5	17.5
1987	775,756	93,470	12.0	14.2	16.5
1988	770,156	92,143	12.0	14.2	16.3

자료 : *La Criminalité en France, La Situation Démographique.*

주 : 1) 형법범은 중죄 및 경죄(crime et délit)로서, 교통범죄는 제외.

2) 소년은 13세 이상 18세 미만의 자를 지칭.

3) 인구비는 각 연령층 인구(소년은 10세 이상 18세 미만의 인구) 1,000명당 검거인원의 비율.

간주할 수 있는 연령의 성인 검거인원을 산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청년에 관해서는 별도로 통계를 산출하지 않았다.

소년의 형법범 검거인원은 1983년에 107,000명을 넘어 피크를 기록한 이래 감소경향으로 나아가 1986년에 약 9만명, 1988년에는 92,143명이 되었다. 소년비의 추이를 보면, 1980년에 15.2였던 것이 1986년에는 11.2까지 내려가고 그 뒤 2년간은 12.0에 머물고 있다. 한편, 소년인구비는 1988년에 14.2로서 성인인구비(16.3)를 밑돌고 있다. 이상과 같이 프랑스의 소년비행은 소년형법범 검거인원의 면에서는 근년에 감소경향을 나타내고 있어, 1970년대의 증가경향과는 대조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특정 6죄종에 관해서 살펴보면, 인구비에서 소년이 성인보다 높은 것은 강도, 절도, 강간 및 방화 등의 죄종으로서

〈표 2-21〉 특정 최종별 검거인원, 소년비 및 인구비
프랑스(1980, 1986~1988)

① 살 인

	검 거 인 원			인 구 비	
	계	소 년	소년비	소 년	성 인
1980	2,143	151	7.0	2.2	5.1
1986	2,680	124	4.6	1.9	6.2
1987	2,360	109	4.6	1.7	5.4
1988	2,450	125	5.1	1.9	5.6

② 강 도

	검 거 인 원			인 구 비	
	계	소 년	소년비	소 년	성 인
1980	11,961	3,137	26.2	46.4	22.6
1986	13,942	2,835	20.3	42.3	27.0
1987	13,689	3,090	22.6	47.0	25.6
1988	14,249	3,448	24.2	53.2	25.9

③ 상 해

	검 거 인 원			인 구 비	
	계	소 년	소년비	소 년	성 인
1980	29,531	2,777	9.4	41.0	68.6
1986	30,777	2,364	7.7	35.3	69.2
1987	30,693	2,599	8.5	39.5	67.9
1988	34,702	2,926	8.4	45.2	76.2

④ 절 도

	검 거 인 원			인 구 비	
	계	소 년	소년비	소 년	성 인
1980	241,621	76,814	31.8	1,135.2	422.6
1986	250,640	62,729	25.0	936.1	457.4
1987	246,700	63,937	25.9	971.7	441.7
1988	239,203	61,066	25.5	942.7	427.1

⑤ 강 간

	검 거 인 원			인 구 비	
	계	소 년	소년비	소 년	성 인
1980	1,769	262	14.6	3.9	3.9
1986	2,548	369	14.5	5.5	5.3
1987	2,543	355	14.0	5.4	5.3
1988	3,068	453	14.8	7.0	6.3

⑥ 방 화

	검 거 인 원			인 구 비	
	계	소 년	소년비	소 년	성 인
1980	1,660	511	30.8	7.6	2.9
1986	2,231	642	28.8	9.6	3.9
1987	2,183	583	26.7	8.9	3.9
1988	2,278	742	32.6	11.5	3.7

자료 : *La Criminalité en France, La Situation Démographique.*

주 : 1) 소년은 13세 이상 18세 미만의 자를 지칭.

2) 인구비는 각 연령층 인구(소년은 10세 이상 18세 미만의 인구) 10만명당 검거인원의 비율.

3) 「방화」는 1987년 이전에는 Incendie이며, 1988년에는 Incendie volontaire이다.

특히 절도와 방화의 소년인구비는 모두 성인인구비의 2배를 넘고 있다.

2) 소년사법제도

범죄소년에 관한 프랑스의 소년사법제도는 소년법(범죄소년에 관한 1945년 2월 2일 법령) 등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다. 소년에 의한 범죄는 전문재판소인 소년계 판사(Juge des enfants : 18세 미만의 소년이 범한 제5급 위경죄 및 경죄사건을 관할), 소년법원(Tribunal pour enfants : 18세 미만의 소년이 범한 제5급 위경죄 및 경죄사건과 16세 미만의 소년이 범한 중죄사건을 관할) 및 소년중죄법원(Cour d'assise des mineurs :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소년이 범한 중죄사건을 관할)의 3종류의 재판소가 관할하지만, 위경죄 제4급까지의 경미한 범죄에 관해서는 성인과 동일하게 위경죄재판소(Tribunal de police)가 관할한다.

프랑스에서는 검사가 소년범죄사건에 관해서 이른바 선심권을 갖고 있고 재판에도 입회한다. 검사가 행하는 불기소처분(classement sans suite)에는 기소유예도 포함된다.

프랑스 소년사법제도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소년법원 및 소년중죄법원은 유죄로 인정된 소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재교육처분(mesures de rééducation) 또는 형사처분(peine)중 어느 하나를 선택적으로 언도할 수 있고, 2년사법절차가 일원화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재교육처분으로서는 훈계(admonestation), 양친·후견인 등에의 위탁(remise aux parents, tuteur, gardien ou personne digne de confiance), 공·사립의 교육·직업훈련시설 수용(remise à un établissement de formation professionnelle), 의료기관 또는 의료교육기관 수용(remise à un établissement médical ou médico-pé

dagogique) 등이 있다.

이밖에 1975년 7월 11일에 제정되어 1945년의 법령에 편성된 채우로서 사법적 보호처분(protection judiciaire)이 있다. 그 내용은 소년법원 및 소년중죄법원이 16세 이상의 범죄소년에 대해서 재범방지상 필요하다고 간주될 경우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사법적 보호를 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법적 보호처분을 언도받은 소년에 대해서는 18세에 달한 뒤에도 21세까지 교육·직업훈련시설 수용, 의료 또는 의료교육기간 수용 등을 명할 수 있다. 형사처분으로는 벌금, 구금형이 있다. 13세 미만의 촉법소년에게는 형사처분을 가할 수 없고 재교육처분의 결정만을 행할 수 있다.

한편 프랑스의 소년사법에는 범죄소년 외에 요보호소년(mineurs en danger)을 위한 재판제도가 있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위험한 상태에 처해 있는 21세 미만의 자에 대해서 교육적 원조처분(mesures d'assistance éducative)을 내릴 수 있다.

3) 소년사법의 운용

범죄소년 및 촉법소년의 처분종류별 언도인원(1980년, 1986년)은 <표 2-22>와 같다. 이 표를 통해서 근년에 형사처분이 많이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특히 구금형(집행유예 포함)의 증가현상이 현저하다. 한편 재교육처분은 모든 종류별로 그 구성비가 감소하고 있는데, 특히 주목되는 것은 1986년에 혼계와 양친 위탁이 전체의 약 98%를 점하고 있는 등, 재교육처분에 있어서의 비수용처분의 활용이 현저하다는 점이다.

〈표 2-22〉 범죱소년 및 축법소년의 처분종류별 연도인원

프랑스(1980, 1986)

	1980		1986	
	인 원	구성비	인 원	구성비
계	64,062	100.0	68,572	100.0
형사처분	21,983	34.3	27,969	40.8
－ 구금형	15,078	23.5	20,597	30.0
－ 벌금만	6,384	10.0	5,982	8.7
－ 기 타	521	0.8	1,390	2.0
재교육 처분	42,079	65.7	40,603	59.2
－ 사법적 보호	233	0.4	180	0.3
－ 아동복지기관 위탁	137	0.2	57	0.1
－ 교육시설 등 위탁	953	1.5	505	0.7
－ 양친 등 위탁	12,372	19.3	10,940	16.0
－ 혼 계	28,384	44.3	28,921	4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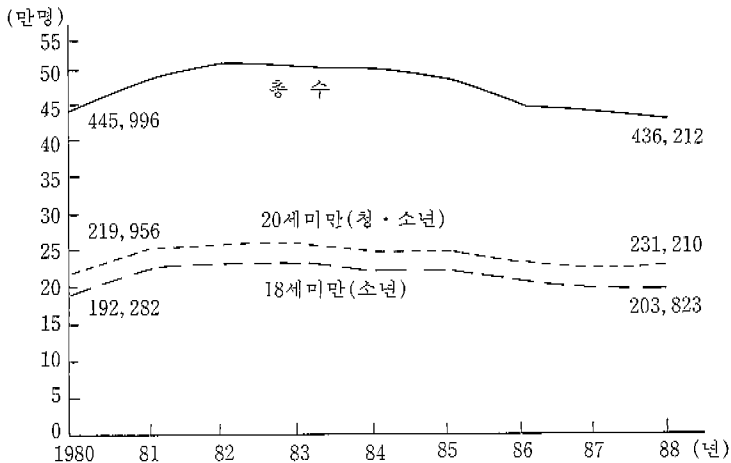
자료 : *Annuaire Statistique de la Justice*.

6. 일 본

1) 소년비행의 동향

1980~1988년 기간 동안의 일본 형법범 검거인원의 총수, 18세 미만의 소년 검거인원 및 20세 미만의 청·소년 검거인원의 추이는 [그림 2-6]과 같다. 형법범 검거인원은 1980년의 445,996명 이후 점차 증가하여 1982년에 피크를 이루었다가 감소의 경향으로 옮겨가 1988년에는 1980년보다 줄어든 436,216명에 머물고 있다. 청·소년의 형법범 검거인원은 다소의 기복은 있으나 대체

[그림 2-6] 형법범 검거인원의 추이
일본(1980~1988)



자료: 경찰청 통계.

주 : 1) 촉법소년 포함.

2) 교통관계사범 제외.

적으로 증가하여 1980년의 219,956명에서 1988년에는 231,210명이 되었다. 18세 미만의 소년 검거인원도 청·소년의 검거인원과 거의 동일한 변화양상을 나타내어 이 기간중 소폭으로 증가하였다.

1980년 및 1986년부터 1988년까지 최근 3년간의 형법범 송치인원 총수, 소년·청년별 송치인원, 소년비·청년비 및 소년·청년·성인의 인구비는 <표 2-23>과 같다. 소년비가 청년비를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청·소년비는 1980년을 제외하고는 50%를 넘어서 비교대상 국가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인구비에 있어서는 1988년의 경우 소년, 청년의 인구비가 각각 성인인구비

<표 2-23> 형법범, 검거인원, 소년비·청년비 및 인구비

일본(1980, 1986~1988)

	총 수	검 거 인 원			인 구 비		
		소년 (소년비)	청년 (청년비)	청·소년 (청·소년비)	소년	청년	성인
1980	445,996	192,282 (43.1)	27,674 (6.2)	219,956 (49.3)	13.7	8.8	2.8
1986	449,689	210,097 (46.7)	25,079 (5.6)	235,176 (52.3)	13.4	6.8	2.5
1987	445,548	200,190 (44.9)	27,788 (6.2)	227,978 (51.2)	12.9	7.4	2.5
1988	436,212	203,823 (46.7)	27,387 (6.3)	231,210 (53.0)	13.3	7.2	2.3

자료 : 경찰청 통계 및 총무청통계국의 인구자료.

주 : 1) 인구비는 각 연령층 인구(소년은 10세 이상 18세 미만의 인구) 1,000명당 검거인원의 비율.

2) 촉법소년 포함.

3) 교통관계사범 제외.

〈표 2-24〉 특정 최종별 검거인원, 소년비·청년비 및 인구비

일본(1980, 1986~1988)

① 살 인

	총 수	검 거 인 원			인 구 비		
		소 년 (소년비)	청 년 (청년비)	청·소년 (청·소년비)	소년	청년	성인
1980	1,564	19 (1.2)	30 (1.9)	49 (3.1)	0.1	1.0	1.9
1986	1,696	45 (2.7)	51 (3.0)	96 (5.7)	0.3	1.4	1.8
1987	1,652	32 (1.9)	47 (2.8)	79 (4.8)	0.2	1.3	1.8
1988	1,408	42 (3.0)	40 (2.8)	82 (5.8)	0.3	1.0	1.5

② 강 도

	총 수	검 거 인 원			인 구 비		
		소 년 (소년비)	청 년 (청년비)	청·소년 (청·소년비)	소년	청년	성인
1980	2,091	482 (23.1)	306 (14.6)	788 (37.7)	3.4	9.7	1.6
1986	1,893	487 (25.7)	221 (11.7)	708 (37.4)	3.1	6.0	1.4
1987	1,740	403 (23.2)	201 (11.6)	604 (34.7)	2.6	5.4	1.3
1988	1,669	369 (22.1)	200 (12.0)	569 (34.1)	2.4	5.2	1.2

③ 상 해

	총 수	점 거 인 원			인 구 비		
		소 년 (소년비)	청 년 (청년비)	청·소년 (청·소년비)	소년	청년	성인
1980	35,291	6,262 (17.7)	2,806 (8.0)	9,068 (25.7)	44.5	88.9	32.3
1986	29,075	8,605 (29.6)	2,255 (7.8)	10,860 (37.4)	54.8	60.8	21.0
1987	28,136	7,802 (27.7)	2,175 (7.7)	9,977 (35.5)	50.2	58.1	20.7
1988	28,385	8,017 (28.2)	2,137 (7.5)	10,154 (35.8)	52.3	56.0	20.5

④ 결 도

	총 수	점 거 인 원			인 구 비		
		소 년 (소년비)	청 년 (청년비)	청·소년 (청·소년비)	소년	청년	성인
1980	294,977	155,724 (52.8)	17,188 (5.8)	172,842 (58.6)	1,106.4	542.2	150.4
1986	301,385	161,763 (53.7)	16,003 (5.3)	177,766 (59.0)	1,030.1	431.5	140.7
1987	295,186	155,380 (52.6)	17,649 (6.0)	173,029 (58.6)	998.8	471.5	139.1
1988	284,905	158,497 (55.6)	17,237 (6.1)	175,734 (61.7)	1,033.8	451.9	122.8

⑤ 강 간

	총 수	검 거 인 원			인 구 비		
		소 년 (소년비)	청 년 (청년비)	청·소년 (청·소년비)	소년	청년	성인
1980	2,693	521 (19.3)	463 (17.2)	984 (36.5)	3.7	14.7	2.1
1986	1,613	356 (22.1)	279 (17.3)	635 (39.4)	2.3	7.5	1.1
1987	1,621	312 (19.2)	255 (15.7)	567 (35.0)	2.0	6.8	1.2
1988	1,489	260 (17.5)	249 (16.7)	509 (34.2)	1.7	6.5	1.1

⑥ 방 화

	총 수	검 거 인 원			인 구 비		
		소 년 (소년비)	청 년 (청년비)	청·소년 (청·소년비)	소년	청년	성인
1980	1,260	444 (35.2)	34 (2.7)	478 (37.9)	3.2	1.1	1.0
1986	1,065	302 (28.4)	41 (3.8)	343 (32.2)	1.9	1.1	0.8
1987	1,051	303 (28.8)	27 (2.6)	330 (31.4)	1.9	0.7	0.8
1988	898	241 (26.8)	32 (3.6)	273 (30.4)	1.6	0.8	0.7

자료 : 일본경찰청 통계 및 총무청 통계국의 인구자료.

주 : 1) 인구비는 각 연령층 인구(소년은 10세 이상 18세 미만의 인구)
10만명당 검거인원의 비율.

2) 촉법소년 포함.

3) 교통관계사범 제외.

의 5.8배, 3.1배에 달하고 있다.

〈표 2-24〉는 1980년 및 1986년부터 1988년까지 최근 3년간 특정 6죄종의 검거인원 총수, 소년·청년별 검거인원, 소년비·청년비 및 소년·청년·성인의 인구비를 나타낸 것이다. 모든 죄종에 걸쳐서 검거인원은 감소경향에 있으나 살인, 절도의 소년·청년 검거인원 및 소년비·청년비는 증가하였다. 특히 살인의 증가율이 현저하여 1988년의 소년비는 1980년에 비해 배 이상, 청년비는 약 2배에 달하고 있다. 반면에 강도, 강간은 소년비·청년비 모두 감소경향을 나타내었다.

한편 인구비에 있어서는 살인, 상해의 소년인구비를 제외하고는 모두 감소하였다. 감소의 폭이 가장 큰 것은 강간으로서 1988년의 소년·청년인구비는 1980년에 비해 모두 1/2이상 줄어들었다.

1) 소년사법제도

일본에서 소년재판의 대상이 되는 비행소년은 ① 14세(형사책임연령) 이상 20세 미만으로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죄소년), ② 14세 미만으로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촉법소년), ③ 20세 미만으로서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장래에 범죄를 저지르거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소년(우범소년)의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소년법 제3조). 이들 비행소년이 경찰 등의 수사기관이나 일반인에 의해 검거, 보도 또는 발견된 뒤 경찰, 검찰, 재판, 교정 또는 갱생보호의 각 단계에서 처리되는 과정을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경찰 등은 범죄소년(교통반칙금 납부사건과 관련된 것은 제외)을 검거했을 경우,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되는 범죄의 경우에는 직접 가정재판소에 송치하고, 그 이외의 범죄의 경우에는 검찰판에게 송치한다. 범죄소년의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관은 수사를 마친 뒤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범죄의 혐의가 없는 경우에도 우범 등 가정재판소의 심판에 회부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처우의견을 첨부하여 가정재판소에 송치한다.

14세 이상의 우범소년에 대해서는 이를 발견한 자가 직접 가정재판소에 통고 또는 송치해야 하지만, 18세 미만의 경우에는 경찰관 또는 보호자가 아동상담소에 통고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축법소년 및 14세 미만의 우범소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상의 조치를 우선시하게 된다. 즉, 동법에 따르면 보호자가 없는 아동 또는 보호자의 감호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년을 발견한 자는 이를 각 지역의 복지사무소 또는 아동상담소에 통고하도록 되어 있다. 가정재판소는 각 지방자치체(都·道·府·廳)의 지사(知事) 또는 아동상담소장으로부터 송치받았을 경우에만 이들 소년을 심판에 부칠 수 있다.

가정재판소에서는 우선 소년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이 경우 소년을 소년감별소로 송치하여 자질감별을 요청하는 일도 있다. 조사 또는 심판이 끝난 뒤 지사 또는 아동상담소장 송치(18세 미만의 소년에 한정됨), 심판불개시, 불처분, 보호관찰, 교호원·양호시설 송치, 소년원 송치, 검찰관 송치(16세 이상의 소년에 한함)의 결정이 내려진다. 이중 보호관찰, 교호원·양호시설 송치 및 소년원 송치는 가정재판소가 행하는 보호처분으로서 보호관찰의 결정이 내려진 소년은 보호관찰관 및 민간 독지가인 보호사(保護司)의 지도감독을 받게 된다. 교호원·양호시설 송치의 판결을 받은 소년은 아동복지법에 의한 시설인 교호원(불량행위를 했거나 할 우려가 있는 아동의 교호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 또는 양호시설(보호자가 없는 아동, 학대받고 있는 아동 등의 양호보육을 위한 시설)에, 소년원 송치판결을 받은 소년은 소년원에 각각 수용된다.

검찰관 송치는 형사처분에 해당되는 사건을 검찰관에게 송치하는 처분으로서 역송(逆送)이라고도 지칭된다. 이 역송사건에 관해서 검찰관은 원칙적으로 기소를 하도록 되어 있다. 기소된 소년에 대한 처우절차는 성인의 경우와 동일하지만, 범행시 18세 미만의 자에 대한 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징역 및 금고에 대한 부정기형의 채택, 성인과 구분되는 소년형무소 등에서 처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가정재판소에서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소년외에 소년원에서 가퇴원한 소년, 기소된 뒤 형의 집행을 유예받고 보호관찰에 회부된 소년, 실형을 받고 소년형무소 등의 행형시설에서 가출옥한 소년은 보호관찰에 부쳐져 보호관찰관과 보호사의 지도·감독을 받게 된다.

2) 소년사법의 운용

1988년 일본 가정재판소에서의 소년보호사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면 <표 2-25>와 같다. 사안이 경미하거나 소년의 소재불명 등의 이유로 인한 심판불개시가 73.6%로서 가장 다수를 차지하고, 사실상의 보호적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등의 이유로 인한 불처분 결정이 16.1%로서 그 다음이다. 심판을 개시한 사건에 관한 보호처분으로서는 보호관찰이 7.3%로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소년원 송치(2.2%), 교호원·양호시설 송치(0.1%)의 순서이다. 형사처분상당, 연령초과 등으로 인한 역송사건은 전체 처리인원의 약 0.6%에 달한다.

한편 형사사건으로서 제1심공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소년에 대한 과형상황(1988)을 보면 <표 2-26>과 같다. 유죄인원 총수 549명 중 유기의 징역 또는 금고를 언도받은 소년이 546명으로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중 81.1%에 달하는 443명이 집행

〈표 2-25〉 소년일반보호사건의 가정재판소 종국처리인원

일본(1988)

총 수	검찰관 송치		소년원 송 치	보 호 관 찰	교호원 ·양호 시설송치	지사·아동 상담소장 송 치	불처분	심 판 불개시
	형사처 분상당	연 령 초 과						
190,853	716	433	4,192	13,937	235	163	30,645	140,532
(100.0)	(0.4)	(0.2)	(2.2)	(7.3)	(0.1)	(0.1)	(16.1)	(73.6)

자료 : 「사법통계연보」

주 : 1) 교통관계 업무상(중)과실치사상 및 우범은 제외.

2) ()안의 수치는 구성비.

〈표 2-26〉 소년의 제1심 공판사건 유죄인원

일본(1988)

총 수	무 기 징 역	유기징역·금고				별 금
		부정기형	정기형	집행유예		
				계	보호관찰부	
549	—	100	446	443 (81.1)	133 (30.0)	3

자료 : 「사법통계연보」

주 : 1) 판결시 20세 미만의 자.

2) ()안의 수치는 각각 유기징역·금고형을 받은자 중에서 집행유예자의 비율, 집행유예자 중에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처분받은자의 비율임.

유예로서, 실형을 받게 된 인원은 103명이다.

소년원은 가정재판소의 심판결과 보호처분의 하나인 소년원 송치 결정을 받은 자를 수용하여 이들에 대한 교정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로서 1989년 12월말 현재 일본 전국에 54개소가 있다. 소년

원에서의 처우는 비행정도가 단순하거나 경미한 소년을 대상으로 한 단기처우(6개월 이내)와 단기처우로는 충분한 교정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소년을 대상으로 한 장기처우(2년 이내)의 두가지로 구분된다. 1989년의 소년원 신수용자를 처우종류별·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표 2-27〉), 총 4,811명의 신수용자중에서 남자가 88.4%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장기처우를 받는 인원(62.6%)이 단기처우 인원(37.4%)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표 2-27〉 소년원 신수용자의 처우종류별 인원

일본(1980)			
	계	단기처우	장기처우
총수	4,811(100.0)	1,799(37.4)	3,012(62.6)
남	4,253(88.4)	1,597	2,652
여	558(11.6)	202	356

자료 : 「사법통계연보」

Ⅲ. 한국 소년비행의 국제비교

이상에서의 논의를 토대로 여기서는 한국 소년비행의 동향을 세계 주요국가들과 비교해 보기로 한다. 비교대상국가는 미국, 영국(England와 Wales지역만), 서독(통일 이전), 프랑스, 일본의 5개국이며, 각국의 형법범 등 주요범죄 전체 및 살인, 강도, 상해, 절도, 강간, 방화의 여섯가지 죄종의 1988년 검거인원, 소년비, 소년인구비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범죄자의 연령구분은 18세 미만(단, 영국은 17세 미만)을 「소년」 18세 이상 21세 미만(단, 한국과 일본은 20세 미만)을 청년, 그밖의 연령층을 「성인」(단, 프랑스는 18세 이상을 일괄해서 성인으로 지칭)으로 지칭하고 소년과 청년을 일괄해서 표현할 때는 「청·소년」으로 표기하기로 한다.

먼저 각국의 검거인원 중 소년이 차지하는 비율, 즉 소년비를 비교해 보기로 한다. 1988년 각국의 형법범 등 주요범죄 전체 및 특정 6죄종의 소년비를 나타낸 것이 〈표 2-28〉이다.

이 표에 따르면 형법범 전체의 소년비에 있어서는 일본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미국, 영국, 서독, 프랑스의 순이며 한국이 가장 낮다. 일본은 전체 형법범 검거인원의 거의 절반 가량이 소년들이

〈표 2-28〉 국가별 형법범 등 주요죄종 전체 및 특정 6죄종의 소년비
(1988)

	한 국	미 국	영 국	서 독	프랑스	일 본
형법범 전 체	8.1	28.2	18.6	13.1	12.0	46.7
살 인	7.1	10.8	2.2	4.4	5.1	3.0
강 도	26.4	21.9	17.7	19.9	24.2	22.1
상 해	1.9	12.7	11.0	9.0	8.4	28.2
절 도	30.1	31.8	25.9	23.1	25.5	55.6
강 간	19.3	14.5	15.1	7.1	14.8	17.5
방 화	4.3	42.9	36.2	26.9	32.6	26.8

자료 : 본문의 표에서 재구성

주 : 전체 검거인원 중 18세 미만(단, 영국은 17세 미만) 검거인원의 비율임.

며, 구미의 4개국이 모두 10%를 넘고 있음에 비해서 한국은 8.1%에 머물고 있다. 특정 6죄종의 소년비를 보면 한국은 비교대상 6개국 중에서 강도, 강간에서 1위, 살인에서 2위, 절도에서 3위, 상해, 방화에서는 최하위인 6위를 차지하고 있다. 강도, 강간, 살인이 죄질이 무거운 중범죄임을 감안하면 한국은 비교대상국가들 중에서 소년비행의 흉포화 현상이 상대적으로 현저한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소년비를 통한 비교는 총인구에 대한 소년인구의 구성비가 나라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소년인구의 비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범죄인원 중 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질 개연성을 안고 있다. 따라서 소년비가 안고 있는 이와 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일정한 소년인구당 소년범의 비율, 즉 소년인구비를 산출해 보

〈표 2-29〉

국가별 형법범 등 주요범죄 전체 및
특정 6죄종의 소년인구비

(1988)

	한 국	미 국	영 국	서 독	프랑스	일 본
형법범 전 체	5.9	21.9	30.0	33.0	14.2	13.3
살 인	0.8	6.5	1.5	2.2	1.9	0.3
강 도	18.3	88.9	44.3	63.2	53.2	2.4
상 해	6.7	140.8	275.6	302.9	45.2	52.3
절 도	251.1	1,914.0	2,209.1	2,519.7	942.2	1,033.8
강 간	16.5	15.1	14.7	5.0	7.0	1.7
방 화	0.5	22.7	41.2	45.0	11.5	1.6

자료 : 본문에서 재구성

주 : 1) 소년의 연령은 18세 미만(단, 영국은 17세 미만).

2) 형법범 등 주요범죄 전체는 소년인구 1,000명당 검거인원,
특정 6죄종은 소년인구 10만명당 검거인원.

먼 〈표 2-29〉와 같다.

먼저 형법범 전체의 인구비를 살펴보면 서독이 33.0으로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영국(30.0), 미국(21.9), 프랑스(14.2), 일본(13.3)의 순이며 한국은 5.9명으로서 비교대상 6개국중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각 죄종별 소년인구비를 비교해보면 강간을 제외한 모든 죄종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소년인구비는 극히 낮은 편에 속하고 있다. 즉, 살인, 상해, 절도, 방화의 인구비는 비교대상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낮으며 특히 절도의 경우 다른 국가들과의 격차가 매우 현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강도의 소년인구비에 있어서는 일본이 가장 낮아서 우리나라가 프랑스에

이어서 5위를 점하고 있다.

이처럼 대부분의 최종에서 우리나라의 소년인구비가 매우 낮은 편에 속하는 것과는 달리, 유독 강간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소년인구비가 16.5로서 미국(15.1), 영국(14.7), 프랑스(7.0), 독일(5.0) 등 구미 선진제국보다 앞서고 있고 같은 동아시아권 국가인 일본(1.7)에 비해 무려 10배 가까이 많은 점이 주목된다. 이것은 비교대상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폐쇄적인 성문화를 가진 국가임을 감안하면 청소년들이 성에 대한 욕구를 적절하게 해소할 수 없는 사회환경이 그 주된 원인일 것으로 추측된다.

이상의 논의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소년범죄는 전체적으로 다른 선진제국과 비교할 때 아직까지는 그다지 심각한 상태에 있지는 않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비교대상이 된 국가들이 모두 산업발달이나 국민 복지수준의 측면에서 우리나라를 월등히 앞서고 있는 국가들임을 감안하면 국민 생활수준·복지수준의 향상이 곧 범죄문제를 해결하는 필요충분조건이 아님을 시사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소년비행의 현황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리와 비슷한 발전수준에 있는 국가들과의 비교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강간범의 소년인구비에서 우리나라가 비교대상 6개국중 제1위인데서도 실증이 되듯이 소년비행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경각심을 게을리한다면 우리나라의 소년비행은 언제라도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개연성과 잠재력을 갖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참고로 비교대상 6개국의 형법범 등 주요범죄 전체 및 특정 6죄종의 검거인원, 소년비·청년비 및 인구비(1988)를 제시하면 <표 2-30>과 같다.

〈표 2-30〉 국가별 형법범 등 주요범죄 전체 및 특정6죄종의
검거인원, 소년비·청년비 및 인구비

(1988)

① 형법범 등 주요범죄 전체

	계	검 거 인 원			인 구 비		
		소 년 (소년비)	청 년 (청년비)	청·소년 (청·소년비)	소년	청년	성인
한 국	500,095	40,298 (8.1)	40,343 (8.1)	80,641 (16.1)	5.9	22.1	16.2
미 국	2,122,673	598,690 (28.2)	313,174 (14.8)	911,864 (43.0)	21.9	27.9	7.1
영 국	703,881	130,925 (18.6)	178,193 (25.5)	309,118 (43.9)	30.0	57.4	10.8
서 독	1,314,080	172,785 (13.1)	141,419 (10.8)	314,204 (23.9)	33.0	48.0	21.2
프랑스	770,156	92,143 (12.0)	—	—	14.2	—	16.3
일 본	436,212	203,823 (46.7)	27,387 (6.3)	231,210 (53.0)	13.3	7.2	2.3

① 살 인

	계	검 거 인 원			인 구 비		
		소 년 (소년비)	청 년 (청년비)	청·소년 (청·소년비)	소년	청년	성인
한 국	732	52 (7.1)	86 (11.7)	138 (18.9)	0.8	4.7	2.3
미 국	16,326	1,765 (10.8)	2,669 (16.3)	4,434 (27.2)	6.5	23.8	6.9
영 국	3,004	67 (2.2)	421 (14.0)	488 (16.2)	1.5	13.6	6.9
서 독	2,591	115 (4.4)	227 (8.8)	342 (13.2)	2.2	7.7	4.8
프랑스	2,450	125 (5.1)	—	—	1.9	—	5.6
일 본	1,408	42 (3.0)	40 (2.8)	82 (5.8)	0.3	1.0	1.5

② 강 도

	계	검 거 인 원			인 구 비		
		소 년 (소년비)	청 년 (청년비)	청·소년 (청·소년비)	소년	청년	성인
한 국	4,731	1,249 (26.4)	1,280 (27.1)	2,529 (53.5)	18.3	70.1	8.5
미 국	111,344	24,337 (21.9)	19,683 (17.7)	44,020 (39.5)	88.9	175.5	39.3
영 국	10,919	1,932 (17.7)	4,051 (37.1)	5,983 (54.8)	44.3	130.4	13.5
서 독	16,688	3,315 (19.9)	3,105 (18.6)	6,420 (38.5)	63.2	105.5	21.8
프랑스	14,249	3,448 (24.2)	—	—	53.2	—	25.9
일 본	1,669	369 (22.1)	200 (12.0)	569 (34.1)	2.4	5.2	1.2

③ 상 해

	계	검 거 인 원			인 구 비		
		소 년 (소년비)	청 년 (청년비)	청·소년 (청·소년비)	소년	청년	성인
한 국	24,554	457 (1.9)	824 (3.4)	1,281 (5.2)	6.7	45.1	89.8
미 국	304,490	38,536 (12.7)	34,574 (11.4)	73,110 (24.0)	140.8	308.3	135.1
영 국	109,254	12,009 (11.0)	27,773 (25.4)	39,782 (36.4)	275.6	893.9	190.5
서 독	175,900	15,878 (9.0)	21,521 (12.2)	37,399 (21.3)	302.9	731.0	294.3
프랑스	34,702	2,926 (8.4)	—	—	45.2	—	76.2
일 본	28,385	8,017 (28.2)	2,137 (7.5)	10,154 (35.8)	52.3	56.0	20.5

④ 절 도

	점 거 인 원				인 구 비		
	계	소 년 (소년비)	청 년 (청년비)	청·소년 (청·소년비)	소년	청년	성인
한 국	57,034	17,147 (30.1)	7,954 (13.9)	25,101 (44.0)	251.1	435.4	123.2
미 국	1,647,520	523,718 (31.8)	251,366 (15.3)	775,084 (47.0)	1,914.0	2,241.5	509.4
영 국	371,986	96,266 (25.9)	98,034 (26.4)	194,300 (52.2)	2,209.1	3,155.3	487.1
서 독	489,337	113,208 (23.1)	58,310 (11.9)	171,518 (35.1)	2,159.7	1,980.6	675.3
프랑스	239,203	61,066 (25.5)	—	—	942.7	—	427.1
일 본	284,905	158,497 (55.6)	17,237 (6.1)	175,734 (61.7)	1,033.8	451.9	122.8

④ 강 간

	점 거 인 원				인 구 비		
	계	소 년 (소년비)	청 년 (청년비)	청·소년 (청·소년비)	소년	청년	성인
한 국	5,896	1,124 (19.3)	912 (15.6)	2,036 (34.9)	16.5	49.9	14.7
미 국	28,482	4,118 (14.5)	3,489 (12.2)	7,607 (26.7)	15.1	31.1	12.2
영 국	4,227	639 (15.1)	1,146 (27.1)	1,785 (42.2)	14.7	36.9	6.7
서 독	3,708	264 (7.1)	379 (10.2)	642 (17.3)	5.0	12.9	6.5
프랑스	3,068	453 (14.8)	—	—	7.0	6.3	—
일 본	1,489	260 (17.5)	249 (16.7)	509 (34.2)	1.7	6.5	1.1

⑥ 방 화

	계	검 거 인 원			인 구 비		
		소 년 (소년비)	청 년 (청년비)	청·소년 (청·소년비)	소년	청년	성인
한 국	797	34 (4.3)	34 (4.3)	68 (8.5)	0.5	1.9	2.8
미 국	14,505	6,216 (42.9)	1,393 (9.6)	7,609 (52.5)	22.7	12.4	4.0
영 국	4,959	1,796 (36.2)	1,125 (22.7)	2,921 (58.9)	41.2	36.2	5.6
서 독	8,785	2,361 (26.9)	642 (7.3)	3,003 (34.2)	45.0	21.8	12.3
프랑스	2,278	742 (32.6)	—	—	11.5	—	3.7
일 본	898	241 (26.8)	32 (3.6)	273 (30.4)	1.6	0.8	0.7

자료 : 본문의 표에서 재구성.

주 : 1) 소년은 18세 미만(단, 영국은 17세 미만), 청년은 18세 이상 21세 미만(단, 한국과 일본은 20세 미만), 성인은 21세 이상의 인구.

2) 인구비는 형법범 등 주요범죄 전체는 각 연령층 인구 1,000명당 검거인원의 비율, 특정 6죄종은 각 연령층 인구 10만명당 검거인원의 비율임.

표 · 그림 찾아보기

제1부 소년비행과 소년사범의 동향 I : 1970년대

I. 개 설

II. 세계 주요국의 동향

1. 미 국

- [그림 1-1] 형법범 검거인원의 추이 : 미국(1970~1979) · 12
- 〈표 1-1〉 형법범 검거인원의 소년비 · 청년비 및
인구비 : 미국(1970, 1977~79) 13
- 〈표 1-2〉 주요죄종별 형법범 검거인원의 소년비 ·
청년비 및 인구비 : 미국(1970, 1977~79) ... 14
- 〈표 1-3〉 경찰에 검거된 소년의 처리상황 :
미국(1977) 20
- 〈표 1-4〉 소년구금시설의 종류별 수용인원(1975)과
보호관찰인원(1976) : 미국(1975, 1976) 20

2. 영 국

- [그림 1-2] 형법범 검거인원의 추이 : 영국(1970~1979) · 23
- 〈표 1-5〉 형법범 검거인원의 소년비 · 청년비 및 인구비 :
영국(1970, 1977~79) 24
- 〈표 1-6〉 주요죄종별 형법범 검거인원의 소년비 · 청년비
및 인구비 : 영국(1974, 1977~79) 25
- 〈표 1-7〉 형법범의 연령종별 유죄인원 : 영국(1979) ... 31
- 〈표 1-8〉 구금형 및 감화원 훈련의 연령종별 인원 :
영국(1979) 31

〈표 1-9〉	소년의 주요죄종별·처분종류별 인원 :	
	영국(1979)	32

3. 서 독

[그림 1-3]	형법범 검거인원의 추이 : 서독(1970~1979)	33
〈표 1-10〉	형법범 검거인원의 소년비·청년비 및 인구비 :	
	서독(1970, 1977~79)	34
〈표 1-11〉	주요죄종별 형법범 검거인원의 소년비·청년비 및 인구비 : 서독(1970, 1977~79)	35
〈표 1-12〉	형법범의 연령층별 유죄인원 : 서독(1979)	40
〈표 1-13〉	소년법원에 있어서의 소년·청년별 형법범 유죄인원 및 처분별 건수 : 서독(1979)	41
〈표 1-14〉	소년법원에 있어서의 연령층별 징계처분건수 :	
	서독(1979)	42
〈표 1-15〉	소년법원에 있어서의 주요죄종별·처분의 종류별 유죄인원 : 서독(1979)	43

4. 프랑스

[그림 1-4]	형법범 검거인원의 추이 :	
	프랑스(1972~1979)	44
〈표 1-16〉	형법범 검거인원의 소년비 및 인구비 :	
	프랑스(1972, 1977~79)	45
〈표 1-17〉	주요죄종별 검거인원의 소년비 및 인구비 :	
	프랑스(1972, 1977~79)	46
〈표 1-18〉	범죄소년의 처분종류별 연도인원 :	
	프랑스(1979)	50
〈표 1-19〉	범죄소년의 교육처분 종류별 연도인원 :	
	프랑스(1979)	50

〈표 1-20〉 범죄소년의 형사처분 종류별 언도인원 및 실형의 형기내역 : 프랑스(1979)	51
--	----

5. 일본 소년비행의 국제비교

〈표 1-21〉 미국·독일 및 일본에 있어서의 형법범 검거 인원의 주요죄종별 소년비(및 청·소년비) : (1979)	52
〈표 1-22〉 미국·독일 및 일본에 있어서의 소년형법범 검거인원의 주요죄종별 소년인구비 (및 청년비) : (1978)	54
〈표 1-23〉 구미제국과 일본에 있어서의 형법범 주요 죄종별 검거율 : (1979)	55

Ⅲ. 소년비행의 요인과 대책

〈표 1-24〉 교내 폭력의 발생건수 및 피해자별 구성비 : 미국	59
〈표 1-25〉 교내폭력의 피해자별 흉기사용 비율 : 미국 ...	60
〈표 1-26〉 교내폭력의 경찰신고 비율 : 미국	61

제2부 소년비행과 소년사법의 동향Ⅱ : 1980년대

I. 개 설

Ⅱ. 세계 주요국의 동향

1. 한 국

〔그림 2-1〕 형법범 검거인원의 추이 : 한국(1980~1988)	70
--	----

〈표 2-1〉	형법범 송치인원, 소년비·청년비 및 인구비 :	
	한국(1980, 1986~88)	72
〈표 2-2〉	특정 죄종별 송치인원, 소년비·청년비 및	
	인구비 : 한국(1980, 1986~88)	72
〈표 2-3〉	제1심 소년형사공판사건 과형상황 :	
	한국(1988)	77

2. 미 국

[그림 2-2]	지표범죄 검거인원의 추이 :	
	미국(1980~1988)	79
〈표 2-4〉	지표범죄 검거인원, 소년비·청년비 및	
	인구비 : 미국(1980, 1986~88)	80
〈표 2-5〉	특정죄종별 검거인원, 소년비·청년비 및	
	인구비 :	
	미국(1980, 1986~1988)	81
〈표 2-6〉	공립소년원의 성·연령층별 수용인원 :	
	미국(1983, 1985)	88
〈표 2-7〉	공립소년원의 최종·성별 수용인원 :	
	미국(1985)	88
〈표 2-8〉	소년시설의 수·종류 및 규모 : 미국(1985) ..	89

3. 영 국

[그림 2-3]	정식기소범죄 검거인원의 추이 :	
	영국(1980~1988)	90
〈표 2-9〉	정식기소범죄 검거인원, 소년비·청년비 및	
	인구비 : 영국(1980, 1986~1988)	91
〈표 2-10〉	특별죄종별 검거인원, 소년비·청년비 및	
	인구비 : 영국(1980, 1986~1988)	92

〈표 2-11〉 정식기소범죄사건의 연령종별 유죄인원 :	
영국(1988)	97
〈표 2-12〉 제1심에 있어서의 연령종·처분종류별	
유죄인원 : 영국(1988)	98
〈표 2-13〉 제1심에 있어서의 소년의 주요 죄종·처분	
종류별 유죄인원 : 영국(1988)	99

4. 서 독

〔그림 2-4〕 형법범 검거인원의 추이 :	
서독(1984~1988)	101
〈표 2-14〉 형법범 검거인원, 소년비·청년비 및	
인구비 : 서독(1984~1988)	102
〈표 2-15〉 특정죄종별 검거인원, 소년비·청년비 및	
인구비 : 서독(1984~1988)	104
〈표 2-16〉 형법범의 소년·청년·성인별 유죄인원 :	
서독(1989)	109
〈표 2-17〉 소년법원에 있어서의 소년·청년별 형법범	
유죄인원 및 처분별 건수 : 서독(1987)	110
〈표 2-18〉 소년법원에 있어서의 소년·청년별 징계처분	
건수 : 서독(1987)	111
〈표 2-19〉 소년법원에 있어서의 주요 죄종별·처분종류별	
유죄인원 : 서독(1987)	112

5. 프랑스

〔그림 2-5〕 형법범 검거인원의 추이 :	
프랑스(1980~1988)	113
〈표 2-20〉 형법범 검거인원, 소년비 및 인구비 :	
프랑스 (1980, 1986~1988)	114

〈표 2-21〉	특정죄종별 검거인원, 소년비 및 인구비 :	
	프랑스(1980, 1986~1988)	115
〈표 2-22〉	범죄소년 및 촉법소년의 처분종류별 연도인원 :	
	프랑스(1980, 1986)	119

6. 일 본

〔그림 2-6〕	형법범 검거인원의 추이 :	
	일본(1980~1988)	120
〈표 2-23〉	형법범 검거인원, 소년비·청년비 및 인구비 :	
	일본(1980, 1986~1988)	121
〈표 2-24〉	주요죄종별 형법범 검거인원의 소년비·청년비 및 인구비 : 일본(1980, 1986~1988)	122
〈표 2-25〉	소년일반보호사건의 가정재판소 중국처리인원 :	
	일본(1988)	128
〈표 2-26〉	소년의 제1심 공판사건 유죄인원 :	
	일본(1988)	128
〈표 2-27〉	소년원 실수용자의 처우종류별 인원 :	
	일본(1989)	129

Ⅲ. 한국 소년비행의 국제비교

〈표 2-28〉	국가별 형법범 등 주요범죄 전체 및 특정6죄종의 소년비 : (1988)	132
〈표 2-29〉	국가별 형법범 등 주요범죄 전체 및 특정6죄종의 소년인구비 : (1988)	133
〈표 2-30〉	국가별 형법범 등 주요범죄 전체 및 특정6죄종의 검거인원의 소년비·청년비 및 인구비 : (1988)	135